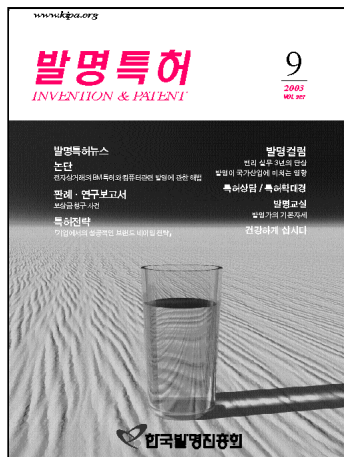


월간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3년 9월호 제26권 제9호(통권327호) 발행인/편집인 | 박 광 태 인쇄인 | 이 평 원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우편번호:135-980) 전화|02)3459-2800 인쇄| 2003년 8월 20일 발행| 2003년 8월 25일 인쇄처|휘문인쇄(02-2276-1234)

2003 9



- 본지는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 본지에게재된기사와본회의견해와는다를수도있습니다.

Contents

10 특허뉴스

16 해외특허뉴스

28 특허출원동향

34 논단 / 장태종 | 전자상거래의 BM특허와 컴퓨터관련
발명에 관한 해법

50 성공사례 | (주)진생사이언스

58 판례 · 연구보고서 | 보상금 청구 사건(II)

64 연구보고서 / 이영우 | 특허실체법조약협상에 있어서
신규성의제 혹은 Grace Period의 문제

70 특허전략 / 기업에서의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 전략

78 직무발명보상제도(V)

86 발명컬럼 / 이현수 | 변리 실무 3년의 단상

88 발명컬럼 / 이주형 | 발명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96 내 친구는 발명가 | 의자 달린 여행 가방
미래의 청소차

106 특허확대경 | 판례

112 건강하게 삽시다

영 · 한 지식재산권 용어해설

분쟁예방기

특허 Q&A

회원동정

KIPA 게시판

첨단기술유출 “산업스파이” 강력 규제

특허청은 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은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 관련 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 핵심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로 유출되는 지역도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가령,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1억원 이하

의 벌금밖에 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미국의 “ 경제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 ” 은 영업비밀을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 약 120억원(1,0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 경제스파이법 ” 에 버금가도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법령 영업비밀 침해 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미수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 범 조항을 폐지하여 종전의 “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한을 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 누구든지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호 대상도 종전의 “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 ” 에서 “ 기업의 영업비밀 ” 로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부

정한 목적으로도 용하여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고, 타인의 유명 상품의 “ 디자인을 모방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이에 대

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업계, 학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허청

저금통도 視聽覺 機能으로 승부!

최근 청소년들의 과소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검 절약을 상징하는 저금통이 종래 단순히 돈만 수납 보관하는 기능에서 탈피하여, 반도체, 디지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축액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부가 설치된 디지털 저금통, 동전을 넣으면 갖가지 소리가 나는 음향 발생 저금통, 각종 놀이를 겸할 수 있는 오락기능 저금통 등이 개발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품화된 저금통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플라스틱으로 된 돼지 저금통, 주머니, 우체통, 복주머니 모양의 저금통 등이 주종을 이루어 온바, 이들은 주로 저금통의 형상만 달리 한 것들로써 저축한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저금통을 파손해야 하므로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80년대에는, 동전 배출구를 두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금통, 동전 집게통에 계수 눈금을 표시하여 저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저금통, 저금통 옆면에 연필꽂이를 부착하여 연필꽂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저금통 등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능이 부여된 저금통이 개발되었으나, 이들 역시 항상 재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T 시대에 접어들어 90년대 후반에는, 소비자들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즐기고자 하는 감각적 기능을 더 선호하여, 저금통에도 반도체, 디

IT 기술 적극 활용...

다양한 디지털 저금통 개발...

세계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지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첨단 기능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동전식별 센서, 투입된 돈을 연산하는 마이콤, 연산값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가 설치되어 동전을 넣을 때마다 저금한 금액이 표시되는 디지털 저금통, 동전식별 센서, 멜로디 칩, 스피커가 설치되어 동전을 넣을 때마다 멜로디 칩에 저장된 “ 팡파아르냐 ” “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 등의 소리가 나는 음향 발생 저금통, 갈때기처럼 생긴 동전 투입구가 형성된 저금통을

벽에다 걸어놓고, 던진 동전이 갈때기 위의 성공구획 센서에 맞으면 조명등이 일정 시간 깜박이는 등 오락기능을 구비한 저금통, 동전식별 센서, 금액 기억장치, 투입된 돈을 연산하는 마이콤, 마이콤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일정한 금액에 도달해야 도어가 열리는 도어개폐 제어장치 등이 설치된 목표금액 설정 저금통 등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 전망

저금통은 주로 영세한 개인 업체에 의하여 사은품이나 경품 용으로 제작되는 것이어서 내수 시장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로 상품성을 쉽게 높일 수 있는 품목이라 하겠다.

현재 디지털 저금통의 가격은 1~5만원대로 돼지 저금통에 비하면 약 10배~50배 정도의 가격에 이르러 있는 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저금통을 개발한다면 국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세계 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금년 들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급증

전년대비40% 증가

특허청에서특허심사를받는데 소요되는기간을3개월 정도(보통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를이용하는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 99건 → ('02) 1442건 → ('03. 상반기) 1006건,

우선심사제도란일반적인특허출원보다조기에권리화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출원에대하여특허청이심사청구순위에관계없이우선적으로심사하는제도이다.

특히, 현재사업을하고 있는 기술과관련된자기실시출원에대한 우선심사신청이지속적으로큰 폭의 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반면, 벤처붐의 진정으로인하여 벤처 기업에 의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증가율은다소둔화되었다.

우선심사신청인구성은중소기업 및 개인이 97%를 차지하고있어 우선심사제도가중소기업의조기 기술경쟁력확보수단으로서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허청은19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의한출원 및 현재 사업을하고

있는 기술과관련된출원, 기술의 life-cycle이 짧은 전자거래와관련된 출원 등을 우선심사대상에 추가하고증빙서류제출을간소화하는등 우선심사제도의활용을촉진시키고자노력해오고있다.

앞으로특허권을조기에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제도보다는우선심사제도를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운영하고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은각국의우선심사제도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한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2000년부터올해까지총 4

회에 걸쳐서 양국에 모두 출원된 32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범적인 특허심사를수행한 후 그 내용을비교한결과, 7건에 대하여는특허를부여하기로 하고 25건에 대

하여는특허를부여하지않기로결정되는등 양국의특허심사결과가

일치하였으며특히, 특허를부여

한 · 일간「특허심사결과상호인정」

제도의 도입논의가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하지않기로결정된특허출원에있어서는불특허이유까지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의 시범 특허심사 사업은 한국 · 일본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특허권을부여하면 다른나라에서도자동적으로 특허권을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 수행되고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IT, B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특허출원이급 격히증가함에따라특허심

사처리장기화문제에직 면하고있다. 일본, 미국, 유럽등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정확한심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심사인력을증원하는 한편, 중복된특허심사를피하기 위하여양자간또는 다자간에 「특허심사결과상호인정」 제도의도입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은3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을부여하면자동으로나머지 특허청에서도특허권을부여하는 「특허심사결과상호인정」 제

도를도입하기로97년에합의하였고 이를 위한3개국 특허청간의공동 특허심사사업이98년부터2000년 사이에수행된바 있다. 또한미일양국특허청은특허심사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국에 모두 출원된특허출원에대한선행기술조사및 심사결과를상호이용하기로 하고2003년까지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합의한바 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추세에부응하기 위하여일본과2000년부터공동 특허심사를수행해 온 것이며

중국과는올해부터공동의특허심사를추가적으로수행하고있는중이다. 한 · 일간의공동 특허심사결과가긍정적으로평가됨에따라 양국간 「특허심사결과상호인정」 제도의도입논의가가속화될것으로 전망되며, 이는양국간특허심사기간장기화문제를해소하는데 있어서큰 도움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특허청은 특허심사협력대상국가를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갈계획이다.

특허청

분 · 쟁 · 엇 · 보 · 기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게약위반소송

무선통신기술업체인퀄컴(한도체제조업체텍사스인스트루먼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실리콘스트래티지가 보도했다. 퀄컴의루이스루핀 수석부사장은 “TI가 퀄컴이 보유한 원천기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에대한 기밀정보를공개리노출시켰다며 “ 이로써 2000년 특허기술과관련해양자가맺었던 계약을위반, 소송을걸게 됐다 ”고 발표했다. 루핀부사장은또 이번소송에서

손해배상과계약무효화를청구했다.퀄컴은2000년 12월 양사는퀄컴이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I가 DSP(Digital Signal Processing)기술을 제공, 교환하기로하는특허기술공유협정을 체결했었다

출처 PatYellow.com

ST마이크로 - 모토롤러 맞고소

반도체업체인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모토롤러(반도체분야특허를침해했다며서로 맞고소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ST마이크로는미국 텍사스주서면의 연방지방법원에모토롤러가음향 · 영상 압축기술, 기억속도향상기술등에 대한 자사특허를침해했다는데내용의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모토롤러도텍사스주버몬트의연방지법에반도체제조공정과관련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ST마이크로를 제소한바 있다

출처 PatYellow.com

이베이, 전자상거래 특허 소송 패소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업체인이베이가 특허소송에패소해 2950만달러의 보상금을물 게됐다 미국버지니아주지방법원은이베이가

전자상거래와관련한특허권을위반했다는 머크익스체인지사와주장을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내리고이베이에보상금을 지급하라고명령했다. 버지니아주지

방법원의제롬프리드먼판사는온라인카드를 통해온라인경매에참가하는이베이의 경매 방식이머크익스체인지의특허권을 침해했을뿐만 아니라회사측이이를 알고도사용을계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PatYellow.com

세계 최초, 인터넷기반 전자 출원 100만건 돌파

전자출원제도 도입후, 4년6개월만에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특허청에 따르면, 99년1월 2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출원제도를 시행한지 4년6개월만에 전자출원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자출원이 100만건을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인터넷 활용 능력

리고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서로 어우러져야만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지식재산권 정보화 분야에서 선두 주자임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허청

특허출원 1% 증가, 경제성장률 0.11%를 상승시켜

특허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허출원 1%의 증가는 3년 내지 5년의 기간에 걸쳐 경제성장률 0.11%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1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천건의 특허

가 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증가 이외의 결정요인인 기술 축적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0.0292%를 증대시키고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의 특허 취득 1% 증가가 총요소생산

개발투자(R&D)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특허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1천건 특허출원 증가 ‘04년에서 ‘06년까지 약 4,460억원 국민소득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

출원 증가는 ‘04년에서 ‘06년까지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 증가가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기기업의 특허 취득 활동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의 특허 취득 활동도 경제 전체의 기술 축적을 가져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기업의 특허 취득 1% 증

성을 0.1177%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번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허 취득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97년부터 ‘01년까지(4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특허 취득 공시 126개를 대상으로 공시 전후의 주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특허 취득 공시 전일과 당일(2일)에 걸쳐 해당 기업 주가를 4.0184%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연구

위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특허출원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특허청에서는 금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재산권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핸드폰 초기화면도 특허

신규성과 창작성 인정되면 의장권 부여받게돼...

홈페이지·PDA 등 화상 디자인 특허청 ‘의장권 인정’ 규정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도 특허법에 의해 의장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을 포함,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각종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 디자인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장권(디자인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초기 화면 디자인

등 각종 화상 디자인을 새로 창작했을 경우 의장권 등록 출원을 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면 의장권을 부여받게 돼 추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일반이 접촉하는 화상 디자인은 창작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투입됐음에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다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액정 화면 등에 나타나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권을 인정하게 돼 창작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

청은 이를 위해 의장심사기준(제3조 제1호)에 “물품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화상 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Design)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신설,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전승철 사무관은 “화상 디자인의 경우 신규성과 창작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자 본인은 물론 타인이 출원해도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사이트 소유자들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PatYellow.com

분 · 쟁 · 엇 · 보 · 기

TI, 퀄컴 제소에 정면 반박

“통신단말기 칩 회사인 퀄컴의 TI 견제가 시작됐다”

최근 퀄컴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에 코드분할 다중 접속(CDMA) 등에 대한 특허권 사용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가운데 TI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 두 회사 간에 미묘한 싸움이 시작됐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TI의 조지프 허바치 부사장은 “퀄컴으로부터 제기된 내용을 검토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제소의 배경으로 “자사가 최근 cdma2000 1x 칩 샘플을 내놓는 등 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바치 부사장은 “퀄컴은 1년간 경쟁자 없는 CDMA 칩 시장을 즐겨왔으나 TI는 이 시장에 열린 경쟁 체제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퀄컴의 루이스 루핀 부사장은 “TI

가 5월 퀄컴이 보유한 원천 기술인 CDMA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켰다며 TI를 델라웨어 연방지 법원에 고소했다

퀄컴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2000년 12월 TI와 맺은 상호 특허권 사용 협정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퀄컴의 소송은 TI의 CDMA 공략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퀄컴이 시장 기술의 개척자로 계속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PatYellow.com

말레이시아정부, 기업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펀드 설립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기업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억링깃(말레이시아 화폐단위:1링깃=350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국제무역산업부 장관인 Rafidah Aziz에 따르면, 이 기금이 특허등록을 포함한 기업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목적,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식을 취한 이유는 브랜드 향상이라는 목적의 융자금을 활용할 기업이 적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동 펀드는 기업이 50%비용을 지출하고 기금에서 50%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한 기업당 지원액의 상한선은 2백만 링깃이다.

국제무역산업부는 동 펀드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위원들은 무역부, 산업개발공사, 중소기업개발원, 디자인협회, 브랜드협회 등에 속한 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다른 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인데, 예컨대 농림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육성할 만한 농업관련 브랜드의 조사에 대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The Business Times Singapore

일본특허청실용신안제도위킹그룹가동

특허청이 주관하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제1회 실

용신안위킹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위킹그룹위원은 大瀧 哲也 동경대 교수를 단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원들의명단은다음과같다

石田喜樹일본변리사회부회장

臼井清文사단법인일본경제단체연합회산업기술위원회

지적재산부회원

大瀧 哲也동경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교수

尾形 偉幸사단법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특허위원회

위원장

熊谷 健一큐슈유九州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교수

志村 勇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주식회사R Operation

Company 지재개발센트E소장

坪田 秀治일본상공회의소의이사·산업정책부장

戸田 裕二일본지적재산협회특허위원회위원장

長岡 貞夫릿쿄一橋대학Innovation 연구센터교수

牧野 利秋YUASA and HARA 법률특허사무소변호사·

변리사

溝尾 眞一Funai(船井)전기(주) 사업본부지적재산부부장

대리

吉田 久幸주식회사다카라기업법무실장

회의는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현황과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사무국의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무국 발제는 무심사 등록/사후평가형의 기술 보호제도의도입시에 염두에 두어졌던 개발 리드타임 및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조기실시가 필요한 기술의 보호라고 하는 요청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와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2가지 보호제도를 병존시키는 것의 의의, 효과는 인정되는가 등의 주제 등으로 요약된다.

사무국의 배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심사제도 도입당시(평성5년) 구실용신안제도 출원건수가

약7만7천건에달하던것이현재 약8천건으로감소되었지만 사무국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도 권리의 조기설정이라는 목표는, 현재 특허제도가 그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약 22개월 소요되는데 비해 실용신안의경우 약5개월의 기간에등록될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본다. 단, 1998년기준제품의라이프사이클이 8.1년으로 현행 6년의 실용신안 존속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안정성과 관련하여도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신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이나 무효심판의 비율은 구 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이나 무효심판의 비율과 거의 같다고 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책임형의 제도인 기술평가서 제시 후,

회 원 동 정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중국판매상반기1위

現代重工業代表 閔季植 崔吉善 건설장비 부문이 중국 시장에서놀라운 신장세를 기록하고있다.

중국공정기계협회가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굴삭기 판매실적에따르면, 현대중공업은총 4천 18대의 판매고를올려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기록한판매실적2천 1백 19대 보다약 90% 증가했으며 지난해 한해 실적이3천 8백 98대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지난 95년 상주현대(常州現代)합자사 설립으로중국에 진출한 이후, 2000년 1천 88대, 2001년 1천 9백 70대, 2003년 3천 8백 98대와 비교해서도상당히가파른 상승곡선을그리고있는 것이다.

중국 최초 상반기 굴삭기 4천대 이상 판매 올 8천대 판매 목표 달성 무난할 듯

특히, 現代重工業의이번 실적은 중국 건설장비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2002년에 이어 2003년 상반기실적1위에 해당하며, 半期4천대 판매시대를여는 최초의기록이다.

이 같은 판매실적호조에 대해 現代重工業 관계자는△중국 현지에 적합한 경

권리행사제도가 제기되는 우려에 비하여 상당히 부적절한 권리행사를 억제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실용신안법의 이용 확대가 촉진된다면 특허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수가 감소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신속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발명·고안의 보호제도 전체의 유지에 관계되는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보다 좋은 형태로 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무국의 발제에 대하여 자유토의에서 위원으로부터 의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에대해평성 5년의법개정에 의해무심사 등록 주의를 도입했을 때는, 권리 남용에의 위구심이 크고, 그것을 방지하도록 제도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제적이고지형에 맞는 장비 개발 △금융 판매 실시 △전국적인A/S망 구축 △상주공장의생산능력1만대 확충 △북경법인 신설 등 고객 만족에최선을다하는현지화 노력이주요한것으로평가됐다.

한편, 現代重工業은이 같은 상반기실적을 바탕으로올해 굴삭기 8천대 판매 목표를무난히달성할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계획, 남수북조 운하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가 줄을 잇고 있어 굴삭기에대한 수요가더욱 증가될 것으로예상되는데다, 지난 5월 시판하고 있는 21톤급 최신 모델 ROBEX 225LC-7 굴삭기가현지 고객들로부터호평을받고 있다.

출처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리의 존속 기간이 짧은 것, 실용 신안 기술 평가서를 얻어도 최종적으로는 자기책임인 것, 보호 범위가 좁은 것 등, 현행의 실용신안제도는 디메리트(demerit)가 많기 때문에 이용이 적은 것이 아닌가. 첨단 기술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거쳐 권리가 주어지는 특허제도로 일관하는 것(一本化)이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합치하고 지식재산입국에도 걸맞다. 실용 신안제도는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은 아닌가. 수준이 낮은 기술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준이 높은 기술에 대해 얻을 수 있던 특허권의 효과가 제한된다고 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소송 제기 건수가 적은 것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기본적인 기술을 응용해 생활에 관련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최종소비재 산업(川下産業)을 보호하는 일도 지식재산입국을 향해 중요하고, 그러한 기술의 보호에 적절한 실용 신안 제도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외로부터의 모방품 대책으로서 조기에 권리 등록이 가능한 실용 신안 제도는 유효하지 않는가.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는, 특허권의 취득이 곤란한 기술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요망이 뿌리깊다. 의장출원 건수와 비교하면,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반드시 과다하게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향후의 검토에 대해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도가 일본보다 높은 중국이나 독일 등 타국의 제도와도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잠재적인 제도의 이용자도 시야에 넣은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용이 한정적인 것은, 제도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인가, 제도 자체의 의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가, 기업의 규모나 업태에 따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도 실태의 조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는 필요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보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는 안되는가. 특허제도와 조정이나 정정 등에 대해 채운 논의를 실시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출처 일본 특허청

특허의 품질에 관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미 하원 법사위원회, 법원,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위원회는 “특허의 질적 개선(Patent Quality Improvement)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동 청문회에는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The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and BITS, Intel Corporation을 대표하여 참석한 증인과 Georgetown University의 교수도 참석하여 미국 특허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동 참석자들의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ouser.gov/judiciary/courts072403.ht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은 이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이다.

Charles E. Van Horn (Finnegan, Hen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법률회사의 파트너, AIPLA를 대표해서 참석)

USPTO가 결정한 특허의 질은 USPTO 운영

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심적 노력이다. 법원의 소송에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USPTO의 사용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강력한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투자를 보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PLA는 USPTO의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특허 및 상표 등록하에서 부여된 권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AIPLA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법원, 인터넷 및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 제1561호(H.R.1561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Fee Modernization Act of 2003)에서 나타난 내용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심사기간 중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 절차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출원인에 의한 강제적 선행기술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현재 심사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 보고서와 같은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 등과 함께, 결정계(inter partes) 재심사, 금지명령,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 악의적 침해에 관한 법률 개선에 대한 제안도 들어 있다.

Mark Kessler (J.P. Morgan Chase & Company의 경영이사겸 부 고문관,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s and BITS를 대표해서 참석)

금융기관에서의 특허 변호사는 잘 지켜지고 있는 비밀과 같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개인 지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는 하찮은 특허 주장에 맞서느라 바쁘며, 이는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코 끝이 나지 않는 문제라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

업 등은 수많은 특허 침해의 하찮은 주장에 위협받고 있다. 계류중인 침해 주장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1997년 이후로 붓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특허출원이 USPTO에서 절차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어도 4년이 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곧 금융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찮은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이러한 하찮은 주장으로부터 금융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만 하며, 물론 특허법하의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보호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선행 사용자의 방어권의 개선, 금지적 구제에 대한 기준 수정, 손해배상 규칙의 명확화, 특허등록 후 이의신청 절차의 설립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David M. Simon (Intel Corporation의 수석 특허 고문관)

특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첨단 기술에 중요하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성장의 주요 요소였다. 특히 IT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특허의 강력한 보호는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미국 기업은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부주의하게(improvidently) 부여된 특허는 특허 심사관들의 저임금, 불충분한 자원을 포함한 미국 특허상표청 내의 결함 등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부여된 특허는 남용에 대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려하는

바이다. 이렇게 특허제도의 최하위 레벨에서 기능하고 추구하는 사람(bottom feeder), 즉 저질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이를 무기로 소송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흔해지면서 Intel은 이들에대한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특허 괴물(patent trolls¹⁾)” 그러므로 Intel은 의회가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결정 짓는 기준에 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patent trolls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Intel은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 허용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출원인의 의무적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제출은 필요없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비생산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정계 재심사의 강화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John R. Thomas (Georgetown University 법대 교수

양질의 특허는 한마디로 유효한 특허이다. 양질의 특허는 법원에서 신뢰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 유효성 소송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기술 이전의 도구로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혁신 혹은 상업적 거래와 같은 가치 극대화 활동 관련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강화하게 된다. 반면, 저질의 특허는 해로운 결과, 즉 혁신율의 감소, 특허를 기반하는 거래의 저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특허 질의 개선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2가지를 제안하면, (1) 특허 출원인 책임의 신중한 확대, (2) 더 많은 대중의 참여이다. 먼저, 특허는 혁신자에게 강력한 상업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 있다. 두번째로, USPTO는 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적(private) 특허 심사관”을 더 잘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미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

Mexico의WTO 대사, 의약품특허관련협약이곧타결될것으로예상

9월에 Mexico의 Cancun에서 있을 WTO 146개국 모든 회원의 모임에 대한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하여 Canada의 Pierre Pettigrew가 초청한 25개국 장관들이 Montrea에 있다.

예전에 한 고위 외교관이 HIV/ADIS 및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된 의약품의 싼 복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그 의약품들이 역으로 부유한 국가들에게 밀수되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Mexico의 WTO 대사인 Eduardo Perez Motta는 “일부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난한 국가에게 특허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식적 합의를 수반하는 의장의 말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AP통신에게 말했다.

한편 Perez Motta는 이러한 문제가 Mexico에서 있을 9월 WTO전체회의 전에 해결될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WTO 규칙들은 이미 공중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허를 무시하고 보다 싼 국내의 일반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만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대다수의 가난한

神奈川과학기술키아카데미, cDNA 합성방법의특허취득

神奈川현 등이 출자하는 재단법인「神奈川과학기술키아카데미」는 단백질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完全長 cDNA」의 합성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미국, 유럽에서 취득해, 국내에서의 공여처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cDNA를사용하면, 특정의단백질을 시험관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인간게놈 해독 완료 후, 단백질 연구가 세계적 관심사인데 동아카데미는「이러한 기본적 기술로 공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명활동에 불가결한 단백질은 10만종 이상 있다고 여겨지는데 합성이나 작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세포안의 DNA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DNA의 97%는 무의미한 염기 배열.「단백질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이 cDNA다.

동 아카데미는 cDNA 중에서도 품질이 높은「完全長(long chain)의 것을, 9할이상 확률로합성하는 기술을 만들어 냈다.

발명한 加藤誠志 전프로젝트 연구실장에 의하면 cDNA의 합성 방법은 여러 종류 있지만, 불완전한 길이나 염기 배열의 좌우배치를 바꾸는 것을 쉽게 할 수 없었는데 加藤誠志는 그 문제점을 극복해 특허 취득에 도달했다.

그는「이 기술이 단백질에의 이해를 깊게 하고, 신약 개발 등에도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마이니찌신문

국가들은 현행의WTO 규칙이아무런의미가 없다. 2002년 12월에 모든 WTO회원국들은, 미국이 가난한 국가들이 외국의약품제조업체에게 그들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미국제약회사들은 가난한 국가로 가기로 한 의약품들이 부유한 국가들로 밀수입 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큰 개도국에 있는 일반의약품 제조업자들은 인도적인 목적보다는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합의를 이용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교착상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의약품제조업자 및 가난한 국가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AP

凸版印刷사, 콘텐츠유통사업 Bitway로BM특허획득

凸版印刷사(TOPPAN PRINTING CO., LTD)는 동사가 운영하는 콘텐츠유통사업인「Bitway」에 관하여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특허는 ISP, 콘텐츠제공자, 일반소비자 모두에게 높은 혁신성과 편리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특허의 명칭은 “유상정보의 유통방법”으로서 동사가 1999년에 출원하였다.

Bitway는 동사가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료콘텐츠 제공서비스로 idol gravure, 컴퓨터게임, 주간지·예능지의 기사, 어학·의학사전이라는 콘텐츠를 취급하고 있다.

1) 복유립신화트를(지하나 동굴에서는초자연적괴물로 거인 또는 난쟁이로묘사됨)

이번 취득한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유저가 유상콘텐츠의 구입의뢰를 송신 (2) 이에 유저가 계약하는 ISP에서 유저인증과 요금 부과를 행하고, Bitway에 접근키의 발행을 의뢰, (3) 이 의뢰에 기초하여 Bitway가 접근키를 발행, 유저에게 송신 (4) 유저가 그 접근키를 Bitway에송신, Bitway에서 접근키의인증을 행한다. 유저는 인증이 정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유저는 ISP에의한결제가가능하게되며, 또한 신용카드번호 등을 화면상에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ISP도 자사의 요금부과시스템을 이용하면서 Bitway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 콘텐츠제공자도 Bitway가 가진 판매채널을 이용하면서 사무작업에 쫓기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즉 동 특허의 권리보호대상은 유상콘텐츠를 중개·제공하는 Bitway와 그 판매채널인 ISP가 된다. 현재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ISP로는 ASAHI-NET, OCN, DION, So-net, BIGLOBE, ODN, Panasonic hi-ho 등이 있다.

凸版印刷에서는 이번 특허취득으로 금후 보다 많은 유상콘텐츠 판매채널 확보를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 특허 전체의 전략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일본 BIZTECH

미국줄기세포연구진, 타국가의 줄기세포관련특허독점우려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2년 전 부시행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연구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타 국가가 동 분야의 특허를 독점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년 전 부시행정부는 낙태금지 운동가들이 태아로부터 추출한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과, 과학자들의 질병치료목적의 연구를 찬성하는 주장사이에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침을만들어 시행하고있다. 즉 그당시 시점에서이미 연구자들이가지고있었던 70여개의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추출된 줄기세포에 대해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결정하였다. 2년이지난지금현실은매우다르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70여개의 줄기세포 중 일부는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고, 일부는 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 가능한 줄기세포는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12개도 배양액으로 쥐세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쥐 DNA와 쥐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텍에서 일하는 Robert Lanza 박사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마치한 손은 묶어져 있는 채로 외국의 과학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영국, 싱가포르,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Time Magazine

인도, 공중보건문제를해결하기 위한특허법개정예정

인도의 산업통상장관 Arun Jaitley는 TRIPs에 맞추기 위하여, 인도는 1999년 및 2003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특허법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중·국가적 관심사항 특히 공중보건에서의 특허권의 몰수·취소 및 가격책정, 강제 실시, 정부사용, 병행수입과 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완전한 법률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5. 1. 1부터 시행될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70 특허법의 세번째 개정은 국가적이고 대중적인 관심, 특히 인도에서의 공중보건에 관련된 관심들에서 완전히 균형을 이룰 것이다. 1970년도 특허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Arun Jaitley는 지식경제의 출현은 지재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이윤을 가져다주었으며, 인도는 지재권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및 행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지역사회와 보조를 맞춰왔다고 말했다. 한편, Arun Jaitley는 강제실시권을 통하여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나라가 의약품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는 TRIPs와 공중보건상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이 9월에 멕시코 Canun에서 개최될 WTO 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http://www.blonnet.com>

일본특허청의국제협력

일본 특허청은 ASEAN등의 아시아 지역 등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환경정비를 위해 JICA scheme¹⁾, WIPO 저팬 트러스트 펀드²⁾, 식물 신품종보호 국제동맹(UPOV) 저팬트러스트 펀드 등을 이용한 전문가파견, 세미나의 개최, 연수생수용 등 인재육성·교재개발·정보화협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 1) 일본국제협력사업단에서주관하는기술협력프로젝트의일종으로재외집단연수라고한다.
- 2) 일본정부는세계지식소유권기구(WIPO)에대해 1987년부터임의기부금을지급하고있다. 이기부금을근거로신탁기금WIPO Japan Trust Fund가조성되어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WIPO가입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매년장관회의, 심포지움등의개최, 연수생및지식재산권연구생을받아일본특허청으로부터전문가파견, 각국특허청의기계화, 근대화지원등의각종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인재 육성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 또한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장관회의를 개최
주요내용 : 각종 조사단의 수용, 연수생 수용, 전문가 파견

인도네시아

인재육성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추진. 또한 기계화·정보화 협력도 수행할 예정
주요내용 : 장·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한국

매년 1회양국에서 교대로장관회의를 개최.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기계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001년 이후에는 년 1회 상표심사관회의와 의장심사관회의를 개최. 주로 특허검색 결과의 상호이용을 위한 심사협력, 정보화협력 등을 추진
주요내용 : 조사단의 수용

타이

인재육성협력, 기계화·정보화 협력을 추진. 2003년도에는WIPO 저팬 트러스트펀드를활용해 타이지식재산국(DIP)의 사무처리 근대화를 계속하여 지원
주요내용 : 장·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심사협력 외

필리핀

인재육성협력, 기계화·정보화 협력을 주로 추진 2003년까지 JICA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사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리핀 지식재산권청(IPO)의 산

업재산권 사무처리 근대화에 필요한기술을 이전.

주요내용 : 장 · 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베트남

인재육성협력, 기계화 · 정보화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 JICA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에 의해, 산업재산권 사무처리시스템을 2004년을 예정으로 구축하여 베트남 국가지식재산권청(NOIP)의 산업재산권 사무처리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주요내용 : 장 · 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말레이시아

인재육성협력, 기계화 · 정보화협력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 2002 ~ 2003년도에는 JICA개발 조사에 의해 의장과 관련되는 사무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국(IPD)의 산업재산권 사무처리의 새로운 근대화를 지원

주요내용 : 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출처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전략대강

게놈시대유럽의생명공학정보기반 (bioinformatics infrastructure) 추진

최 근의 Genomic sequencing에서의 성취물들과 그로 인한 잠재적인 사회로의 기여에 대한 이해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 분야의 과학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과 조직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정치인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 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5기

Framework programme¹⁾의 「생활의질」 분야의 한 사업으로서 약 2000만 유로의 자금을 투자하여 유럽의 생명공학정보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1개국의 25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유럽 분자생물 연구원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의 부서인 유럽 생명공학정보원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이 주관하는 “TEMBLOR”는 중요 생명공학연구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면적인 프로젝트이다.

많은 기존의 유럽에 있는 생명공학정보관련 기관들은 중요한 연구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TEMBLOR는 이러한 기존의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러한 기존 데이터를 연결하여 각 데이터베이스간의 교류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바로 그 자료의 완전성과 쉽고 빠른 접근성에 있다고 동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EBI의 Graham Cameron부원장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생명공학 정보의 검색은 관련된 과학문헌이나 특허정보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출처 Cordis News

미국, 연방연구개발에대한예산 책정및우선권결정문제

현 재 미국 의회 제108회(2003~2004년) 회기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토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예산책정에 관한 우선권 결정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 의회 산하의 연

구기관인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보고서의 제목은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ing and Priority-Setting Issues, 108th Congress”로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어떠한 분야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보고서이다.

연방 정부의 R&D 자금 책정 우선순위는 대통령과 국가적 선호에 반영하여 변경된다. 1980년대에는 국방 R&D가 지배적이었지만 클린턴 행정부 기간인 1990년대에는 연방 R&D의 약 50% 정도로 감소하였다.

비국방 R&D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을 추구하면서 우주 R&D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에너지 R&D가 부가적인 우선사항이 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는 보건 R&D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의 9.11 사건 이후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수행하기위해서국방 R&D가다시 우선사항으로 떠올랐다.

2004년 회계연도의 대통령의 R&D 예산 요구액은 약 1,223억 달러로 2003년도의 세출 수준보다 약 4.4% 증가된 것이다. 이는 주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재향군인사무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내무부,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자금이 증가한 것이다. R&D 자금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정부기관은 교육부, 상무부, 농무부, 교통부, 환경보호청(EPA)이다. 대 테러리즘 R&D 자금지원은 약 30억 달러가 요청되었다. 2003년 R&D 자금 지원에 관한 의회의 세출 관련 조치는 요구

된 수준을 초과하였다.

미국의 R&D 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R&D 부분은 국가 전체분의 27%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R&D 자금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R&D가모든분야에걸쳐서증가되어야 하는지, 우선권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보건 및 비보건 분야간의 자금에 있어서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예산요구안에 “연방 과학기술” 예산항목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미래의 통일된 과학기술(S&T) 예산항목에 대한 전조가 될 것이다. 2004년 예산요구안에는 네트워킹과 정보 기술, 기후변화과학, 나노기술을위한 3개의 정부 간 R&D 프로그램에 대한자금이 포함되어있다.

R&D 조정을 위한 다른 요청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우선권 책정 메커니즘, 내각수준의 과학기술기구, 기능적 R&D 예산책정, 그리고 의회 내에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재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부는 정부 실적 및 결과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고무되어, R&D 예산책정에 대한 몇몇 실적 측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정부 및 비평가들은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실적별 예산 책정에는 더 나은 데이터 및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립과학재단(NSF)이 재정 관리 절차에 있어서 훌륭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은 R&D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관들을 실적 관리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 EU commission이 주도하는 EU차원에서의과학기술발전을위한기본계획. 현재제5-6기계획이진행중에있음

중국, 4,200만장의해적판디스크 폐기

지난 화요일에 중국 당국자들은 해외로 부터의 비난을 침묵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 노력의 일환으로 4,200만장 이상의 밀수 및 불법복제된 CD를 목재분쇄기에 넣어서 폐기하였다.

몇 개월마다 한번씩 그러한 광경을 연출하는 중국정부는 이번 건을 가장 큰 규모의 불법 CD, DVD 및 다른 비디오디스크의 폐기라고 불렀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의 소굴이며, 중국 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속하겠다고 장기적인 약속을 해왔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그러한 불법적 관행이 근절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 및 호주의 영사관 직원들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600만장의 불법 디스크가 분쇄되는, 광둥 남부 지역의 산웨이 시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되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하였다. 한편 베이징에서는 120만개의 불법 오디오 비주얼 제품이 폐기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밀수단속 정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및 국내에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가하고 있다.”고 관련 고위 공무원인 Mr. Gui가 중국 중앙TV 뉴스에서 말하였다. CCTV는 수백만개의 디스크를 삼켜서 도로 및 주차장에다 영화와 음악의 잔재를 토해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목재분쇄기를 취재하였다.

디스크의 95% 이상이중국으로밀수되어 들어오고 있고, 지하 제조업체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약 140개의불법 디스크제조업체들이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불법위조행위로 인하여 서방기업

들은 매년 약 16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조치로까지 이르게 한 적도 있다.

출처 AP

일본경찰청, 상반기의식재산권 침해사건역대최고

일본 경찰청은 「2003년 상반기에 있어서 주된 생활 경제 사범의 단속상황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검거사건 수 141건, 검거인원 220명으로, 모두 1990년 통계 시작 이후 최다이고, 특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건은 38건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50%이상 증가되었다.

검거 사건의 내용에서 본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위조브랜드 사범으로는 일본방문 외국인에 의한 길거리 노점판매가 1/3 남짓으로, 특히 대도시가 눈에 띄고 해적판 사범으로는 PC사용자에 의한 해적판 CD·DVD의 작성, 판매가 눈에 띈다. 네트워크이용사범으로는 인터넷 경매 이용의 부정상품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 보급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게임 소프트 등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침해)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출처 일본지재정보국 IP News

지재권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지재권 연구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타인에 대한 배포, 전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한 지식재산권 용어



applicable law

근거법률, 준거법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의장등록출원인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평등주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파리조약의 동맹국 국민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의장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한 때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application

출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application fee

출원료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

application for the grant(registration) of a patent(mark)

특허(상표) 허여(등록)출원

application for the renewal of a patent(mark)

특허(상표)갱신출원

application in English(Chinese, Japanese)

영어(중국어, 일본어) 출원

application/request for inspection

열람신청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대표자 선정

음향을 이용한냉각기술, 실용화 가능성 보인다.

현재의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냉각방식 대신 음향을 이용한 무공해 냉각기술이 실용화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음향냉각(acoustic refrigeration)기술이라 함은 음파를 발생시켜 냉각관에서 진동시킴으로서 가스를 압축·팽창하게 하여냉각효과를 얻는 기술을 말한다.

지금 가정이나 직장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나 산업활동에 쓰이는 냉동기는 프레온가스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어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문제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환경친화적인 냉각기술이 연구되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음향이용 냉각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이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음향냉각이라 하면 냉매를 사용치 않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냉동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큰 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전체 냉각부가 완전 밀폐되어 있으므로 소음은 일반 냉장고나 냉동기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음향냉각의 장점으로는 무공해·저소음 외에도 회전이나 마찰운동을 하는 부분이 없어 유지보수가 별로 필요없고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며, 스피커의 음량제어에 의한 냉각장치의 용량조절이 매우 용이하여 가정용 냉장고에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냉각효율이 일반 냉동기에 비해 약 20~30% 낮은 점을 들 수 있으나, 향후 열교환기의 개량, 음향장치의 효율적 설계 등으로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차세대 휴대폰서비스에 맡기세요.

최근 사용자의요청에만대응하던기존의수동적휴대폰서비스 개념과는달리 사용자의직접적요구와상관없이위치확인기술을 이용하여고객에게새로운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차세대휴대폰 서비스(LBS : Location-Based Service)가 주목을받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80년대의단순음성통화, '90년대중반의문자메시지 및 무선인터넷서비스, 2000년대초반의멀티미디어전송서비스를 뒤이을차세대휴대폰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유괴, 조난사고등 긴급상황발생시피해자의위치 확인뿐만아니라고객위치 및 상황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전자상거래에서또다양하게이용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위치기반서비스가일반화되면지금까지 “불가능하다”의미로 자주 쓰이던 ‘서울에서김서방찾기’라는속담이 “쉽게찾을수있다”라는의미로해석되는상황을이룰것이다

음향냉각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은 1988년도에 음향냉각장치가 출원된 이후 매년 7~8건씩 꾸준히 출원되고 있고, 일본은 1997년 이후 최근까지 활발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냉각장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에 2건, 2000년에 2건, 2002년에 2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연구개발이 늦은 관계로 기술의 격차가 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음향냉각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특허청

특허청통계에따르면휴대폰을통한 위치기반서비스관련 특허출원이 '97년부터 '99년까지는매년 60여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 이후에는매년30여건이상이출원되는것으로나타났다 출원인별로보면 고가의장비 및 기술적노하우의축적이요구되는 위치확인관련기술은국내대기업및외국기업이주도하고있으나 위치확인과관련된응용서비스기술은중소·벤처기업의출원이 대기업의출원을 능가하고있는상황이다

위치기반서비스의기술개발은광고의시장성증가, 홈쇼핑등 전자상거래의활성화에따른 물품 이동경로의최적화, 긴급상황에 대비한안전서비스의수요증가및 위치기반게임과같은 신세대취향의엔터테인먼트분야에따급될것으로보이며 이와관련된특허출원도 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위치기반관련 휴대폰서비스기술은미래의정보통신산업을 이끌 꿈의 시스템으로알려진 ‘유비쿼터스 ubiquitous’ 분야의 핵심기술이될 것으로전망된다

출처 특허청

IMT2000 대비 고용량 저가 신소재[리튬-설퍼(lithium-sulfur) 2차전지] 출원증가

휴대폰, 노트북, PDA 등 휴대용 정보기기의 급성장과 차세대 정보기기인 IMT 2000 사업의본격적인 상용화에대비 영상정보의 전송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휴대 단말기에 고용량 저가 신소재로 [리튬-설퍼 2차전지] 개발에 2차전지업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튬-설퍼 2차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전지나, 리튬폴리머전지의 용량 600~800mAh 보다 최고 두배 높은 1200mAh을 출력할 수 있으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활물질로 사용되어 왔던 고가의 리튬코발트 대신 가격이 저렴한 설

회 원 동 정

SK케미칼

「작두콩으로거친피부를 다스린다」



화학 소재 전문업체인SK케미칼이천연 자생식물에서추출한천연물질을이용한 스킨케어(skin care)물질을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작두콩으로알려진 도두와 황

련 백자에서추출한천연성분으로구성된 이물질은여드름 등 염증성 피부관리에 특효를지닌 것이특징이다.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는10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투입, 3년간의연구 끝에 개발한 이 물질의 상용화를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100% 식물에서추출한 천연활성물질임을강조하고 다양한 스킨케어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천연식물만을이용한 스킨케어 제품개발은국내 업계에서는매우 드문 사례이다.

A304EX로 명명된 이 물질은트러블이 심한 문제성 피부의예방 및 개선에도움을 주는 메디칼 케어 화장품으로거듭날

계획이다 이 추출물은바르기만하면 여드름과같은 피부염증을예방하는동시에 손상된 피부의빠른 회복에도뛰어난 기능을발휘해피부미용에효과적이다.

A304EX를 연구, 개발한 이순근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연구원은 ‘SK케미칼은 최근 문제성피부를위한 메디칼 케어 화장품의수요 증가에맞춰 이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SK케미칼신규사업팀은A304EX를 토대로 여드름 등 염증성피부를위한 다양한 제품의메디칼 케어 화장품을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SK케미칼 홈페이지

퍼게 양극활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이 지난 3년간 [리튬-설퍼 2차전지]의 출원동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튬-설퍼 2차전지는 ‘99년도 이전에는 전혀 출원되지 않았으나, ‘00년도에 들어와 17건이 출원되었고, ‘01년도에도 17건이 출원되었으며, ‘02년도에는 25건이 출원되어 ‘01년도의 17건에 비해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삼성SDI 48건, 뉴턴에너지 8건 등으로 대부분의 리튬-설퍼 2차전지기술이 국내 전지업체에 의해 출원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의한 출원은 거의 없어 리튬-설퍼 2차전지에 있어서는 국내 전지업체가 외국 전지업체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시장에서 2차전지의점유율은 일본이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한국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00년도 2.5%에서 ‘01년도 9.6%, ‘02년도 15.8%를 차지하고 있고, ‘03년에는 19.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2차전지의 연구개발에국내전지업체가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특허청

꿈의의술유전자치료의 핵심인 유전자전달체의국내특허출원은 내국인이최다

21세기 “꿈의 의술” 유전자치료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과 지식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인간의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

이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치료법이 그것이다.

‘유전자치료’란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화학요법에서 화학물질이 치료제로 쓰이는 것처럼, 유전자 자체가 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 자체에 결함이 있어 발생하는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질병들에 대한 치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렵다.

유전자치료의 핵심, 유전자전달체

유전자치료법은 1990년 국립보건원(NIH)이 세계최초로 유전자의 고장으로 인하여 생긴 면역결핍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치료유전자를 집어넣은 임상실험을 한 이래 암, 관절염, 혈관질환, 에이즈 등 각종 난치성질환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치료법은 인체에는 안전하면서 치료유전자를 병든 세포에만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유전자전달체가 핵심이다. 즉 21세기“ 꿈의 의술”인 유전자치료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하게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고, 장시간 유전자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전달체 관련 기술현황

3,5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 임상실험에서 사용된 유전자전달체는 크게 바이러스성 전달체와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로 구분된다.

바이러스성 전달체는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이나 증식능력을 제거하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치료유전자를 심어주어 우리 몸의 세포에게 유전자를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성 전달체는 전달효율 및 지속성 면

에서 우수하나 면역독성에 의한 안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하나인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는 주로 양이온성 지질 또는 고분자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음이온성인 DNA와 이온결합에 의해 복합체를 형성하여 우리 몸의 세포내로 전달되는 것이다.

바이러스성에 비교하여 생분해성, 낮은 독성, 사용상 간편함의 장점이 있으나 치료유전자의 전달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유전자전달체의 국내특허출원 현황

연도별 동향을 보면, ‘96년에 국내 최초로 출원되어 ‘02년까지 총 93건이 출원되었으며, ‘99년 이후부터 ‘02년까지의 출원이 76건으로전체대비 82%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별 동향으로는 한국이 35건으로 전체출원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순이다.

기술내용별 동향으로 유전자공학 분야가 전체의 46%, 의약품제제 41%, 탄소환식화합물과펩티드 화합물이 각각 4%의 순이고, 유전자치료의 비바이러스성 전달체가 전체출원의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이러스성 전달체 39%, 기타 4%의 순이다.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출원증가율이 바이러스성에 비해 높은 것은 나노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현재 개발중인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형성이 기대 되는데,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약점인 유전자 전달효율을 향상

시키면서 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약점인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전달체가 개발된다면 유전자치료법은 ‘꿈의 의술’만이 아닌 ‘현실의 의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특허청

보안감시시스템, CCTV는 [지고], DVR은 [뜨고]

보안감시 시스템이 CCTV(Closed Circuit TV)에서 DVR(Digital Video Recoder)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DVR은 아날로그 영상감시장비인 CCTV를 대체하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저장 장치로 CCTV에 비하여 동영상 품질이 우수하고, 장기간 녹화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영상전송과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신규수요는 모두 DVR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개체시에는 DVR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보안감시 시스템 시장에서 DVR이 많이 보급되고, 2001년 미국 9.11테러 발생이후 보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9.11테러 발생이후 출원이 40%이상 증가했으며, DVR과 관련된 출원이 금년 상반기에30건이 출원되어 이 기술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 : 6% → 2002 : 17% → 2003 상반기 : 30%) 그리고 벤처기업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개인 및 중소기업(대부분 벤처

기업)의 출원이 63.3%, 대기업 31.6%, 외국인이 4.1% 순으로 ‘98년과 비교(대기업 : 55.7%, 중소기업 : 32.7%, 외국인 9.7%)시 기술개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종전의보안감시 시스템이 CCTV를 이용한단순 감시에 그치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 휴대폰, GPS 등을 이용한 다양한 원격감시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일반인과 벤처기업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출원도 건수면에서는 금년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로 상반기에 총 31건이 출원되어 전 년도의 총 출원건수 28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DVR의 성능개선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국내업체의 기술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아이디스, 코디콤, 성진씨엔씨, 3R등 벤처기업의 기술력도 탄탄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등하거나,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DVR의 경우, 국내업체보다 먼저 개발한

소니 등 해외 DVR업체와 비교하여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으며, 가격대비 성능비를 평가하면 더욱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에 1.5억달러, 2002년에는 2.6억달러, 2003년 5월말 현재 1.6억달러로 매년 5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주력 품목으로의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 특허청

빙과 시장의 새바람

올해는 기능성 빙과와 짜먹는 빙과가 인기

금년에는 특히 빙과류 제품에 기능성 바람이 불면서, 그 동안 빙과류 시장이 주로 10대를 대상으로 청량감이나 단순히 갈증을 풀기 위한 제품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건강과 미용을 강조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되어 빙과류 소비층이 성인층은물론 노년층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성 제품으로는 녹차, 뽕잎, 홍삼을 원료로 한 빙과, 10대 들을 위한 비타민 함유 빙과, 미용을 생각하는 여성을 위한 알로에를 첨가한 빙과, 망고나 키위 맛을 강조한 빙과, 호떡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 빙과 등 건강지향적인 제품의 개발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능성 빙과류의 매출규모가 전체 9천억 시장 규모중 100억원 미만이었나, 올해는 300억원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짜먹는 빙과 제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짜먹는 빙과 제품은 망고, 바나나, 복숭아 등의 부드럽고 향긋한 맛과 함께 용기 자체가 눌렀을 때 가래떡처럼 분출하는 느낌을 주며, 잠금장치가 있어 먹다가 보관하기 편리한 점 때문에 인기가 있다.

97년 이후 빙과 제품의 특허출원 동향

1997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빙과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총 167건이며, 이중 빙과 제품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 80건이고, 빙과류의 제조장치와 그 관련기술이 87건이다.

빙과 제품 관련기술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출원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1년 그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2년에는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빙과류 제품의 조성물에 관한 출원 중에는 천연생과일을 재료로 한 출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약리효과가 있는 재료를 첨가한 출원이 8건, 저칼로리 효과가 있는 출원 7건, 녹차를 원료로 한 출원이 5건이고, 다른 식품과 결합된 퓨전 빙

과류가 6건이고, 기타 숯, 황토, 장미꽃, 어성초, 홍시, 콩, 도토리, 당근 및 어성초를 재료로 한 출원 등 빙과류 제품에 다이어트, 미용, 건강 기능성 원료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약재를 이용하여 어린이에게도 쉽게 한방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빙과 재료가 다양화되고 있다.

구슬형태의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기호성을 강조한 출원도 2000년 이후 15건이 출원되었으며, 또한 즉석에서 빙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믹스제품에 관한기술이 7건출원되는등 다양한 기능성 빙과 제품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미꽃 분말 또는 장미꽃 추출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제조 기술이 특허출원되어 장미꽃의 다양한 색상과 은은한 장미향을 아이스크림의 달콤함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장미꽃의 항산화 작용은 다른 꽃보다 상당히 높아아이스크림에 함유된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항암효과도 인정된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빙과류 제품의 관련 기술은 그 재료가 다양화되면서 기능성과 기호성을 겸한 빙과 제품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급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는 인공향료나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생과일 등을 즉석에서 갈아만든 저지방, 저칼로리의 빙과류 제품이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여성이나 노년층 등 빙과 제품의 소외계층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어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특2003/9

분 · 쟁 · 엇 · 보 · 기

인텔 - 브로드컴, 특허분쟁완전 매듭

반도체업계와이벌인인텔과브로드컴이오랜특허분쟁을매듭지었다
인텔과브로드컴은지난2000년부터 계속됐던특허 분쟁을종결짓고양사의 다양한기술들에대한라이선스협의를했다고AP통신이전했다
양사는지난3년 동안 연방법원, 국제

무역위원회(ITU) 등에반도체, 패키지관련 소송을잇달아제기하면서치열한법정 다툼을벌여왔다이번 합의로그 동안 제기됐던모든소송을취하하게됐다
통신칩 제조업체인브로드컴은이번 합의로올해3, 4분기동안인텔측에6천만 달러를지불하게된다

양사는이번 주 초 판사에게그래픽칩 관련 소송 각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제기된 이 소송을 통해 브로드컴은 인텔측이 자신들의 그래픽 칩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인텔 역시 즉각 맞제소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출처 PatYellow.com

전자상거래의 BM특허와 컴퓨터관련 발명에 관한 해법



장 태 종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콘텐츠개발실

목 차

- I. 서
- II. 전자상거래 BM특허의 의의
 - 1. 전자상거래 BM특허와 인정의 연원
 - 2. 전자상거래의 국내출원 및 심사의 현황
- III. 전자상거래 BM특허와 제반 문제점
 - 1. 출원단계의 문제점
 - 2. 공개단계의 문제점
 - 3. 심사단계의 문제점
 - 4. 실시단계의 문제점
- IV.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와 제반 문제점
 - 1.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2) 특허법에서의 보호
 - 2. 특허법의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보호의 문제점
 - (1) 기록매체 특허인정에 따른 문제점
 - (2)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문제
 -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의 문제
 - (4) 독자적 보호론
- V. 컴퓨터 발명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현황
 - 1. 유럽연합(EU)
 - 2. 미 국
 - (1) 대법원 판례
 - (2) 연방항소법원 판례
 - (3) 특허상표청(PTO)의 심사기준
 - 3. 일 본
- VI. 결론

I. 서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인터넷비즈니스의발전은 매우 짧은 시간에많은 경험하고이제 새로운조정 국면에들어가고있다.

1999년 폭발적으로생겨나기시작했던인터넷관련업체들을필두로한 벤처열풍은전국을달구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최근잠잠해진테헤란로나여러 업체들의사정을들어보면이미 정리될 만한 많은 곳들이 정리되고 겨우 살아남은 기업들이새로운 도약을준비하고있다.

전자상거래의BM(Business Model)이라는 용어는 지난1990년대 중반부터지식재산권분야의화두가 되어왔으며, 이제는너무나 익숙하여오히려 진부한말이 된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년990년 대 중반부터BM특허라고분류될수 있는컴퓨터이용 발명에대한출원이이루어지기시작하여지난1999년에는 국내의 벤처열기와맞물려서그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500%의 출원증가가있었으며추세는 2000년 상반기까지지속되어BM출원 거품 논쟁이 일기도하였다.

2003년 중반기를넘어선지금 BM출원 발명의성

장세가현격히줄어들었으나퇴조기라기보다는안정기에 접어들고있다고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전자상거래BM특허의의의 및 제반문제점을알아보고컴퓨터프로그램특허와제반 문제점, 컴퓨터발명의보호에관한 외국의현황에관한 제반 문제점, 컴퓨터프로그램특허와문제점 등에 관한 것으로전자상거래BM특허와컴퓨터관련발명에 관한해법을찾고자한다.

II. 전자상거래 BM특허의의의

BM특허는 주로 컴퓨터를활용하여비즈니스를 행하는 방법 또는 그 방법을 실시하기위한 시스템을 발명대상으로서보호하는특허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비즈니스모델특허란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방법 또는 시스템에관한 특허를 말한다.

상거래의대상은넓어 넷 판매, 금융, 회계, 투자, 입찰, 인재소개, 대리업무여러 서비스업무 등 현대사회에서경제활동의모든 분야가포함된다. 사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발명의내용에따라 여러 가지로분류된다.

- 1) Business Model; 경제법칙및 현물시장의거래방법
- 2) Processer Model; 시계열적인데이터처리과정으로 업무의데이터흐름(작업공정)
- 3) Data Model; 업무를다루는데이터 집합 및 속성 정보

이러한기초기술(컴퓨터, 인터넷, 통신)과경제법칙(Business 모델)을결합한특허출원을BM특허라고 하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구현된 Business방법에 인정되는 특허로서 Business Model, Processer Model, Data Model이 결합된 발명을말한다.

특허제도는적법한절차를거쳐 특허권자에게독점 · 배타권을부여하는것을근간으로하는제도로서, 그기본 취지는많은 시간과비용을투자하여창의적발명행위를한 자에 대한 사익을보호하는동시에특허기술의공개를통하여산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발전을촉진하고자하는 공익적측면을띠고있다.

이러한특허제도의기본 취지하에서 「특허대상」역시 그 당시의산업 · 경제구조의변화및 국 · 내외의요구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되어왔다¹⁾.

우리나라가BM특허를 인정하게된경위도 이와 궤를 같이하지만BM특허의인정이국내 관련기술 및 산업의내적 성숙 및 자체적필요성의인식에서 오랜 기간충분한논의를거치고판례 등을 통한 이론의정비와함께 진행되었다기보다는국내 · 외압력과급작스럽게몰아닥친국내의벤처열풍에비롯된 급격한BM 관련출원 증가에따른 대응 조치로서 서둘러이루어짐에따라BM특허의성립성에대한 논의는정리되어가고 있다.

1. 전자상거래 BM특허와인정의연원

BM특허가지식재산권분야에서부각되게된 직접적 계기는미 State-Street 사건²⁾에 대한1998년

1) 특허법9차개정(1986.12.31) : 물질특허의도입
10차개정(1990.1.13) : 무성식물종괴경 · 괴근 · 구근허용, 음식물또는기호물특허의인정
13차개정(1995.1.29) : 불특허대상에서 “ 원자핵변환방법에의하여제조될수있는물질”을삭제
2)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s.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7월 23일의 미국 연방항소법원의판결에서영업 방식의 특허성을인정한것으로비롯되지만BM특허가 배태되고성장한근원적인배경은인터넷및 컴퓨터를기반으로하는 정보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 인하여지구적차원에서기업의영업활동 등을 포함하는각종업무 행위가컴퓨터및 인터넷등의 네트워크에기초하여야어러지는방식으로재편되고 있는 경제 및 산업 구조로부터비롯된것이라고본다.

이는 컴퓨터가관련되는발명에대한미국에서의 처리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여보면 명확해진다. 7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2진화0진법을순수한2진법으로 변환하는방법」을 수학 공식의사유화라고 보고그 특허를거부했으며1978년 Flook 사건에서는 「접촉분해공정의경보한계치를갱신하기위한 방법」역시 특허를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 컴퓨터산업이미국 내 산업의주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고컴퓨터를제어용수단으로이용하여각종공정에적용하는사례가일반화되자981년 3월 3일 Diher 사건³⁾에서 미연방대법원은고무형성공정을제어하는컴퓨터프로그램을포함하는 방법에대한특허성을인정하게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9년 미국 특허 상표청은 Freeman - Walter - Abele 테스트⁴⁾에 기초한심사

편람을 작성하였고, 순수한수학적 알고리즘또는 단순한계산을 수행하기위한 것이 아니고물리적 요소또는공정에응용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에만 특허가공식적으로인정하기시작하였다.

그후 산업 및 각종 경제활동에컴퓨터에대한 비중이 더욱 커지게되고 그 의존도가높아지는것과 궤를 같이하여1994년 들어서는Alappat 사건⁵⁾을 통하여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에대한특허성이실질적으로확정되게되었다. 특히, 이사건은장치의 기능적한정을통한소프트웨어발명의실질적인정을 하게된게기가되었으며, 이러한기재 방식은현재국내의많은BM특허의청구범위작성의기본틀이 되고있다⁶⁾.

이러한변화 속에서, 정보기술을이용한각종 업무 처리행위 및 영업행위 자체가새로운경제구조의 기본골격이되자, 컴퓨터를이용한업무 처리및 영업 방식 자체에관한 특허출원이미국을필두로 하여1990년대부터상당한수로이루어지게되었고, 미국 특허 상표청은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위 State-Street 사건 이전부터이미 특허를허여하고 있었으며위 State-Street 사건을통하여BM특허의 특허성을사법부가재차확인해주었다.

결국, 기존의지식재산권영역에 정보기술을이용한 영업 방식을포함시키는것은 이미 상당히변

화한 경제 · 산업구조의 반영 및 새로이 일어나는 산업계의요구에대한수용 및 각 당사자간의이해관계 조율을위하여필연적으로행해졌던것이다.

2. 전자상거래 BM특허 국내출원 및 심사의현황

IPC G06F-017/60으로 분류된국내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1994년38건, 1998년116건으로비교적 완만한증가세를보이다가, 1999년463건, 2000년 300건, 2001년 450건 2002년도 480건 2003년 7월달에는 월 500여건이출원되는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 있다.

<표 1> 전자상거래 BM특허 국내출원 건수

구 분	94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출원건수	38건	116건	463건	300건	450건	480건	500여건

주목할 점은 출원의 대부분은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아니라국내 개인 또는 법인에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폭주는BM특허와관련하여단순 아이디어도특허 받을 수 있다는공중의 오인식과 국내벤처열풍에비롯된 묻지마출원이 많았던것도 주요한원인이다.

따라서, 개인이나중소벤처기업이출원하는BM특허는그 내용에있어서, 추상적아이디어를컴퓨터 관련장치⁷⁾를 매개로하여 표현하는것이 대부분이며, 특허적격성을갖추지못한 경우도많다고보여진다.

한편, 심사현황을살펴보면BM특허의IPC 분류

7) 국내BM 출원명세서에컴퓨터관련된구성요소는클라이언트컴퓨터, 서버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통신수단, 처리수단등, 기술적측면에서는초보적이며전혀새로운것이없는것이대부분이다.

는 G06F 15/00~19/00에 해당되며, 한국특허청은 2003년 7월 현재 BM발명을보안 · 인증, 홍보 · 광고, 오락 · 게임, 통계관리 · 수요예측, 추첨 · 복권 발행, 결제 · 금융, 경매 · 입찰및개 분야로분류하여 7인의심사관이심사하고있다.

III. 전자상거래 BM특허와제반 문제점

BM 발명이인정되기시작한것은불과수년전이므로 아직까지는여러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 것이사실이다. 이하, BM 발명의출원시, 심사사및 등록후의 실시단계에서의발생될수있는문제점을 분석하고자한다.

1. 출원단계의문제점

BM특허가논의되기시작한초기 단계에서는대부분의출원인은BM 발명을단순아이디어라고생각한 경우가많아서대부분의출원이추상적이고 구체적인수단을 제시하지못하는 것들이었다. 이를 대리하는변리사등의 전문가들도BM특허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충분하게출원인을지원하지못했던 경우가많다.

또한, BM특허초기에특허청의선행 기술 자료의 미비, 심사기준의부재등, BM 발명을인정해야 한다는사회 분위기등으로인하여 적정한심사가 이루어지지못할것이라는판단하에과도할정도로 많은 BM 출원이심사 청구된 것도 사실이고이에 따라적정한심사가이루어지지못해특허요건을갖추고있지못하다고의심되는BM 발명이특허된사

3) Diamond v. Diher

4) 출원된발명이특허될수없는 ‘ 수학적알고리즘 ’ 또는단순한계산인지여부를판정하기위한것으로서2단계로이루어진다. 제1단계는특허청구범위에수학적알고리즘이포함되어있는가여부를판정하는것이고, 제2단계에서는수학적알고리즘이충분히응용되고있는지여부에대해판단한다.

5) 당해발명은디지털오실로스코프에서매끄러운파형표시를할수있도록한장치에관한것이고, 문제가되었던것이다음의청구범위제15항이었다.

【제15항】

입력파형의샘플크기를나타내는벡터목록을엔티엘리어스된화소의명도데이터로변환하기위한라스터라저에있어서,
i) 데이터목록에서각벡터들의끝점들간의수직거리를결정하는수단과,
ii) 상기벡터에의해서펼쳐진픽셀들의열의엘리베이션을결정하는수단과,
iii) 상기수직거리와엘리베이션을정규화하는수단과,
iv) 상기iii)의정규화된수직거리와엘리베이션에관한소정의함수로서명도데이터를출력하는수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라스테라이저장치.

6) 정연용, “ 전자상거래와특허보호,”Pharma Koreana, 2000. 5.

례⁸⁾도 있다.

예컨대, 어떤영업 방법을수행하는정보시스템⁹⁾의 구축에있어서, 현실적으로어떤 한 사람이업무 분석, 설계, 구현및 테스트를모두 적절하게행할 수 있는 경우가없다¹⁰⁾. 따라서, 정보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는거의 모든 경우에각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별도의팀이 각각담당하게되고 숙련된프로젝트매니저가이를 총괄하여관리하는 방식을취하고있다. 이는오랜시도와오류속에서언어진중요한경험법칙에비롯되는것이다.

특허 명세서는출원인에게독점적권리를부여하는 기초가되는 것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일반 공중에게공개되어타인의연구 · 개발활동에도움을 주는 기술 공개서로서의공익적의미도매우 큰 것으로서기술의공개는공보발행의기본취치이기도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볼 때, 구체적구현수단조차 제대로개시하지못하고막연하고추상적인기재만을 된 명세서는산업 및 기술 발전에기여하지못할 것이라는것도분명한사실이다.

따라서, 출원시에청구하고자하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실시가능한상태로표현되도록하여 심사시발명의내용을용이하게파악할수 있고, 타인이 발명의구체적 구현 방식을명확히이해할수 있도록하고, 그보호 범위를명확히확정되도록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불측의 손해를입는 것을 방지할필요가있다.

2. 공개단계의문제점

BM특허는일반특허와동일한특허로취급을한다. 즉, 특허를출원하면곧바로돈이굴러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출원보다도 공개시점이되어야만이 권리가발생을하게된다. 바로보상금청구권을두고하는얘기다.

보상금청구권신청은특허출원이후부터공개시점에서는제3자의권리를침해할 경우에는이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공개시점이후부터등록된시점으로3년내에신청을할 수가있다.

출원공개는특허출원예대하여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있는 출원은그 우선권주장의기초가 되는출원일)로부터1년 6개월이경과한때 또는출원인의신청이있을 때는이를특허법원이받아들일 수 있다.

출원이공개된경우출원인은출원공개후설정등록시까지사이에업으로서출원발명을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법정요건을갖춘상태에서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다만, 보상금청구권의행사는 특허권의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가능하다.

출원공개가있을 때에는누구든지당해발명이특허요건을결한다거나선원주의에위반된다는취지의 정보를 증거와함께 특허청장에게제공할수 있다.

출원공개되어있는 발명/고안을타인이업으로서 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우측 침해가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우선심사를청구할수 있다.

우선심사를거쳐서등록이되면 침해자에게가처분신청, 고소, 손해배상청구등의 민형사상의조치를 취할수 있다

3. 심사단계의문제점

현재특허청에서는BM출원을7개의분야로분류하고, 7인의심사관이이를 심사하고있다. 다만, 위세분류는형식적구분에따른 것이고, 실제이들 분류에 따라 각 심사관이분야별전담제로심사가 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그러나, 점차심사의전문성이 확보될것이고, 시간이지나면서보다 정치한심사가 이루어질것이라고사료된다.

문제는BM 발명의실질적보호대상이영업방법 이라는데 있다고보여진다. 즉, 특허청의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심사 지침에서도발명의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 새로운영업방법이새로운구성요소를 구비하여구현된경우 에는 진보성이있다고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으며, 특히위 ‘ 구성요소 ’ 는 컴퓨터기술이아니고영업 방법상의구성 요소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종래의컴퓨터관련 기술을 이용하여새로운영업방법이구현되는경우에는 진보성을갖추고있다고해석되고있다¹¹⁾. 이는 물론 BM 발명 인정의기본취지및 위 심사지침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에 적합한 기준임은자명하지만, 이로 인하여현재의심사체계의기본틀에서는해결

하기 어려운몇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 있다.

첫째, 심사대상의확정에 따른 어려움이예상된다. 전술한바와같이, BM 출원명세서가제각각의 표현 방식으로구체성을결여하고있을 때, 심사관이 출원된BM 발명의구성 및 보호 범위를파악하기란용이한일이아니다.

둘째, 진보성판단을 위하여출원 발명과의대비를 위한 선행자료 검색에따른 어려움이다. 현재의 심사 실무상가장 주요한인용 문헌은국내외의발행된특허 공보이다. 그러나, BM 발명은그 실질적 청구 대상이종래의기술에관한 것이아니라, 영업 방법에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특허공보이외에경제 · 경영에관한 문헌 또는 해당 업무분야 특유의전문 문헌을검색하여야할 것이다. 즉, 검색대상이심대하게넓어진 결과가되며, 특허문헌처럼체계적정리가되지 못한 경우가많아실질적으로적절한검색이불가능할 가능성이있다.

셋째, 선행관련 분야의 선행자료를 검색하였다 하더라도이에 대한 적절한해석의 문제가있을수 있다.

즉, 대체로기술적배경을지닌 심사관들이경제 활동과 직 · 간접관련을가지는 특정 분야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충분한해석 · 적용이가능하느냐의 문제다. 대안으로서, 경제 · 경영분야의 지식과 경험이있거나특정분야의전문 지식을가진 자가 심사를 하도록할 수 있겠지만, 일단BM 발명의구체적 분야가매우다양하여업무전문가를BM 발명의 분야별로운영한다는것도현실적방안이되기 어렵고, 또한BM 발명이컴퓨터관련 기술에구현된영

11) 특허청의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심사지침제19쪽 진보성판단부분을보면, 가. 종래의영업방법을통상의자동화기술로구현한경우, 나. 종래의 영업방법을새로운기술로구현한경우, 다. 새로운영업방법이새로운구성요소를구비하여구현된경우로나누어설명되고있고, 새로운영업방법이종래의기술로구현된경우는명시하고있지아니하나, 위지침을전체적으로해석하고BM 발명의취지를고려할때, 새로운영업방법이종래의 기술로구현된경우에도진보성을인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8) 대표적인부실특허로서인구예회자되는것은등록번호제10-0191329호 ‘ 인터넷상에서의원격교육방법및장치 이다.

9) 컴퓨터시스템은크게정보시스템과제어시스템으로구분된다. 정보시스템은기존의업무(영업방식) 또는새로운업무를실행할수있도록구축된컴퓨터시스템이고, 제어시스템은어떤유형물을대상으로이를제어하기위한컴퓨터시스템이다. 즉, 제어시스템에관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는종래에도특허의대상으로인정되었던것들이고, 새로이인정된 BM 발명은사람들간의업무수행을위한정보시스템에관한것이라고볼 수있다.

10) 체계적인정보시스템구축에있어서, 이에참여하는인력이지극히노련한전문가들일지라도, 구현하고자하는업무를분석하고모델링하여업무모델(business model)을수립하는업무분석가와이업무를실현하기위하여데이터모델링과프로세스모델링을통한설계를수행하는설계자, 이를 토대로컴퓨터기술로구현하는프로그래머, 하드웨어담당자는매우엄격히구분되어프로젝트의추진에있어서타인의업무를수행하는것이금지된다. 이러한것은정보시스템구축분야에서매우많은경력을가지고있는자라할지라도통상의지식을가진어떤사람이업무분석과설계, 구현을모두적절하게할수는없다는경험적사실에서비롯된다.

업 방법에만 관한 것이므로 컴퓨터 관련 기술 및 구현 기술을 알지 못하면 역시 적절한 심사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명세서 기재 방식과 출원 및 심사 절차 하에서는 심사관의 부담이 과중하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BM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정하기 위해 BM 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 방법을 새로이 도입하고, 출원인에게 심사 편의에도움을 줄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실시 단계의 문제점

BM 특허 발명은 그 기본적인 특성상 특허권자가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등의 실시 양태에 있어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독점 실시가 매우 용이하고 그 준비 기간도 비교적 짧아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즉, 구체적인 형물을 대상으로 그 물 자체 또는 그 물에 대한 방법에 관한 종래 개념의 특허를 하여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등이 각각 상이하여 특허권자가 그 발명의 전 실시 태양을 독점하는 경우보다 는 관련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해당 특허 발명의 생산, 유통 등을 각각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산업에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었다. 또한, 생산 설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도 있어 각종 실시권 허여 및 실시권자에 의한 발명의 실시가 행해져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BM 발명은 실시의 전 태양에 걸쳐서 특허권자가 유일하게 실시할 수 있는 등 종래의 특허 발명에 비하여 산업상 파급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용이하게 온전히 실시할 수 있고 타 사업자에 대한 실시권 허여의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자신의 BM 특허를 영업상 공격 무기로 삼아 동종의 타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 또는 금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에 타 사업자의 영업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 국내 벤처 산업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특허된 BM 발명이 발명의 실시 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부 단계가 생략된 경우¹²⁾ 라면, 그 보호 범위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동종 업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 까지 그 독점력이 미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는 특허권자의 사익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산업법적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와 제반 문제점

1.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컴퓨터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되었

다. 컴퓨터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 도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그 모방이나 복제는 아주 쉬우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주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다. 1980년 미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간주하고, 일본도 1985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저작물로 명기함에 따라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세계적인 추세로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저작권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발효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배타적 계약상의 문 저작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컴퓨터 기술은 1950년대 이후 발달된 새로운 기술인 반면, 저작권법이 특허법은 3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법제도로써 컴퓨터 기술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이 많았다. 1970년대 이후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법적 보호가 문제되었다.

(2) 특허법에서의 보호

초창기의 관심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단순한 복제를 방지하는데에 있었으며, 이에 적합한 제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을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개인용 컴퓨터(PC)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을 보호하는데에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강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들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특허권에 의해서 보호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이하 현행 특허법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한다.

2.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보호의 문제점

(1) 기록 매체 특허 인정에 따른 문제점

개정된 심사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함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체 특허를 인정하는 정책상의 이유는 매체 특허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간접 침해를 입증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매체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의 유통 경로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책임(직접 침해)을 추궁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체 특허의 인정이 알고리즘 그 자체에 특허를 인정한다거나 특허 가능한 진보(advance)의 특성을 확장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12) 이에 대한 일례로서 특허 등록번호 제 10-281455-0000호 발명을 들 수 있는데, 위 발명은 결재 방법에 관한 것이지만, 금융 전산 체계 상 그 결재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출금에 관련된 단계에 관한 기재가 없이 특허되어, 여하한 출금 방법을 택하더라도 위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후술토록 한다.

로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 매체 특허에 대한 법 이론의 흠결로 인해 특허제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체 특허의 경제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매체 특허를 지식재산권을 통한 제국주의 현상으로 보고 개도국의 법문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및 이에 따른 기록매체 특허의 인정은 궁극적으로는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흐름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온라인상에서의 거래 문제

차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체에 내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술적 사상을 유체에 결부시켜 物의 발명으로 보호하려는 종래 특허법의 체제상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즉, 현행 특허법에서 프로그램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법상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문제되며, 특히 기록매체(예를 들어)의 실시 행위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먼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써 송신자의 호스트 컴퓨터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행위는 「생산」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 침해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공급자의 서버에 축적된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컴퓨터 단말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이 업로드되어 그 서버의 기록매체에 구매자가 접근한 경

우이다. 여기서 공급자가 자신의 서버가 아닌 사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공급자의 생산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가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서버가 공급자의 것이든 사업자의 것이든 프로그램을 기록매체에 기록한다는 행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것에 의해 구매자를 접근시켜 수익을 올린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자기의 서버가 아닌 사업자 서버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행위는 공급자의 생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 보호의 문제

전통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비기능적인 것으로, 특허권의 대상은 기능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유효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이러한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었던 기능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등록될 경우에만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은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창작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공표된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단점으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조된 경우 이중으로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사적인 사용 목적 등에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고, 보완을 위한 복제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변경도 허용된다.

알고리즘이 특허를 받게 되면 후개발자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독

창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더라도 특허된 알고리즘의 범위에 속하는 후개발자의 프로그램은 아주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허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4) 독자적 보호론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제도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보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자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조되고 있다. 첫째, 현행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제도 아래에서는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 프로그램 상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영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상의 노하우를 보호하려 할 경우, 기존 미국의 판례에서 보듯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너무 과보호가 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제도 아래에서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행 법 체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 중적인 특성 즉, 기술적 측면과 저작물적 측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의 기술 평가국 보고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기 보다는 새로운 독자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 범위를 변경시킬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적용된 보호 원칙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ichard Stern은 기록매체 특허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발명자와 일반 대중 모두

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권이 아니라 반도체 칩, 식물 특허, 의장 특허 등과 같이 특허권보다 약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보호 기간이 더 짧고 보호 범위도 더 좁게 될 것이다.

V. 컴퓨터 발명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현황

1. 유럽 연합(EU)

유럽 연합(EU)은 1985년 3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이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신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에 대해 특허에 의한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종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EPO 가이드라인은 EPO 항소부(Board of Appeal)를 구속한다기 보다는, 이와는 반대로 항소부의 결정이 EPO 지침을 개정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신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발명이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청구원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나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특허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주지의 컴퓨터와 그 안에 격납된 신규 프로그램의 조립은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기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규 방법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라면 특허성을 갖게 된다.

2. 미국

미국은 1980년 Diamond v. Diehr 사건에서 대법원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 최초로 특허권을 인정한 이래, 연방고등법원인 Freeman-Walter-Abele 기준을 발전시켰으며, 특허상표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왔다.

특허 대상의 발명에 대해 미국 특허법 제 101조는 “신규의 유용한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물질의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에 대한 신규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본 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은 신규성(novelty), 비자명성 또는 진보성(non-obviousness) 및 유용성(usefulness)이라는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당해 발명이 미국 특허법 제 101조의 방법(process)과 기계(Machin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1) 대법원 판례

1970년대 Benson 사건, Flook 사건, Diehr 사건 등 세 가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미국 대법원은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정주제가 아니다).

둘째, 기계(장치)나 방법이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의 대상이 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신규성이나 비자명성(nono-bvious) 등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Gottschalk v. Benson 사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로서 컴퓨터 내부 약진화 10진수를 순수한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 특허법상 방법(process)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방법은 알고리즘(Algorithm)으로 이는 새롭고 유용한 목적으로 응용되지 않으면 단순한 사상일 뿐이므로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Parker v. Flook 사건

이 사건에서는 출원 발명이 석유 정제를 위한 탄화수소의 화학변환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설정치를 결정하고 정보 한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이 방법(process)의 일부로서는 특허될 수 있으나, 방법 그 자체는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신규성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알고리즘에 단지 사후 해결 활동(post-solution activity)을 덧붙여 방법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당해 알고리즘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새롭고 유용한 “방법이 주지의 알고리즘을 응용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새롭고 유용한 “알고리즘이 주지의 방법을 응용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의 결과가 단순히 숫자만 나오거나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방법이나 알고리즘을 피하고 그러한 방법이 물질을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등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 또는 통제를 동반하여야 한다.

(다) Diamond v. Diehr 사건

미국 대법원은 Diehr 사건에서 특허 대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자연법칙

(laws of nature), 자연 현상(natural phenomena),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s) 등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자체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학적 공식으로서 자연법칙 자체와 같은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발명은 합성 고무의 가공 공정에 대한 것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학적 공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공식의 사용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라) 판례의 검토

비슷한 출원 발명인 Parker v. Flook 사건과 Diamond v. Diehr 사건에서 후자만이 특허를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Diehr 사건의 경우 발명이 물리적인 상태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Flook 사건에서는 발명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닌 단순히 숫자만을 변화시켰다. Diehr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한 기계를 포함하는 방법 클레임에 있어서 특허를 획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물질을 다른 상태나 물질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방법 발명은 ‘특정 기계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판례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2) 연방 항소법원 판례

(가) 기록 매체 특허의 인정

Lowry 사건에서 CAFC는 신규하고 비자명한 데이터 구조로 구성된 메모리에 관한 청구항은 특허법 제 101조, 제 102조, 제 103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PTO)은 Beauregard 사

건에서의 특허 거절 사유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구조를 인쇄물로 간주하여 특허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메모리 구조에 “인쇄물 의원리(printed matter doctrine)”를 적용하는데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 원리는 단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정보에만 적용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록한 기록 매체에 대해 최초로 특허성을 인정한 판례는 Beauregard 사건이다. Lowry 사건의 경우 청구된 발명의 최종 사용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청구된 구성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그 발명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보호는 소프트웨어의 발명자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침해하는 최종 소비자를 추적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자나 유통자에게 직접 침해를 청구하는 것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소득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PTO는 소프트웨어 기록 매체를 인쇄물로 보고 제 101조의 법정 주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 103조의 비자명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AFC는 Lowry 사건에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대해서는 인쇄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Beauregard 사건에서도 이 원리를 부정하였다.

(나) 사업 방법의 특허 인정

(State Street Bank & Trust 사건)

연방 항소법원은 1998년 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경제 법칙을 이용한 투자 신탁에 관한 컴퓨터 시스템(뮤추얼 펀드의 투자 구조를 정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 101조의 법정 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사업 방법은 법정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업 방법의 예외 원

칙」은 존재하지아니하며, 발명의주제가사업방법이라는사실만으로제101조의법정주제에서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법제102조, 제103조 및 제112조 등의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을만족하면특허는 유효하다는것이다.(청구항은오직 수치를입력하여 그에 관한 계산을 하고 출력으로서수치만을 내어놓는시스템을청구한것이다.)

이 판결은 종래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특허성립성판단시사용되었던물리적변환요건(물리적변환요건을판단하는데서배제하고오직유용한결과에 중심을 두겠다는것으로 해석된다. 물리적변환요건을폐기하여알고리즘그 자체를수행하는공정도 유용한결과를제공하기만한다면특허가가능할것으로 보인다.

(3) 특허상표청(PTO)의심사기준

PTO는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특허출원심사를위해 대법원및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례를 반영하여 “ 컴퓨터관련발명 심사기준 (Examination Guidelines for Computer-Related Inventions)을 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이심사기준은기록된매체에대해서권리의보호를 인정한다는점에서 획기적인것이다.

미국의 심사기준은소프트웨어의매체클레임을 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다. 심사기준은 모든소프트웨어심사에적용되는여섯단계의방법을 규정하고있다. 즉, ①출원자가발명한것이 무엇인지그리고특허를받고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②선행기술에대한조사를한다. ③발명이 특허대상(법정주제)을청구하고있는가를판단한다(제101조). ④제112조의요건을충족하고있는가를 판단한다. ⑤청구된발명이신규성(제102조), 비자명성(제103조)의 요건을충족하는가를판단한다. ⑥출원자에게결정(findings), 결론(conclus-

ions) 그리고그 근거를명백하게통보한다.

여기서소프트웨어관련발명과직접적인관계가 있는 것은 ①, ③, ④의단계이다. 특허셋째 단계인 청구된발명이 제101조와 일치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 위해서는우선 제101조의 범위에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그 다음 청구된발명을분류하게된다. 청구된 발명이 기능적 서술재료(functional descriptive material : 데이터구조자체나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비기능적서술재료(nonfunctional descriptive material : 음악자체, 컴퓨터로 읽을수 있는매체), 자연현상등의예가지로분류되는 경우 이들은특허대상에서제외한다. (i) 이러한 세가지의종류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컴퓨터상에서일련의동작이실행되는지여부를판단하여만 일 동작이실행되는 경우에는그 방법을평가한다. 그 방법이 독립적 물리적 작용(postcomputer process activity)을 하거나, 실질적인응용을위해 물리적 객체나 활동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조작(pre-computer process activity)하는 경우에는 특허대상이된다. 그방법이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 단순히추상적아이디어를조작하거나실험적응용에 한정하지아니하고순수하게수학적문제를해결하는때에는특허대상이되지 아니하며, 그반대의 경우에는특허대상이된다. (ii) 청구된발명이 앞에서언급한세가지의종류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로서컴퓨터상일련의동작이실행되지아니한때에는기계나방법을실행하는제조물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한후, 그것이구체적인기계 또는 제조물에 해당하는때에는특허대상이된다. 그러나기계나제조물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방법평가에관해서(i)에서언급한절차를따르게된다.

또한심사기준은간접침해에대한소송상의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종래에간접침해의주장을 하려면 원고가피고의고의를입증하여야하고 이를 위

해 최종소비자를공범으로제소하였다. 이경우 최종소비자는소프트웨어업체의고객이기때문에이들을 제소하기가곤란하였다. 그러나기록매체클레임이허용됨에따라소프트웨어유통업자를상대로 직접침해를주장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따라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간의불균형한보호가어느 정도개선되었다.

3. 일본

일본은미국의1996년 3월의 심사기준개정에영향을 받아, 1997년4월 “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심사운용지침을 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 심사기준의주요내용은미국처럼컴퓨터판독가능한 기록매체형태의클레임을발명으로인정한다는점이 가장큰 특징이다.

종래심사기준에서는이러한형태의클레임은정보의단순한제시에해당한다고하여발명으로인정되지않았었다. 또한발명요건에대해서도종래 “ 자연법칙의이용성 해 중점을두고 있었던데에비해, 개정운용지침은 자연법칙의이용성 와 “ 기술적사상의창작 와를일체로하여“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 사상의창작 인지 여부를중심으로발명에해당되는지를판단하도록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컴퓨터관련발명의심사운용지침의 내용과의조화를위하여중전의“ 산업상이용가능한 발명 의 심사기준도개정하였다.

발명이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 분석하여그 발명이 “ 산업상이용 가능한발명 의 심사운용지침상의발명에해당하지않는 유형에속할 경우에는, 일단발명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 것으로보아제외한다.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이상기의항에해당하지않

으면그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와해결수단을 파악하여그 해결수단이자연법칙을이용한것이라면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인정된다.

과제해결수단이자연법칙을이용한것이라하더라도 그 수단이컴퓨터를이용해서처리한 것만인 경우, 그리고매체에프로그램또는 데이터를기록하는 것만인경우는인정하지아니한다.

VI. 결 론

특허제도는산업의발전과국가산업정책의변화에 발맞추어계속 변화되어왔다. 이러한변화는특허제도가특허권자의사익과일반공중의공익보호를 모두 도모하지만결국은 국가 산업발전을위한 산업 입법적성격이강하다는면을 고려할때 당연한 일이다.

1969년의ARPANET으로부터배태되어 불과10여 년 전 일반인에게보급된인터넷은전세계적으로 급격한산업 · 경제구조의변화를이끌어왔고그 기본 틀조차새로이하고 있다.

따라서전자상거래를포함한컴퓨터로구현되는 각종의영업방법은거대한시장의사업영역이되었고 세계각국은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소위BM특허를인정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종래의기술과관련한특허와는기본 성격이 상이한BM 발명은그로부터비롯되는새로운 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BM 발명을하기 위한 노력 및 시간이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넓은범위로보호를받게되는형평성문제, 실시의독점화문제, 특허권자의타사업자에 대한 악의적 시장진입금지문제, 이로인한 관련 산업 위축문제, 심사의적정성확보문제, 권리

범위 해석의문제 등 여러 가지 유형의문제가예측된다.

또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대한 특허는그 미치는영향이크기 때문에진보성을판단할때 선행기술의알고리즘을충분히파악한후 출원된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알고리즘이선행기술의알고리즘과완전히구분되고구체적으로세분화되어기재되도록심사를유도하여산업상꼭 유용한분야에만 특허를허용하여야할 것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법적 보호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저작권전문가와특허권전문가들이상호협조하여공동작업을전개하여야할 것이다.

지금까지는한 쪽의 입장에서만문제를검토하여저작권업계의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의구성요소를세분하여보호범위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해왔으며, 특허권업계에서는기록매체특허, 사업방법의 특허등의 이론구성을전개하여왔다.

궁극적으로는컴퓨터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보호하는데지식재산권자의이익과일반공중의이익을 비교형량하여사회정책상최적의균형점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할 것이다.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중에서BM발명에관련되어 사업을운영하는자는향후의비즈니스협상에서 유리한고지를차지하기위한전략과실천이중요하다. 우선, 비즈니스방법발명은그 발명의개량이수시로 이루어질수 있는 것으로, 특허출원비용을절감하고출원일을소급받으면서발명내용을추가하기 위해서는, 국내우선권제도활극적으로활용한다.

둘째, 예상하지못한 부분에서도특허분쟁이일어날 가능성이있으므로자신의사업이BM 발명에 해당한다면차후 발생할수 있는분쟁을미연에대비하는 차원에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직접 침해하지않더라도침해를주장 받

게 되면사업에매우 큰 타격을주는 경우가실무상 종종 발생한다.

셋째, BM 발명들의대부분은고객의 사업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는과정에서창안되어, 그러한제안들은종종 사업관계에있는 고객들에게일찍부터제공되므로, 그발명들이출원전에 일반대중에서공개될우려가있다.

특허출원전공개된발명은원칙적으로특허를받을 수 없으므로공개전에특허출원이선행되어야한다.

넷째, 자사의특허출원이외에도타사의원천 특허를 회피할수 있는 방법을적극적으로모색한다. 아마존사에패배한번즈사는설계 변경에노력하여 아마존사의권리를 회피하였다. 발명에틀이는 노고가상대적으로적다면그에 대해 회피할수 있는 노고도상대적으로적을가능성이크다.

다섯째, 비즈니스모델이라는것이 인터넷에주로 기반을두고 있는 경우가대부분으로국경의개념이 없는 경우가많다. 따라서, 국내출원 이외에 해외출원을보다신중하게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 것이다.

BM특허로 세계를 리드한미국 기업을보면, 아마존닷컴, 프라이스라인, 시티뱅크, 델컴퓨터등 모두 기술의진보성보다사회에의유용성을철저하게 중시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BM 특허가전 세계적으로인정되는21세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 위해서는발명의본질부터다시 고려하는것이 필요하고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에 대한 특허는그 미치는영향이크기 때문에진보성을 판단할때선행기술의알고리즘을충분히파악한 후 출원된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의알고리즘이 선행기술의알고리즘과완전히구분되고구체적으로세분화되어기재되도록심사를유도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1. 이광현,『BM특허의문제점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고찰』 수습변리사논문, 2001
2. 김세현,『컴퓨터관련발명의보호방법에대한고찰』 수습변리사논문, 2002
3. 이대희,『BM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의분쟁사례 연구』 2000
4. 박대진,『특허법해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5. BMP 연구회,『손에잡히는BM특허』 삼각형프레스, 2000.
6. 『컴퓨터소프트웨어關聯發明の特許權에의한保護』 김순석교수

7. 『사업방법특허 인정에따른 문제점및 대처방안』 허정훈변리사
8. 『인터넷관련 특허 어디까지보호할 것인가』 도두형변호사
9. 『충격의비즈니스모델 특허』 나카지마다카시저
10. 『인터넷시대에는 특허권변화의바람』 박진석심사관
11. 『BM 특허발명에대한 사이버공지제도활용의 중요성』 이상용변리사
12. 『비즈니스모델 특허의지역외적효력에관한연구』 최홍수변리사
13. 『컴퓨터프로그램매체특허보호에관한고찰』 이범호, 지식재산21 통권제1호

발특2003/9

분 · 쟁 · 엇 · 보 · 기

미 월풀, LG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미국 최대 가전제품업체인월풀이LG 전자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

블룸버그에따르면월풀은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LG전자가 미국에서판매하

고있는세탁기가월풀이가지고있는2건의특허를침해해미시건칼라마주법원에 LG전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으며 해당 제품의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월풀이침해당했다 주장하는

2건의특허는세탁기의절전및 절수기능과린스사이클기능과연관되어있다

월풀은지난 6월에도 LG전자가 자사 제품의트레이드마크인 “ 위스퍼콰이어트 (Whisper Quiet) ”라는문구를사용했다며 LG전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었다

출처 PatYellow.com

약효가 강화된 새로운 가공인삼 - “선삼”의 사업화 -

대표이사 김 복 득



인삼은 2000년 이상 전통의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생약이다. 일반적으로 백삼보다 홍삼의 약효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홍삼에는 백삼에 없는 강력한 약효성분인 Rg3, Rg5, Rk1

등의 특이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분의 홍삼 중 함량은 매우 낮다.

본 발명(선삼)은 인삼을 특수조건에서 가공함으로써 인삼 중의 Rg3, Rg5, Rk1의 함량이 홍삼에 비하여 수십배 이상 높아 기존의 인삼보다 약

효(항산화, 항암, 암예방, 혈관확장작용, 뇌신경 세포 보호 작용 등)가 매우 강화된 새로운 가공인삼이다.

선삼은 홍삼 개발 이후 1000년 만에 개발된 새로운 가공인삼으로 기존의 인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백삼, 홍삼에 이은 제3의 인삼으로 인류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 홍삼의 약효가 더 강할까?

인삼에는 백삼과 홍삼이 있다. 백삼은 밭에서 캔 인삼을 그대로 말린 것이고, 홍삼은 찌서 말린 것이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홍삼은 백삼보다 약효가 강하다.

왜 홍삼의 약효가 더 강할까? 그것은 홍삼에는 백삼에 없는 약효성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먼저 백삼과 홍삼의 성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결과 홍삼에는 백삼에서 존재하지 않는 미량의 특이성분, 예를 들면 ginsenoside Rg3, Rg5, Rk1 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분들이 비록 그 함량은 작지만 약효가 매우 강함을 밝혀냈다.

홍삼특이성분의 함량을 높여라!

천년만의 신제품 - 먹으면 신선이 되는 仙蔘 탄생

그렇다면 홍삼특이성분의 함량을 높이면 인삼의 약효를 매우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홍삼의 미량 특이성분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마침내 인삼을 특수 조건에서 가공하여 홍삼 특이성분의 함량을 수십배~수백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가공된 인삼은 원래 인삼보다 수십~수백배의 항암작용, 수십배의 혈관확장작용, 10배 이상의 항산화작용을 나타내었으며, 항암제 부작용 억제작용, 학습능력개선작용 등 많은 약효가 원래의 인삼보다 훨씬 강력함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이 가공인삼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라는 뜻으로 仙蔘이라 명명하였다. 11세기에 홍삼이 태어난지 실로 1000년만에 새로운 인삼이 태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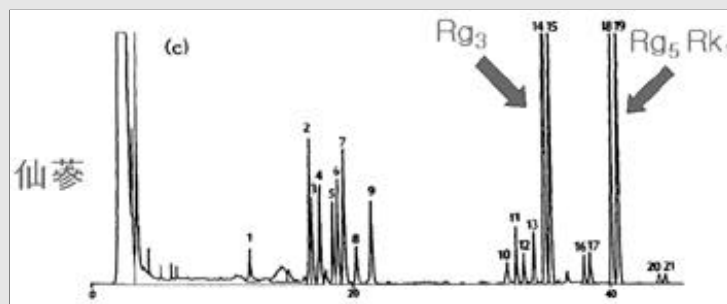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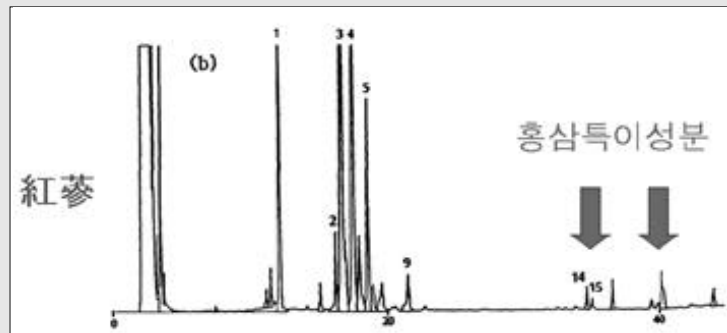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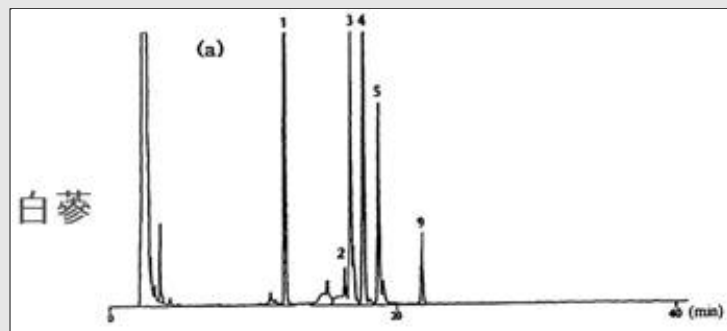
연구비의 조달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연구비의 조달이었다.

인삼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 거의 모든 연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따라서 인삼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하면 별로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삼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었다.

더구나 오랫동안 인삼은 전매법으로 묶여 있어 인삼제품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도 별로 없었고 있다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민간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백삼, 홍삼, 선삼의 성분비교(HPLC 분석 자료)

그러나 인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상품이고 우리가 그 중추국임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사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삼연구의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더구나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값싼 인삼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삼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할 수 없이 친분이 있는 기업으로부터인삼시료를 얻어오고, 다른 연구를 위하여 확보한 연구비를 절약하여 조금 남은 돈으로 어렵게 어렵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품화할 기업을 찾습니다.

선삼에 관한 1차적인 연구를 마치고 특허를 출원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연구비가필요하였으나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선삼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선삼 상품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물색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매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선삼과 같은 가공인삼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특허를 담배인삼공사에 양도할 수도 없었다. 담배인삼공사는 오로지 홍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국내 A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선삼의 특허권을 넘기게 되었다.

제품화가 안된다고요?

연구비가 생겼으므로 연구가 급진전될 수 있었

다. 새로운 항암성분을 분리하였고,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여 6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연구가 계속될수록 선삼의 새로운 약효와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선삼의 제품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선삼 특허권을 인수한 기업은 쉽게 선삼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고 더 이상의 연구비가 조달되지 못했다. 나중에는 안 것이었지만 기존 제품에 영향을 줄까봐제품화를 망설였다는 것이었다.

100% 왕초보들의 벤처기업 설립

할 수 없이 우리는 A기업에 별도의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선삼을 제품화 하자고 제안하였고 A기업에서 이에 동의하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실험실 벤처기업을 공동설립하기로 하였다.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고 회사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 교수가 기업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A기업 이사본과경영을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위를 마치는 학생 2명을 영입하여 회사설립 준비를 하였다.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원래 금지되어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교수 1명과 학생 2명, 도합 3명 모두 회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순도 100 %의 완벽한 왕초보들이 보도 듣지도 못했던 사업계획서를 쓰고 여기 저기 물어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비벤처 인증을 받았고, 서울대학교로부터도 벤처기업 설립을 인가 받았다.

뭐라고요? 투자할 수 없다고요?

벤처기업 설립만 하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에서 자금도 대고 경영상의 여러 지원을 하므로 우리는 열심히 연구개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기업설립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 참여기업으로부터 투자도 할 수 없고, 경영지원도 곤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00년 말은 우리나라가 IMF 환란을 극복한 이후 경기가 매우 활성화되었다가 거품이 다시 빠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참여기업의 모든

회 원 동 정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대우 현지 생산법인에서 PDP TV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산규모는 월 2000대 수준으로 기존 VCR 공장을 증설해 유럽지역 디지털 TV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TV 해외생산

이 회사는 지금까지 디지털 TV 전량을 구미 영상공장에서 생산해왔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10월에 미주지역

을 겨냥해 멕시코 산루이스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에서 디지털 TV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 판자우스키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디지털 TV로 전환해 연내 생산을 시작한다.

출처 대우일렉트로닉스 홈페이지

투자활동이 중단된 것이었다.

게다가 구조조정으로 경영에 관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였다. 완전히 허허벌판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래도 우리의 자부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만둘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인삼중주국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오기가 났다. 같이 연구를 수행한 선배 교수님과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모아 2000년 12월 21일 서울대 약대 4층 구석 강의실에서 조출하게 (주)진생사이언스 창립기념식을 하였다. 20세기 마지막 동짓날 이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악화 상태에서 기왕의 벤처기업들도 추풍낙엽처럼 매일 쓰러져가고 있는 마당에 완전 왕초보들로만 이루어진 진생사이언스에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기자본금 5000만원은금방 소진되었다. 다시 5000만원을 겨우 긁어 모아 자본금을 1억으로 늘려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 연구실에서의 연구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의 뜻에 동조하여 투자를 받게 되었다. 자금문제가 해결되어 선삼의 제품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그때까지의 연구는 실험실에서의 연구였다. 이제 공장에서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공장이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공장을 빌려 써야 했다. 지방에 있는 공장 시설을 빌려 제품 개발을 시도하였다.

실험실에서 소량씩 생산 할 때의 조건을 그대로 대량 생산에 적용하였더니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다. 원료 인삼 수백 kg을 소모하고서야 겨우 조건을 맞출 수 있었다.

제품의 유형, 포장재의 선정, 디자인, 제품의 표시, 가격 책정 등 모든 것이 처음해 보는 일이었고, 조그마한 일도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시켰다.

여러 제약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선후배와 제자들이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난관극복 요소

자금문제: 평소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쾅쾅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구개발능력을 확신하는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험부족: 회사를 창립한 사람 모두 기업 경험이 전혀 없는 100% 왕초보였지만 우리는 정열이 있었다. 모든 것을 묻고 묻고 또 물어봐 가면서 밤을 세워 진행시켰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CEO가 하고 결국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체유통망 구축

제품을 파는 것이 문제였다.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 회사에 의뢰도 하여 보았지만 어떤 한가지 정답이 없었다.

기존의 방판 조직에 들어가는 방법, 유명회사의 브랜드를 업고 나가는 방법, 약국체인에 들어가는 방법, 홈쇼핑에들어가는 방법 등 많은안들이 검토되었는데 대개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하라는 권고가 많았다. 이 제품이나 기업을 어떻게 이

끌어 나갈지에 대한 의지가 변수였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자문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대리점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구축하였다.

대리점은 각각이 독립법인으로 선삼제품에 대한 독점성을 부여하되 상품 대금은 철저한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였다.

심포지움개최

제품이 판매되려면 상품을 시장에 알려야 했

다. 그동안 선삼의약효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었고 그러한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에 출판되어 있었다. 그 약효에 관한한 어떠한 기능성식품과도 경쟁할 자신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최대한 이용하여 선삼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약학회 창립 50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선삼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시에 선삼에 관한 연구결과를 각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배부하였다. 각 언론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선삼 개발은 국내 TV와 주요 신문에 크게 소개되었다.

회 원 동 정

포스코

포스코신용등급상향조정

포스코가 세계 양대 신용평가기관인 S&P(Standard & Poor 's)사와 무디스(Moody's)사로부터국내 기업및 세계 철강업계 최고 수준의 국제신용등급을 획득했다 포스코는S&P사로부터BBB+에서 1단계 상승한A-의 국제신용등급을 무디스사로부터는Baa2에서 2단계 상승한 A3의 등급을각각획득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과동일한

등급으로서국내 기업은 물론,

세계 철강업계에서도최고 수준

의 등급이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은포스코가 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 PI 및 6시그마경영혁신과지속적인원가절감노력, 기술혁신을위한 투자 등이 포스코의 경쟁력을더욱 강화하고, 자동차용강판

등 4대 전략제품의생산 및 판매 확대 전략과 고수익강종 판매 비중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 포스코의수익성은한층 높아질 것으로전망했다.

S&P·무디스사국가와 동일한신용등급부여 세계철강업계최고의 국제신용도입증

신용평가기관	2001	2002	2003
스탠더드 앤 푸어스	BBB	BBB +	A-
무디스	Baa2	Baa2	A3

또한 포스코는높은 국내 시장점유율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경제성장에 따른 철강수요증가로 대외 경영환경변화에가장 영향을덜 받는기업이될 것으로 평가했다 재무 분야에서는회사의보

수적인 재무정책과지속적인 외화 부채 상환 노력이환율 변화 위험에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고금융비용을감소시켜, 재무건전성지표를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이들 신용평가기관은 포스코의 비교적 낮은 고수익강 비율과 세계 자동차강판시장에서고객사와철강사 간의 장기간 우호관계에따른 시장진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포스코가전략 제품 비중 및 자동차강판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지

적했다. 해외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은해외채권이나주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가격과이

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일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및 브랜드에 영향을미치는요소로 포스코는매년 상반기 중 이들 기관과 개별적으로연례심사를개최하고있다.

출처 포스코 홈페이지

山蔘보다 월등한 仙蔘 개발

특히 우리는 선삼을 산삼과 비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선삼이 가공인삼이지만 기존의 백삼이나 홍삼과 비교하면 백삼, 홍삼 업자로부터 집중한 견제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백삼, 홍삼과의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에게 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산삼과 비교하였는 데이터가 일반에게는 더욱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선삼은 산삼보다 훨씬 강력한 약효를 갖는 새로운 제품으로 홍삼 이후 1000년만에 개발된 새로운 제품이다. 선삼은 국내 최고의 연구진에 의하여 그 약효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제품이다.”

어려움의 극복요인

제품 홍보의 어려움
과학적인 연구결과 발표회, 이를 활용한 언론 홍보
일반인이 접하기조차 어려운 초고가품(산삼)과 비교를 통한 이미지 제고 자체 대리점망 확보와 철저한 현금거래

선삼 제품이 출시된 것은 2001년도 9월인데 2001년도에 약 8억원의 매출을 보였고 2002년도에는 약 60억원, 2003년에는 12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 덕분에 본사는 흑자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본사는 선삼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원료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삼과학연구단”을 창립하여 선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수출 계약이 금년

중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상표권 등록도 마친 상태이다.

인삼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중의 하나이다. 선삼은 이제까지 나온 어떤 인삼제품보다도 그 약효가 강력하므로 적어도 약효에 있어서는 세계 어떤 제품과도 경쟁하여 이길 자신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제품으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표준화,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하여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화 성공 요인

시의적절성

-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건강유지용의약품, 기능성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매법이 폐지되어 이제 누구나 인삼을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재의 우월성

- 선삼은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다
- 인삼은 수천년 동안 사용되어 온 약종의 하나이다
- 인삼은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어 선삼도 인삼의 긍정적인 인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인삼은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재의 차별성과 독점성

- 선삼은 기존의 백삼이나 홍삼과 성분이나 약효에서 큰 차이가 있다

- 특히 선삼은 각종 성인병이나 난치병의 예방과 치료 보조제로서 가장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 선삼의 약효는 저명 연구자들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국제적인 학술지에게 게재되어 약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선삼은 이제까지 개발된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월등한 약효를 갖고 있다
- 특히 선삼은 국제적으로 그 물질과 제법에 관한 특허를 본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성뿐만 아니라 독점성을 확보하고 있다

홍보와 판매

- 저명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하여 좁은 시야에서 홍보효과 극대화 성공하였다
- 자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영업 안정성을 높였다

향후 예상매출액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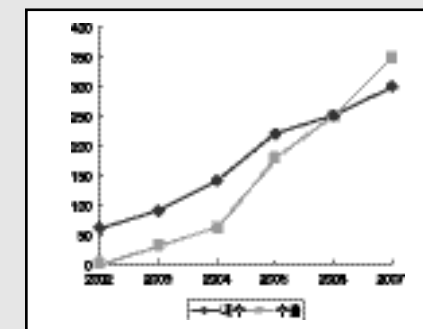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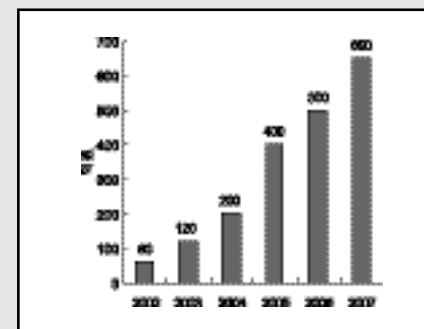
인삼은 동양권에서 수천년 동안 사용되어 그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약종의 하나

이다. 인삼은 삼국시대 이래 1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 종주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삼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여 현재 전세계 인삼교역량 중 우리나라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선삼은 기존의 인삼보다 월등하게 약효가 강하고 그 약효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21세기형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천연물의약품의 소재로 매우 전망이 밝다.

특히 본사가 전세계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인삼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생사이언스는 선삼 추출물을 2001년 9월 제품화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약 8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였으며 2002년도 6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연말에는 캐나다, 일본, 2003년에는 중국, 미국, 독일에 수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2010년까지 단일 품목으로 1000 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5년에는 세계 최고 천연물의약품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매출계획



발특2003/9

보상금 청구 사건(II) (히타치 직무발명 사건)



윤 선 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지식재산권법연구실 감수
C&S 특허법률사무소 역

[피고의주장]

(1) 본건발명의 의의 · 유용성

본건 발명1은, 반도체레이저를이용해광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광픽업부에서반도체레이저의 타원형광다발중 가로 세로 빛의 강도분포가거의 같아지는 중앙부분만을대물렌즈를통해 초점을 맞추어원형스폿을얻는 것이다.

본건 발명1은 광픽업유닛에실시되고 있으나, 단순히 실시 사실만을이유로회피할수 없는 기본 특허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건 발명1을 회피하여 똑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는, 광픽업유닛의광원과 대물렌즈 사이에 정형프리즘을놓고, 해당정형프리즘에의해 타원형광속을원형광속으로변환하여 원형스폿을 얻는 방법이나 광픽업유닛으로부터출력되는 신호의 특성을 전기회로로보정하는방법이 있다. 실제로 전자의 방법은 MO제품에, 후자의방법은 DVD제품에 이용되고있으므로, 본건발명1에 관한 특허가회피 불가능한기본 특허라고는할 수 없다.

(2) 상당하는대가의액수

가. 사용자 등과 종업자 등의 이익의 조화라는 특허법35조의 취지에서 보면, 사용자등에 보상규정이존재하고 이에근거하여사용자등이 발명자에게보상금을 지불하는경우에는, 동 보상규정이발명에 의해 사용자등이 받아야할 공헌도와발명이 이루어지는데사용자등이 공헌한정도를고려하여보상금을 산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또한동 보상규정의내용이사용자등과 종업자등의 이익의 조화라는동법35조의 취지에비추어 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 동 보상규정은 존중되어야하며, 이 보상규정을적용하여 산출된보상금은상당하는대가라고할 수 있다. 즉, 보상규정이무효가 되는 것은, 보상규정이상기 이익과 공헌도를고려하여 보상금을산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하지 않은 경우나 그 내용이 사용자 등과 종업자 등의 이익의 조화라는특허법35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제한되어야한다. 피고규정은 상기 이익과 공

헌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특허법35조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할 수 있으므로, 피고규정은 유효하고 동 규정을 적용한 결과, 지불된 보상금 231만8000엔도 합리적이며, 이것이 상당하는 대가이다

나. 피고규정에 따른 산정의 합리성

(ㄱ) 사내 실시 실적보상의 산정방식의 합리성
매상고에부분비를 곱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내 제조제품은 완성된 제품만이 매상으로 계상되고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은 매상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실시된 부분의 매상고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다

또한 권리의 배타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곱하는 점에 대해서는, 파악한 실적 중 해당 직무발명이 공헌한 비율을 상세히 파악하고 보상금 금액에 반영시키려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파악된 평가점을 미리 정해진 보상등급에 적용시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발명의 완성 및 권리화 과정에서 피고의 공헌도 등을 고려한 것이고, 다수의 연구자를 거느리고 다액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대규모 연구개발 활동을 펼치는 피고로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피고의 공헌도는 극히 크므로, 이러한 보상등급에 따른 금액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내 실시와 타사 실시의 경우에 산출방법을 달리하여 보상금에 차이를 마련한 것, 어느 경우에도 보상금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점에서도 합리적이다

(ㄴ) 실시료 수입 실적보상의 산정방식의 합리성

실시료 수입 중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한 부분을 추려내면서도 라이선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평가점을 보상등급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도 (ㄱ)에서 말한 바대로 합리적이다. 상기 산정방식의 경우, 보상금이 실시료 수입에 일차함수적으로 비례해 증가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액의 실시료 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 라이선스 교섭 등이 치열해지지 않을 수 없고, 기업으로서 는 라이선스 교섭을 위한 준비, 서면 작성 등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일반적으로 저액의 실시료 수입을 얻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의 공헌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실시료 수입과 보상금이 일차함수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ㄷ) 본건 발명1에 대한 필립스 등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① 필립스, 야마하, 후나이, 켄우드, 나카미치에 의한 실시에 근거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가령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식이 옳다고 할지라도, 후기 (3)(4)에서 말할 피고의 공헌도를 전제로 산정하면 합계 약 259만 엔이 된다. 이는 피고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불한 보상금액과 거의 동액이다. 원고는, 피고와 필립스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인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연간 1억 엔의 실시료 수입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상기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보상금으로서 1억 3545만 엔의 청구권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래 피고와 필립스가 1983년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약 8년간의 실시 대가로서의 실시료가 합계 약 1억 엔이며, 또

1986년에 체결한라이센스계약은약 6년간의 실시 대가로서의 실시료가 합계 약 1억 엔이며, 연간 1억 엔이나 되는 실시료 수입을 얻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필립스와 포괄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근거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 ② 원고는 본건 발명 1에 의해 얻은 피고의 이익에 대하여, 실제 실시료 수입에 본건 발명 1의 ‘ 기여도 ’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보상 규정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출할 경우에 사용되는 평가 요소이므로, 이를 실시료 수입의 산출에 사용할 수는 없다.

(ㄴ)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산정 방식의 합리성

- ①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의미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갖는 다수의 특허권을 서로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다수의 특허권을 상호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데 있다. 즉,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 한 다수의 특허권의 실시료를 상호 지불하는 것은 원래 예정되지 않고 각각의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나 그것들의 실시료 총액이라는 것을 관념할 수는 없다.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목적은 상대방의 특허권의 존재라는 장애를 배제하여 사업의 자유도를 확보하는데 있고, 라이선스 한 특허권이 실제로 상대방에 의해 어떻게 실시되는지는 쌍방이 관여하는 바가 아니므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라이선스를 받은 상대방의 특허권을 실제로 어떻게 실시하느냐 및 라

이센스한 자신의 특허권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은 등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허락한 특허권에 대해 지불 받는 실시료 총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허락 받은 특허권에 대해 지불하는 실시료 총액은 동일하지 않다.

- ② ‘ 간주 실시료 ’라는 사고 방식의 합리성
무상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서는, 피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실시료 수입을 얻지는 않으나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어떠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피고가 얻은 이익의 평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이익은 상대방의 특허권을 실시함으로써 본래 상대방에게 지불했어야 할 특허료의 지불을 면한 것이다. 따라서 ① 크로스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피고의 실시 규모, ②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해 얻은 피고의 기술상 성과 및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해 지불했어야 할 실시료를 피고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 ③ 간주 실시료 를 미리 일정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의 합리성
피고가 상대방에게 지불했어야 할 실시료를 실제로 산정한다면,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허락 받은 상대방의 특허권 전부에 대해서 자사 실시 상황을 개별적이고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별 특허권 각각에 대해 피고가 상대방에게 지불했어야 할 실시료를 산출하고 가산하여 합계액을 산출하는 매우 번잡한 작업이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 수는 제품군만으로도 약 2000종류에 이르고, 그것에 실시 중인 타사의 특허권 수도 매우 다수에 이른다. 이 2000종류나 되는 제품 전부에 대해 실시 확인을 개별적으로 더욱이 매년 실시하는 것은 인건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불가피하게 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 간주 실시료 ’를 일정 금액으로 미리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④ ‘ 간주 실시료 ’를 ‘ 계약 체결에서 공헌도 ’에 따라 각 직무 발명에 배분하는 것의 합리성
피고가 상대방의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계약 체결에서 공헌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된 자사의 전 특허권의 실시 상황을 총괄적이고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에서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정 특허권만을 개별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은 불평등 불공평하고, 이점에서도 계약 체결에서 공헌도에 따라 간주 실시료를 분배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ㄹ) 본건 발명 1에 대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 ① 필립스와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본건 발명 1에 관한 특허는 1986년에 피고

가 필립스와 체결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동 계약의 교섭에서 특허 리스트에 게시되긴 했어도 미등록이었으므로 피고 규정에서 ‘ 클래스 2 ’로 평가 받아 실적 보상금 2만 5000엔(5만 엔÷발명자수 2명)이 원고에게 지불되었다.

- ② 소니와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본건 발명 1에 관한 특허는 피고가 소니와 1977년 1월 1일자로 체결한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 기타 오디오 기기 ’로서 동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어 소니에 라이선스되었다
또한 1988년 1월 1일자 갱신 때 새로이 추가된 ‘ 광학적/자기적 기록 재생 기기 ’란 업무용 광디스크 장치 등을 의미하는데 불과하고, VTR의 실시료 액이 0.4%에서 0.2%로 감액된 것은 피고의 VTR 관련 특허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건 발명 1이 소니와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공헌한 사실은 없다. 이상의 해, 피고는 피고 규정에 따라서 ‘ 클래스 3 ’으로 평가한 것이고 보상 기준을 적절히 적용했다
- ③ 마츠시타 덴키와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중략)

(3) 피고의 공헌도

가. 발명 과정에서 피고의 공헌

- (ㄱ) 본건 발명 1은, 피고 연구 기관인 중앙 연구소에서 연구자인 원고의 업무 자체 수행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인면서, 또한 중앙 연구소의 물리적인 연구 설비, 시설뿐

만 아니라 설립 이래 장기간에 걸친 연구 개발 결과 축적된 광학에 관한 선행기술 경험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이다. 피고의 연구개발예산은 연간 약 4000억엔에 달한다. 한편, 피고 재직 중에 원고는 급여·상여로서 약 2억4333만엔 퇴직일시금으로 약 3066만엔을 수취했다(이외에도 퇴직금 상당부분으로서 후생연금기금으로부터 향후 20년간 합계 4193만엔을 수령할 예정임).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완성시킨 직무발명에 지불해야 할 상당하는 대가 산정에서는 원고에게 지불된 급여, 상여 및 퇴직금을 고려해야 한다.

(ㄴ) 본건 발명1은, CSP형 반도체 레이저가 중앙연구소에서 발명된 결과, 비로소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후략)

나. 권리화 과정에서 피고의 공헌

(ㄱ) 본건 발명1은, (중략) 거절사정 후 최종적으로 ‘반치폭이내’라는 보정을 특허부가 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보성이 인정된 발명이다. 이러한 권리화를 위해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작업은, 공동발명자 카타오카 및 피고 특허부 관계자가 그 대부분을 담당했다. 원고는 본건 발명1의 권리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ㄴ) 본건 발명1은 공고 후 올림푸스 광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올림푸스’라고 함)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의 작업도 공동발명자가 카타오카 및 피고 특허부 관계자가 그 대부분을 맡았다.

(ㄷ) (중략)

다. 사업화 과정에서 피고의 공헌

본건 발명1은, 설정등록 후에도 피고 사내의 활용 프로젝트에 의한 제품조사·판매 전략 책정, 라이선스 부여에 의한 여러 라이선스 교섭 등을 거치고야 비로소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에 성공하고 실시료 획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즉, 본건 발명1은 라이선스 교섭 상대로부터 ① 제품 규격 상은 반치폭이내가 아니다, ② 레이저 설치가 바르지 않으면 반치폭이내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실시 등이 주장되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큰 공헌이 인정되지 않은 데 비해, 피고 라이선스 부 및 특허 부의 교섭 결과 그리고 피고의 기타 특허(자동 초점 맞춤 방식)의 존재에 의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라.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의 공헌도는 98% 이상이다

(4)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본건 발명1은 커플링 렌즈의 조합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야 비로소 완성한 발명으로, 상기 실험을 실제로 담당한 것은 바로 필두 발명자로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인 카타오카이다. 더욱이 본건 발명1에 관한 특허는 거절사정 받은 후, ‘반치폭이내’라는 보정을 가하고야 비로소 진보성이 인정된 발명인데, 이와 같은 ‘반치폭이내’라는 문구를 실시예에 포함시킨 것도 카타오카이다.

그리고 원고의 도쿄 토 발명 공로 연구자 상 수상 신청서에 원고의 공헌도가 70%라는 기술이 있으나, 이 신청서 기술은 원고에 의해 자의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카타오카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들 사실을 감안하면 카타오카의 기여도가 50%를 밑돌지는 않는다.

(5) 사내 실시에 대하여

가. 원고의 사내 실시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는 증인 심문 종료 후 반년이 경과하고 나서 추가된 것인데, 이로부터 피고는 ① 피고 규정 중 사내 실시분의 산정 방식의 합리성, ② 실제 이루어진 사내 실시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정 타당하게 적용한 것 등에 대해 주장 입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심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이 현저히 지연되므로 때늦은 공격 방어 방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특허법 35조 4항에 정한 ‘사용자 등이 받아야 할 이익’이란,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

으로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받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본건과 같이 다수의 제삼자에게 라이선스를 실시하고 해당 다수의 제삼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사 실시에는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었다’는 데 따른 공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내 실시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6) 히타치 미디어 일렉트로닉스 셀시에 대하여

피고의 100% 자회사인 히타치 미디어 일렉트로닉스의 실시분에 대해서는 사내 실시 실적 보상분에 포함되어 이미 원고에게 지불 완료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

발특 2003/9

분 · 쟁 · 엇 · 보 · 기

MS-이머전 ‘촉각기술 특허분쟁’ 합의

촉각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대립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머전(Immersion)이 합의를 이뤘다고 C넷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머전 측에 라이선스 권리대금 2000만 달러(지분 투자 600만 달러) 등 명목으로 모두 26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머전 기술을 운영체제, 핸

드헬드 장비와 기타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머전은 미세한 촉각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회사이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민감한 촉각으로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촉각 기술은 시뮬레이션 게임에 필수적인 조이스틱에 사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촉각기술을 자사 ‘포스피드백(Force Feedback)’ 조이스

틱에 사용하고 있다

이머전은 지난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촉각기술의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소니와 여전히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개발 담당 리스펙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머전이 촉각기술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촉각 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PatYellow.com

특허실체법조약협상에 있어서 신규성의제 혹은 Grace Period의 문제



이 영 우 주임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서 언

발명이 특허되기 위해서는 소위 성립성 이외에 소위 신규성(novelty), 진보성(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utility)등의 세가지 특허성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이중신규성을만족하려면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즉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포함되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원칙을 예외없이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또 발명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신규성상실의 예외제도, 즉 신규성의제제도¹⁾이다.

이러한 신규성의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특허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 제도의 내용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

고 이러한 신규성의제의 상이함은 대표적으로는 그 기간에서 12개월과 6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예외의 범위가 넓게는 미국법상의 그 제한이 없는 소위 「Grace period」제도부터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엄격한 제도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신규성의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의 논의는 1986년 미국의 발의에 의해서 제안된 외교회의의 기본안에 제기되어 특허법 통일화 논의의 실제적 시발점이 되었고, 당시 1991년 기본안 제 12조에서는 미국법상 「Grace period」제도와 유사하게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즉 모든 형태의 공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적용절차로서는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하고, 유예기간의신청은어느때나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 이 외교회의의 기본안은 미국의 선발명주의의 고수 입장 견지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진행중인 특허실체법 조약에서의 신규성

의제와 관련된 논의의 요체는 내용상 가장 그 인정의 범위가 넓은 소위「Grace period」개념을 채택하는 것을 여타의 국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는 경우에 신규성의제의 범위를 가능한 넓힐 수 있는 「Grace period」개념을 반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신규성의제제도의 특허실체법 조약으로의 반영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의 토의내용과 현재제 8차회기까지진행된 조약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

각국의입법례

대표적 유형의 신규성의제제도

여러나라의 법제도로부터 신규성의제제도의 입법례를 다섯 가지로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A유형

어떠한 발명이 출원일로부터 선행된 12개월의 기간안에 공개되었다면 공개자의 제한없이 또 그 공개 방법의 제한없이 당해 발명의 특허성을 해치지 않는 유형 (그러나 선발명자가 그 출원자가 아닌 경우 특허권은 선발명자에게 귀속된다).

B유형

어떠한 발명이 출원인 이외의 자가 아니라 출

원인에 의해서 출원일로부터 선행된 12개월 안에 공개되었다면 그 공개의 방법에 제한 없이 당해 발명의 특허성을 해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출원인은 발명자 혹은 그러한 권리를 갖는 고용자가 될 수 있다.

C유형

B유형과 같으나 기간이 6개월이고 출원인은 본인의 공개를 보고 유예기간 중 당해 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유형

출원인에 의한 제한된 범위의 공개방법(예를 들어 학술발표, 학술회의, 실험을 포함하지만 판매 등은 제외된다)으로 출원일로부터 선행된 6개월 안에 공개되었다면 당해 발명의 특허성을 해치지 않는다.

E유형

원칙적으로 출원인에 의하던 타인에 의하던 모든 공개는 당해 발명의 특허성을 해한다. 그러나 비밀유지의 약속이 있었고 (영국의 경우처럼) Priority date (Priority period를 정하는) 전에 그러한 공개가 있지 않았다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보통 두가지 예외 규정을 두는데 하나는 인증된 국제전시회에서 공개된 경우(이러한 유형의 신규성의제제도의 경우 매우 좁게 인정된다) 다른 하나는 비밀유지의 약속을 어기거나 유지의무에 위반한 불법적인 공개에 의해서 공개된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공개가 있었던

1) 특허법제 30조에서는 「공지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고 부르고 있다.

2) 영국특허청홈페이지에서영국내공중의견을물었던 「UK Consultation on Patents Grace Period」내용참조.

날로부터 6개월안에 당해 발명의 출원이 있어야 한다.

주요국가들의 신규성의제 제도

미국

미국은 특허법 제102조 b항³⁾에서 특허 출원인의 미국내 출원일보다 1년 이상 앞서 그 발명에 대하여 미국 또는 외국에서 특허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또는 미국내에서 공용되거나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발명이 공개되었더라도 출원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유예기간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A유형의 신규성의제제도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발명자들이 그 사업성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신규성의제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유럽

유럽특허조약 제55조⁴⁾에 의하면 명백한 남용(evident abuse)과 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에 한하여 비자기적용개시(non-prejudicial disclosure) 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남용이라 함은 발명이 출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명백한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자가 1) 출원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실질적인 의도가 있거나 또는 2) 해당 공개로부터 피해가 비롯된다는 실질적인 또는 추정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EPO지침서는 밝히고 있다. 이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의사에 반한 공개 보다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영국의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이나 의무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명백한 남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미국의 가출원제도와 유사한 ‘우선기간(Priority period) 제도를 두고 있어서 간단한 발명의 설명과 도면등을 제출하므로써 본 출원전까지 1년간의 우선기간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신규성의제제도에 있어서 EPC상의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우선기간 제도는 선출원주의하의 제도로서 선발명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미국의 ‘가출원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일본

일본 특허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30조

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시험, 간행물발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를 통한 문서로서의 발표 등이 동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유사하고 다만 일반적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를 상기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특허법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박람회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법보다 전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의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성의제제도의 국제적인 통일화 논의가 특허실체법 통일화의 실질적 시발점이 된 바대로 신규성의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SPLT를 논의하는 상설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논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8차회기까지 진행된 SCP회기에서 까지 진행된 논의는 일단 신규성의제제도 혹은 유예기간제도에 관한 조약안 제9조에 대한 지난 7차 회기까지 정리된 내용에 대한 토의를 8차회기에서는 유럽국가들을 대표한 EPO의 논의유보제안에 따라서 그 논의를 다음 회기로 미루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8차회기를 위한 WIPO 국제사무국의 조약안의 내용⁶⁾을 검토하는 것으로 SCP에서의 논의를 고찰하여 본다.

조약안 제9조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 (유예기간)」⁷⁾

(1) [일반원칙] 청구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그 출원의 청구항일 이전 12(혹은6)개월 동안에, 또는그 12(혹은6)개월 동안에 제8조(2)항에 의한 효력을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형태로든 다음 각 호의 1에의하여공중이 이용가능하게된 경우에는 그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5) 정창호.“ 신규성의제: 최근의개정과향후특허법통일화방향”, 지식재산 21(제66호), 2001/5월. 13면

6) WIPO, SCP/8/2, 2002. 10.16

7)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1) [General Principle] Information which otherwise would affect the patentability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at invention, in so far as the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ywhere in the world in any form during, or with effect under Article 8(2) on a date during, the [12][six] months preceding the claim date,

(i) by the inventor,

(ii) by an Office and the information was contained

(a) in another application filed by the inventor[and should no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Office], or

(b) in an application filed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inventor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iii)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32) [No Time Limit for Invoking Grace Period] The effects of paragraph (1) may be invoked at any time.

(3) [Evidence] Where the applicability of paragraph (1) is contested, the party invoking the effects of that paragraph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or of making the conclusion likely, that the conditions of that paragraph are fulfilled.

(24) [Inventor]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nventor also means any person who, at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had the right to the patent.

(45) [Intervening Third Party Rights] A third person who in good faith had,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under paragraph (1) and the claim date, used the invention for the purpose of his business or started effective and serious preparations for such use shall have the right to start or continue to use the invention for that purpose. The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used where the person performed any acts that would otherwise constitute an infringement under the applicable law.

한다.

(i) 발명자에 의한 경우

(ii) 관청에 의한 경우, 그정보가

(a) 발명자가 출원한 타 출원에 포함되고 그 타 출원이 관청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경우, 또는

(b) 발명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제3자가 발명자의 인지 또는 동의없이 제출한 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i) 발명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입수한 제3자에 의한 경우
(3/2) [유예신청기간] 제1항의 효력은 어느 때에나 신청될 수 있다.

(3) [증거] 제1항의 적용이 문제된 경우, 동조항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동조항의 요건이 만족되었다는 결론을 만들거나 증명할 책임을 진다.

(4) [발명가]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발명자는 해당 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또한 포함한다.

(5) [선사용자의 권리] 제1항에 규정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날과 청구항일사이에 사업목적으로 해당 발명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이고 중대한 준비를 시작한 선의의 제3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발명의 실시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그 자가 행한 어떤행위가 있었던 곳에서 발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될 법에 의해서 침해될 구

성한다.

제8차회기를 준비하기 위한 WIPO 국제사무국의 안을 보면 7차회기에서 논의 되었던 기간의 문제가 다시제기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12개월과 6개월중 앞으로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질 것이지만 이러한 6개월의 선택적 규정의 삽입은 아마도 유럽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SCP에서의 논의되어지는 과정에서 지난 7차회기까지 선택적 B안으로 제시되었던 「유예기간(Grace period)」라는 단독 제목하의 제안은 현재의 안중 제1조만을 조약에 넣고 나머지는 규칙에 넣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바, 이 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국가들이 EU영역내의 국가간 의견의 조절을 이유로 유보한 상황에서 유럽국가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소위 Grace period제도의 채택에 있어서의 장 · 단점 논의⁸⁾

현재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이유로 보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들에서 일정기간동안 출원인이나 관청에 의해서 공개되는 발명에 대한 일반적이고 넓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소위 Grace period의 도입은

그 채택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발명가들은 뜻하지 않은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사실상 많은 발명가들은 타인이 그것에 관심을 갖기전까지 그 발명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 유럽이나 호주 등과 같이 학술발표 등을 신규성상실의 예외로 보지 않는 국가에서는 학자들이 어떠한 특허권에 대한 유보없이 자유롭게 세미나나 저널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유럽 등의 국가에서 발명가들은 비밀유지계약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발명을 시험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여 장래의 고객이나 잠재적 거래자들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발명가 중심의 제도는 결국 특허제도의 활용을 증진시키고 발명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단점

-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의 법제도가 소위 grace period제도보다는 그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명확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grace period의 도입이 자칫 발명가들로 하여금 발명의 어떠한 공개도 다 보호될 수 있다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 유예기간의 도입(길게는 12개월)은 결국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
- 한편 유예기간의 보장은 제3자의 발명 공개에 대한 보호까지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자칫 유예기간동안 발명이 공개되어 뜻하지

않게 신규성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즉 유예기간의 도입이 선발명주의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선출원주의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래의 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각국의 전통적 제도를 바꾸는 데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결어

우리나라 특허청은 특허실체법조약을 협의함에 있어서 신규성의제제도의 통일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선발명주의의 포기와 선출원주의로의 통일화를 전제로 이러한 유예기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8차회기까지의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선출원의 예외적인 취급범위의 확대, 장기적인 출원의 지연은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의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가능한한 현재의 12개월과 6개월의 기간선택의 타협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법 규정에수월하게수용될 수있는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론으로 끌어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SPLT 성안 작업의 성공여부는 미국의 선발명주의의 포기의 대가로서 기타국가들이 무엇을 양보하여야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유예기간(Grace Period)제도의 도입내지 조약의 채택에 있어서는 특허의 대상문제를 비롯한 다른 주요한 쟁점들의 논의진행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발특2003/9

8) http://www.ipaustralia.gov.au/patents/P_grace.htm



장 하 진 팀장
(주)태평양 지적재산팀

제2장 브랜드 네이밍이란 무엇인가

1. 브랜드 네이밍의 개념

브랜드 네이밍이란 목표하는 제품의 컨셉트에 맞도록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브랜드 네이밍은 일반적으로 상표명을 네이밍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네이밍의 대상에는 상표명 이외에도 기업명, 상품의 일반명칭, 캐치프레이즈, 테마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심지어는 부서명칭까지도 네이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브랜드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상품의 이름을 브랜드라 하며 우수한 브랜드는 적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으로도 브랜드 로열티를 형성시킬 수 있으나 좋지 못한 브랜드는 아무리 많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소비하더라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의 성과는 곧 기업의 흥망과 직결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에는 체계적인 네이밍 과정과 과학적인 분석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 믹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조하는 이미지 섹터가 변화되고 있다. 그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제품 이미지 강조에서

- 제1장 브랜드란 무엇인가
1. 브랜드의 개념과 역할
 2. 브랜드의 중요성
 3. 브랜드 이미지
 4. 브랜드의 인지
 5. 브랜드의 기능
 6. 브랜드 전략

제2장 브랜드 네이밍이란 무엇인가

1. 브랜드 네이밍의 개념
2. 브랜드 네이밍의 필요성
3. 브랜드 네이밍 전략
4. 네이밍 유형별 성공 브랜드

제3장 브랜드 네이밍 전략의 실천 방안

1. 브랜드 네이밍의 방향

2. 브랜드 네이밍 절차
3. 관여도
4. 대안의 평가
5. 브랜드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
6. 브랜드 네이밍의 일반적 경향
7. 브랜드 네이밍의 현황과 과제

제4장 브랜드 네이밍의 전략적 표준 작업 모형

1. 제1단계 (계획단계)
2. 제2단계 (개발단계)
3. 제3단계 (확정단계)

제5장 네이밍을 위한 키워드 데이터 베이스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다음호>

기업에서의 성공적인

브랜드는 의미, 발음, 표기 3가지가
전체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탈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이

기업 이미지 강조로 변화하였다. 요즘은 브랜드 이미지 강조, 특히 개별 브랜드 이미지 강조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때문에 더욱이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상품의 일반명칭

상품의 보통명칭을 가리키며 새로운 카테고리
의 상품 또는 소재 등이 개발되었을 때 네이밍에 의한

브랜드 네이밍 전략

상품의 이미지와 잘 조화되어
이미지로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발한 상품명은 상품을 돋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퍼(beeper, pager)의 상품명으로 “삐삐가 그 예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마케팅 기회의 창출을 위해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컨셉트를 가미하여 새로운 개념의 상품으로 선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내 방향제라는 상품은 우아하고 여유 있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우아한 향기”라는 기존의 제품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에 건강하고 상쾌한 삶을 위한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 즉 “공기청정기”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가미하여 “공기청향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때 실내 방향제라는 기존의 상품명으로 새로운 제품의 가치를 소구하는 것보다는 공기청향제라는 새로운 상품명으로 새로운 컨셉트를 소구하는 편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소비자 이익 또한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 및 생산 방식의 고안 등을 통한 이익 창출의 기회 못지 않게 새로운 마케팅 기법에 의하여 고객의 가치관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익 창출을 꾀하는 기회도 매우 중요시된다. 이때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구 포인트를 달리 하고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 훌륭한 마케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마케팅 마이오피아(Marketing Myo-pia)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쇠락의 이유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문제에만 몰고 다니고 기회를 모색하지 않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 환경이 어려운 이때 사고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마케팅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970년대 초까지 시계 산업에 있어서는 단연 스위스 업체들이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일본 시계 회사들은 시계 산업을 정밀 기계 산업이라 한다면 일본의 마케팅 마이오피아(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값싸고 정확한 전자 시계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그 때 도시계 산업은 정밀 기계 산업이라고 고집을 부리던 스위스 시계 업체들은 세계 시계 시장의 60% 이상을 일본에 내어준 후에야 마케팅 마이오피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난 스위스 시계 업체들은 곧 시계를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닌 고급 장신구로 사고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세계 왕국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예로서 우리는 “스

와치 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 다른 기능을 첨가하거나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예는 이밖에도 많이 볼 수 있다. 현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던 머리카락 염색약은 그 주 개념이 헤어 패션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달라질 만치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부분블리치(탈색)나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는 여성은 물론 젊은 남성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기업명

기업명은 기업의 성격과 수준을 직감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기업명은 회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소비자와의 관계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데서 매우 중요시된다. 기업명 개발도 브랜드 네이밍과 겹쳐서 동일하므로 브랜드 네이밍 기법을 사용하여 네이밍한다. 요즘 기업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업명을 곧바로 웨일리 브랜드로 활용하거나 반대로 웨일리 브랜드를 기업명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기업이 종종 눈에 띄고 있어 기업명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기도 한다.

서비스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이름을 서비스명이라 하는데 서비스명에는 “우리는 행”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명과 엠블러 투자예금과 같이 그 기업의 서비스 상품명이 포함된다.

서비스 상품명이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상품을 타인의 서비스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상품명을 말하는데 서비스 상품명은 “한아름 통장”과 같이 그 서비스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이미지계 상품명과

“고단위 플러스 예금”과 같이 서비스 상품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미계 상품명이었다.

컨셉(Concept), 테마(Theme),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PR을 위해 짧게 응축한 표현이며 캐치프레이지와 유사하다. 그 예를 보면, 주식회사 태평양의 “Dream of Beauty”, 새마을금고의 “Thank you & Jump”, 삼성전자의 “SAMSUNG DIGITall, everyone's invited” 등이 있다.

애칭(Fan name, Pet name)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와 더욱 친숙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붙여진 이름을 말한다. 그 예를 보면, 아모레 마몽드 화장품 “봄을 닮은 여자”, 쌍용자동차의 “대한민국%를 위한 가치 Rexton”, 엘지전자의 “오래오래 느끼고 싶어서 TROMM”, 두산의 “기분 좋은 선택 청하” 등이 있다.

2. 브랜드 네이밍의 필요성

브랜드 네임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는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인간의禍福을 좌우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意識에 관해서 모두 언어로 思考한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개념, 감정적인 개념조차 가능한한 언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개념과 개념 사이를 언어로 연결하려고 한다. 게다가 개념의 집합체에는 뭔가의 네이밍을 하려고 한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思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가 사람의 思考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때에 따

라서는 그 효과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와 상품의 브랜드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간혹 판매자는 소비자가 느끼지도 못하는 브랜드의 의미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지만 소비자는 자기 나름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심중을 헤아리지 않는 브랜드 네이밍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곤 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경제적으로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수많은 브랜드를 접해야만 한다.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하여 둔감해져 가고 판매자는 브랜드에 의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은 이와 같은 브랜드 경쟁적 시장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 자기 브랜드를 타인의 브랜드와 효율적으로 특징 지우고 그 제품만의 색깔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과 소구 전략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만 되어 가고 있다. 훌륭한 브랜드는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쉽게 소비자와 친숙해질 수 있고 높은 소비자 만족을 줄 수 있어,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는 직감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도 내재되어 있는 브랜드 이미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마케팅 효과가 예상과 같이 좋지 않은 경우를 가끔 본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 시에는 브랜드의 이미지별 잠재력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지 않는 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표적시장에 브랜드와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성공시키려면 네이밍하기 전에 마케팅 전략에 따라 브랜드의 의미와

이미지를 미리 선정하고 그 의미와 이미지를 어떻게 브랜드로 標化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브랜드 런칭 후에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브랜드 개념 선정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들은 다음 세 가지 범주 중의 하나에 속하도록 계획된다.

- 1) 소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을 찾게 되는 데 이와 같은 기능적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개념의 브랜드를 계획하여야 한다.
- 2) 소비자는 자기 과장, 지위, 단체 소속감, 자아확인을 위하여 생성된 욕구를 내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징적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개념의 브랜드로 개인과 희망하는 단체, 지위 혹은 자기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 그리고 감각적 쾌락, 변화, 자극을 제공하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경험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경험적 개념의 브랜드로 자극과 변화를 위하여 생성된 욕구를 내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한 가지 이미지만을 추구하지 않고 동시에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갖도록 희망한다. 만일 브랜드를 이러한 복합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설계한다면 그 브랜드는 주의가 분산되어 포지셔닝(Positioning)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브랜드의 기본적인 미조차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복합적이미지의브랜드는한 가지 이미지만을나타내는 브랜드에비해 차별화가될 될 수 있다는것이 다. 따라서소비자의필요를확인하여브랜드의개념을 선정하고이에 따라 브랜드 네이밍을하여야 할 것이다.

브랜드는상품에부착되어유통되는데소비자들이 브랜드를보고 그 기업의상품을 선택한다는것은 그 제품에대한 동일한수준의 만족감을기대한다는의미가있다. 이러한편을 감안해볼 때 브랜드를네이밍하는궁극적인목적은소비자를대상로제품개성의효과적표현을 통한 판매 증대에있다고 하겠다. 마케팅철학은 소비자지향적인경영활동을추구하는행위이며, 경영활동의전반적요인들을 파악하고이를 하나의발전적인대안 내지 기회로 포착하여시장의수요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경영철학이다. 이러한마케팅 철학을 바탕으로기업들은여러가지시장 지배전략을구사하면서성공적으로 시장을지배하게된다. 브랜드전략은마케팅 전략을바탕으로설정되며마케팅 전략을구체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브랜드네이밍전략이수행되는 것이다. 브랜드네이밍은브랜드이미지를형성시키는발원지역할을한다고할 수 있다.

3. 브랜드네이밍 전략

브랜드 네이밍 전략의 의의

브랜드네이밍전략은네이밍작업을기업경영의 일환으로보고자사의네이밍에관해 기업으로서의 방침과 체제를 정리하는것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브랜드네이밍 전략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브랜드와브랜드 이미지 믹스를 경영자로서유효하게활용할수 있다. 기존의경영자

원 활용에만그치지말고 미래의경영자로서 의 브랜드자산을어떻게개발, 육성해갈 것인가 하는관점을전략으로내세워야한다.

둘째, 마케팅전략을효과적으로실행해나갈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브랜드네이밍을활용할수 있다. 의미계브랜드는제품의성질 등을 잘 나타내 주므로소비자는브랜드만으로도어떤 제품인가를 쉽게알 수 있게 되어적은 마케팅비용으로도 소비자와효과적으로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된다. 또한이미지계브랜드는소비자자아이미지와브랜드이미지를연결시키기쉬워감성적제품의마케팅활동에도움을줄 수 있게 된다.

셋째, 내부직원을활용한브랜드 네이밍은신제품 개발에대한 직원 모두의결집된힘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시장에서의신제품성공에도움을줄 수 있다. 기업에서는직원들끼리모여 브랜드네이밍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필요가있다. 브랜드 네이밍을단지 신제품의이름을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단순하게바라보아서는안 된다. 네이밍이시작되면제품의컨셉트를정확히이해하여야하며, 시장의흐름과 경쟁기업의상황을 면밀히분석해야하고 더 나아가자기 회사의실정 즉 마케팅비용을어느 정도까지줄 수 있는상황인가까지파악한후, 이모든 조건들에맞는 브랜드를네이밍해내는 것이므로이 전 과정을통하면서이 프로젝트에참여한직원들은애사심과 경쟁시장에서반드시이겨야한다는의욕까지배양되게 되어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하나의 네이밍 프로젝트를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이 소비되는데이 기간동안여러 부서에서 모인 직원들간에 수없이많은 컨센서스들이뤄야 할 필요들이많으므로이런 경험을쌓아가면서 여러 부서 직원 간에는 협동정신도착트게

되는것을 자주경험하게된다.

브랜드 네이밍 전략의 종류

브랜드네이밍전략을브랜드성격에따라나누면 의미계브랜드네이밍전략과이미지계브랜드네이밍 전략으로나눌 수 있으며, 이는제품의특성에따른 소비자의욕구를분석하여네이밍전략에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기타노브랜드전략, 성공브랜드활용 네이밍전략, 국제네이밍전략으로나눌 수 있으며, 그밖에어두 문자를골라이어나가는이니셜네이밍과디자인브랜드와같이사람의이름을 그대로브랜드화한네이밍 등이 있다. 이니셜로 네이밍 한 예로는 “ 피아트 (자동차, FIAT, Fabbrica Italiana Automobili Torino) 등이 있으며 사람이름으로네이밍한예로는 “ 베네통, ” 로라애슐리 등이 있다.

1) 의미계브랜드네이밍전략

① 순수의미계브랜드네이밍

네이밍컨셉트의어느부분을의미하는단어(한가지또는여러가지컨셉트의조합)로네이밍하는타입을 말한다. 예) 살로우만(‘살로만’만든)

② 심벌(Symbol) 의미계브랜드네이밍

네이밍 컨셉트의어느 부분 또는 타겟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 네이밍하는타입을 말한다. 예) 세제브랜드 “ 비트 (비틀어서빨아준다는 상징), “ 식물나라(식물성원료를사용하여순하다는것을 상징)

③ 의미계造語브랜드네이밍

순수의미계의말 재료 또는 심벌 의미계말 재료로조어하는것을 말한다. 예를들어순수 의미계 말 재료로 조어한예로는 “ 스와치 (스위스 시계브랜드, Swiss + Watch)

등이며, 심벌의미계말 재료로조어한예로는 “ 워크맨 (걸으면서듣는카세트) 등이다.

2) 이미지계브랜드네이밍전략

① 순수이미지계브랜드네이밍

네이밍컨셉트의어떤부분의이미지를가지고 있는말로네이밍하는타입을 말한다. 예) 화장품 브랜드 “ 라네즈(‘흰 눈’이라는의미로 맑고깨끗한피부의이미지를상징)

② 심벌이미지계브랜드네이밍

네이밍 컨셉트의어떤 부분이나타겟, 효과 등의 이미지를가지고있는말로네이밍하는타입을 말한다. 예) 레젠비페(‘초대받은손님’이라는의미로우아한여인을상징)

③ 이미지계造語브랜드네이밍

순수이미지계의말재료또는심벌 이미지계 말재료로조어하는것을 말한다. 예) “ 옹가네 ”

3) 노브랜드전략

주로값이싼일상품품에노브랜드전략을사용하기도 한다. 이는할인매장, 대형슈퍼마켓등에서사용하는탈브랜드화전략으로서종래의브랜드는전통, 품위, 신뢰, 혁신등 기업의일방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데 반해, 노브랜드는소비자의편의에서발상된것으로경제적인측면이강조된것이다.

노브랜드전략의경제적인이점과소비자가브랜드에대하여갖게되는신뢰성을결합하여사적브랜드(Private Brand)를 탄생시키기도한다. 사적브랜드란대규모의소매업자또는소매업자집단이시장 지배력을강화하고제조업자에대항하기위하거나 또는 유통업체간의 상품차별화및 경쟁 우위를 갖기위해사용하는브랜드를사적브랜드(PB)라 한다. 최근백화점이나대형 할인매장은PB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백화점등유통업계는PB를 통해 자기 책임 아래 상품을 직접 제작하거나하청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판매하기도한다. 유통업체들은 기존의제조업체브랜드들이모든 유통업체에서 같은 가격에판매되어자기만의상품 특성을 살리기어려운점을감안, 자기만의특색한상품을PB로 개발하고있으며, 이와같은PB제품은중간마진을 절감시킬수 있어 저렴하면서도적정 이윤을확보할수있는것이특징이기도하다. 대형할인점B의 예로는이마트의이플러스, 자연주의, 이베이지스, 마이클로, 이쁘띠뜨, 한국까르푸와르네, 블루스카이, 퍼스트라인, 하모니, 까르푸, 월마트코리아의 그레이트벨류, 심플리베이지, 이퀘이트, 롯데마트의 마그넷, 롯데마트등이 있으며, 백화점PB의 예로는롯데백화점의샤롯데, 롯데, 브랑제리, 오프망, 신세계백화점의쌍썬, 아이비하우스, 샤데이, 애로우현대백화점의벨라지, 미도파의록산느, 메트로폴리탄, 뽕뽕백화점의와글레, 상제리제, 그레이스백화점의텍스빌등의PB가 있다. 할인점, 백화점PB에 이어인터넷쇼핑몰에서도PB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으로매출을 높이자는전략이다. 인터넷크와 다음쇼핑에서는중저가 캐주얼 의류 PB로 Hensmile을 선보일 계획이고롯데닷컴에서는롯데슬로플러스000 러닝머신PB를 내놓았으며, SK디투디도가전PB로 이쿨과아기키저귀새숨을 내놓았다. LG이숍과CJ몰은 의류에 치중했던PB를 청소기, 전기밥솥등 가전제품으로확대하고있다. 인터넷쇼핑몰PB는 유통마진이적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높일 수 있어 PB상품 개발은계속되리라 예상된다.

4) 성공브랜드활용 네이밍전략

기존의 성공브랜드를분석하여어떠한네이밍 패턴(Pattern)이 소비자에게선호되고있는가를파악

한 후 이를네이밍전략에활용하는것을말한다.

5) 국제화네이밍전략

기업의국제화에따라세계시장에서도통용될수 있는브랜드가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문화, 상표법상에있어서문제가없는 브랜드를네이밍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세계 여러 나라의법과 언어습관등의 문화를 면밀히조사하여 네이밍 전략에 이용하여야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브랜드를네이밍하면서생소한 외래어에대한 거부감이높은 중국인의특성을감안하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유발시키기위해 제품의 특성을반영한기발한브랜드를개발해놀랄만한 인기를얻고있다. 삼성전자는안보이는인치를잡아라. 라는 카피의 명품 플러스원 의 중국브랜드로 ‘세상밖의 또 다른 세상’이보인다. 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선의 천외천 (天外天) 브랜드를선보여 중국인들의사랑을독차지하고있으며, LG전자는컴퓨터 모니터브랜드로디스플레이제품의이미지를 부각시키기위해 미래창 (未來窓)이라는미래 지향적인 브랜드를개발해 중국 소비자의큰 호응을 얻고있다.

브랜드 네이밍의 전략적 고려요소

우수한 브랜드를네이밍하기위해서는첫째, 언어적 측면에서발음, 기억용이성, 좋은연상이미지, 율동성등이 고려되어야한다. 우수한브랜드란부르기 쉽고쓰기 쉬운 것이라야하며, 아울러기억하기 쉬워야한다. 부르기쉽다는 것은 발음하기쉽다는 것이기도하다. 즉부르기좋은 것이듣기도좋은 것이며머리에잘 기억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우리 말에는반침이많아서외국인들이발음하기어려워 브랜드에서도쉽게 발음할수 있는개음절로된 브랜드가많아지는경향이다. 특히해외시장을 겨냥한제품은 해외소비자가발음하기 쉬운것이아하

므로우리브랜드가외래어로네이밍되어지는이유가 되고 있다. 둘째, 마케팅전략과의관계에서그 제품의 지향목표, 지향이미지및 주요 고객에게의 선호가능성등 다양한측면이탐구되어야한다. 즉, 제품과가장 적절히 어울릴수 있는 브랜드가되어야 하며 제품의 성질을 암시적으로나타내야하고 시대감각에도맞아야한다. 셋째, 법적으로보호받을 수 있는 브랜드이어야한다. 아무리우수한브랜드를개발하였다하여도기존브랜드와유사하여문제가 발생되면그 브랜드는아무런 의미가없게 된다. 우수한브랜드는법적으로완전한 보호를받을 수 있어야한다.

효율적인브랜드네이밍을위해서는네이밍시 고려할 요소가많이 있지만, 이요소들을모두활용하여 네이밍할수는 없다. 따라서제품의특성에따라 전략적으로활용할요소를선정하여사용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기초화장품브랜드를네이밍할때에는 “ 피부를아름답게 라는추상적인아름다움을제품의 목표로하고 있기 때문에브랜드네이밍 전략적 요소중 특히“ 연상이미지와“ 발음의율동감을 주 전략적요소로 활용한 이미지계브랜드네이밍 전략을활용하면효과적이다. 그리고세제와 같은 생활용품의네이밍시에는구체적인제품의효과가 느껴질수 있도록 “ 제품의암시성,”“ 지향목표의 마케팅적측면에서의네이밍전략적요소를주로 활용한 의미계 브랜드 네이밍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인브랜드네이밍을 위해서는 네이밍시 고려할요소로서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 것들이있다.

- 1) 발음하기쉬울 것
- 2) 여러가지로 발음되지않고 한가지로 발음될 것
- 3) 철자가쉬울 것
- 4) 쓰기쉬울 것

- 5) 짧고 간단할 것
- 6) 외우기쉬울 것
- 7) 율동성이있을 것
- 8) 읽을 때 즐거움을줄 것
- 9) 特別顯著性이있을 것 : 브랜드의구성이명료하여 다른 브랜드와대비할 때 소비자가쉽게 구별할수 있어야한다.
- 10) 제품暗示性이있을 것 : 브랜드가어떤 회사, 어떤제품에사용되고있는지, 품질은어떤지, 어떤 성질의제품인지등의 문제에대해서이해를 도와줄수 있도록제품의성질을암시할 수 있어야한다.
- 11) 지향목표표현성이있을 것
- 12) 타겟이미지와적합할 것
- 13) 이상한것이 연상되지않을 것
- 14) 다른 상품이상상되지않을 것
- 15) 유행감각에어긋나지않을 것
- 16) 시사성이있을 것
- 17) 포장에적합할 것
- 18) 상품에사용하기적합할 것
- 19) 다른기업에서이미상표등록하지않았을 것

브랜드는의미, 발음, 표기3가지가상품의 이미지와잘 조화되어전체로서소비자가선호하는토탈 이미지가형성되었을때비로소성공적인브랜드네이밍이되었다고할 수 있다. 첫째, 브랜드가지니는 의미에서풍겨 나오는이미지가그 상품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져야하고둘째, 브랜드를발음할 때 풍겨지는 이미지가그 상품의 인상과 직결되어야한다. 셋째, 브랜드의표기에서풍겨지는이미지가그 상품 이미지와합치해야한다. 브랜드는상품의 의미하는의미를 창조하여그 섬세한아름다움, 질서 그리고의미를달성할때에 기업 이미지나상품 이미지를대변하여자극요소로작용할수 있다.

발특2003/9

직무발명보상제도(V)

목 차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직무발명관련규정
1.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특허법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IV.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 발명진흥법
3.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보상의 종류	3. 발명진흥법시행령
II.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4. 근로복지기본법
1. 직무발명의 개념	3. 보상액의 결정기준	5.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
2. 직무발명의 요건	4. 보상금의 산정방법	6.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3. 대학교수의 발명	V.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7.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4. 퇴직후의 발명	1. 필요성	8. 기술이전촉진법
III. 직무발명의 효과	2.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1. 개설	3.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고덕은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다음호>
2.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4. 직무발명의 평가	

V.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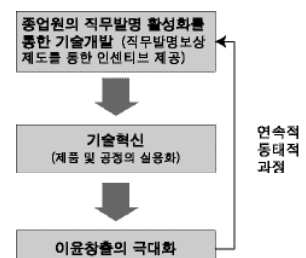
1. 필요성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의 극대화에 있으며,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단순히 물품의 판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가능하며, 기술개발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산업재산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산업재산권 보유건수의 증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의 발명이 이윤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고, 완성된 발명을 실용화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단선적·정태적 과정이 아닌 연속적·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연속적·동태적 과정

2.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종업원의 기술적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직무발명의 정의
- ② 직무발명자의 자격
- ③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 직무발명 여부의 결정 및 승계절차
- ④ 종업원 발명에 대한 출원 여부의 결정
- ⑤ 발명자의 이익의 신청에 관한 규정
- ⑥ 직무발명위원회에 관한 규정
 - 구성, 심의 또는 의결사항 등
- ⑦ 보상에 관한 규정
 - 보상액 결정기준, 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금 취급 등
- ⑧ 직무발명한 종업원의 의무

- 비밀의무, 협력의무 등

⑨ 기타

- 자사직원이 타회사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규정
- 촉탁이나 용역에 의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3.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승계할 것인지는 그 기업의 조직, 경영방침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발명의 신고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경우 발명의 목적,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한 발명신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회 원 동 정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봉고/프레지오의 판매 대수가 2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가 1980년 봉고 1톤 트럭을 시작으로 총 140만대가 판매되었고 '81년 출시된 봉고 승합모델은 베스트 와 프레지오를 거쳐 60만대가 판매되어 총 200만대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81년 당시 기아차는 정부

의 자동차공업합리화조치로 인해 동아자동차와의 합병설 등 회사 존폐위기에 인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때 기아차가 재기의 비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바로 “봉고”였다. 1톤짜리 트럭을 12인승 승합

**기아차 봉고 200만대 판매 신화
80년 봉고 1톤 트럭 출시 이후
누적 판매 대수 200만대 돌파**

차로 개조하여 내놓은 봉고 승합은 시장의 히트를 기록, 기아차의 화려한 부활을 주도하였다. 기아는 “봉고 신화” 덕택에 경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프라이드(87년)의 성공을 다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봉고 트럭은 지난 6월 5,277대가 판매되는 등 상반기에만 36,300대가 판매되며 20년 이상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나. 승계여부등의결정

특허담당부서의 장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직무발명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발명의 여부,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심사청구 유무 등을 결정한다.

다. 발명자에게통보

사용자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우하여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발명의 평가 결과, 승계 여부, 출원여부를 통보한다.

라. 권리의승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권리의 승계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사항에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적 사항이란 당해 직무발명의 양도증서 작성, 기술적 사항으로는 출원시 또는 심사시 당해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협력을 들 수 있다.

마. 이의제기

종업원이 사용자의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출원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특허출원하고,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직무발명의평가

종업원의 발명에 관하여 신고가 있을 경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 출원할 것인지, 그리고

등록된 권리의 경우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을평가해야 한다.

직무발명의 평가는 출원여부, 특허권의 취득, 승급 및 포상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정확한 평가는 발명자의 정확한 업적 평가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 평가주체

직무발명의 평가주체로 특허담당부서를 들 수 있겠으나 발명자의 의견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평가항목

직무발명의 평가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특허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권리의 독점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및 업종, 판단시기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원시에는 특허성이 중요시될 수 있지만 연차료 납부시에는 권리의 기술적 가치와 독점성이 중요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평가시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기도 한다.

(1) 발명의완성시

발명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2) 출원시

출원하여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등)으

로 관리할 것인지 Know-How로서 관리할 것인지와 출원한다면 해외출원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3) 심사청구시

일단 출원한 후 방어출원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심사청구를 한다면 특허청구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4) 권리존속세면차료납부시

일단 등록된 권리의 존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5) 기타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당해 직무발명의 처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판단시기 및 배점				
	출원시	심사청구시	권리존속시	실시보상시	외국출원시
1. 발명의 독창성(신규성, 진보성)	39	35	4	5	27
2. 권리의 독점성	13	15	24	9	16
3. 실시에 있어 기술적 가치	11	15	14	11	11
4. 타사기술의 견제도	9	9	13	5	10
5. 이익액(율)	-	2	4	29	9
6. 실시화 가능성	4	9	12	1	9
7. 자사기술과의 관련 정도	5	4	8	3	4
8. 제품에 있어 당해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	2	1	3	12	3
9. 기술의 수명	2	2	11	4	3
10. 발명의 동기 및 발명자의 노력도	2	2	2	14	2
11. 기타	13	6	5	7	6
총 계	100	100	100	100	100

※기타에는 대체기술의 유무, 기술의 파급효과, 선전효과, 품질의 성능 향상도, 실시규모, 근속연수, 침해발견용이도, 제품의수출가능성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 일본발명협회, 職務發明と補償金, 1988, p52~54 재구성

직무발명관련규정

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기술이전촉진법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기술이전촉진법(이하법 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서“민법또는다른법률에서의의하여설립된연구개발관련법인·단체로서새통령령이정한것”이라함은산업및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연구개발사업에소요되는연간비용의2분의1 이상출연하거나보조하는법인또는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본금또는재산의2분의1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한법인

3. 기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술이전의촉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법인또는단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새통령령이정하는기관 이라함은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및해양수산부를말한다.

제3조(촉진계획및실적의제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행당기관별연구개발사업의기술이전및사업화에관한연간추진계획을당해계획개시연도의전년도10월말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전년도의소관분야별기술이전및사업화시책의추진결과를매년12월말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4조(심의회의심의사항)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에서정하는사항이라 함은다음각호의사항

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규정에의한기술거래기관지정기준의 수립 2. 법제8조의규정에의한기술평가전문기관지정기준의 수립 3. 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연구기관제발한성과의민간이전방안의수립 · 조정 4. 법 제15조 제1항의규정에의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 유지및관리를위한시책의수립 · 조정 5. 기타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련되는사항으로서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5조(심의회의구성 · 운영등) ①법제5조의규정에의한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②심의회는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③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일7일전까지회의의일시 · 장 및 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④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⑤심의회에간사1인을두되, 간사는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자가된다. ⑥이영에정한것외에심의회는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6조(의견청취및수당지급) ①심의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전문가를출석하책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 · 단체등에대하여자료및의견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②심의회에출석한위원과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7조(정관계재사행법제6조의규정에의한한국기술	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한다)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4. 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5. 업무및그집행에관한사항 6. 자금의조달및운영에관한사항 7.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8. 공고에관한사항 9. 해산시잔여재산시귀속에관한사항 10.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제8조(거래소의기타사업)법 제6조 제3항제9호에서 “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라함은다음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기술거래 · 이전및평가에관한기술의연구 · 개발및보급 2. 기술거래 · 이전및평가에관한교육과정의개발및개설 3. 기술거래 · 이전및평가에관한수요조사분석 4. 기타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거래소의정관에서정하는사업 제9조(거래소의수익사업)거래소는법제6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사업을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거래소에의출자등) ①거래소는법 제6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을위탁받은경우에는당해사업을위탁하는자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사업의범위 · 방법및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 2. 출자금 · 융자금또는출연금의금액및그납입또는지급시기와방법에관한사항 3. 사업수행결과의보고및활용에관한사항 4. 협약의변경 · 해약및위반시의조치에관한사항	5. 기타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②거래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을다른기관과공동으로수행하거나업의일부를다른기관에위탁하여수행할수있다. ③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출자금 · 융자금또는출연금사업추진상황을고려하여이를분할하여납입는지급하거나일시에지급할수있다. 제11조(거래기관의지정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술거래기관(이하 “ 거래기관라한다)을지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고, 그내용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거래기관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있는경우에는그분야 3. 지정시조건을붙이는경우에는그조건내용 4. 기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사항을통합하여공고할수있다. 제12조(거래기관의수행사행)법제7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라함은기술이전및사업화정보의공동활용 · 확산을위한사업을 말한다. 제13조(평가기관의지정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 평가기관라한다)을지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고, 그내용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평가기관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있는경우에는그분야 3. 지정시조건을붙이는경우에는그조건내용 4. 기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사항을통합하여공	고할수있다. 제14조(전담조직의설치기준및운영등) ①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담조직을설치하여야하는공공연구기관은다음각호의기관으로한다. 1. 국 · 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한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의한국 · 공립학교로서이공계학과를설치한학교 5. 기타의공공연구기관으로서기관의성격, 연구개발인력및예산, 보유기술의정도등을고려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기관 ②공공연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담조직을설치함에있어서업무의효율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동으로전담조직을설치 · 운영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전담조직에는1인 이상의전담직원을두어야한다. ④제1항또는제2항이규정에의하여전담조직을설치한공공연구기관은기술이전및사업화계획과추진실적등매년도의운영결과를다음연도1월말일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의2(국 · 공립학교전담조직의업)법제9조제1항 후단의규정에의한전담조직은다음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승계 2. 특허등의출원 · 등록 · 이전및활용 3. 기술이전및활용에의한수익금의배분 4.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연구성과에관한기술정보의제공 제15조(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에대한지원및보고) ①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의지원대상은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사
---	---	---	---

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하고, 그지원비용은당해사업비에한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받은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은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과관련하여수행한사업추진실적을관계중앙행정기관및에게매반기마다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기술거래사의자격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거래소에기술거래사로등록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의한기술거래관련실적이있는자로한다.

1.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또는기술사의자격을취득한후3년이상당해업무에종사한자로서기술관련분야중사경력이있는자
2.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의교수이상또는전문대학의부교수이상의직에3년이상근무한자로서기술관련분야의연구경력이있는자
3. 공공연구기관원임연구원급이상의자로서기술개발관련분야에5년이상재직한자
4. 5급이상공무원으로서기술행정관련분야에5년이상종사한자
5. 거래기관또는평가기관의선임연구원급이상은중간관리자급이상의자로서기술거래및거래관련분야에5년이상재직한자
6. 법제10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거래소에등록한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중간관리자급이상의자로서기술거래관련분야에5년이상재직한자
7. 해외또는민간분야에서의기술거래관련경력이제1호내지제6호의1에상당하는경우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기준에행당하는자

②기술거래사는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술이전및사업화에관한상담·자문및지도와기술의매매등에관한지원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기술거래사업무수행방법·범위및절차등업무수행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거래소가이를정한다.

제17조(연구자에대한성과배분) 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연구자에게배분하는성과금은당해연구자가개발한기술을이전또는사업화하여얻은기술료에서경비를제외한순수입액의10분의50 이상의금액또는이에상응하는자산으로한다. 다만, 연구자가공무원(법제9조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한전담조직이설치된국·공립학교의교직원을제외한다)으로서국가공무원인경우에는공무원직무발명액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 지방공무원인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제18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귀속조건및이용허락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은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연구개발성과를공공연구기관에귀속시키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공공연구기관으로하여금일반인에게관련정보를개하고, 이용을위한신청절차및방법등을공시하는등성과의이용을촉진하기위한조치를하도록하여야한다.

1. 당해공공연구기관이그성과를직접사용하는경우
2. 다른법령또는제0조의규정에의한협약(이하협약이라한다)에의하여이용이제한되는경우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정부투자기관중공공연구기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한연구개발성과의이용촉진을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직접당해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③ 공공연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귀속된기술을일반인에게이용하게하는경우에는통상의실시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허락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전용의실시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허락할수있다.

1. 다른법령또는협약에서이와다르게정한경우
2. 통상의실시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받고자하는자가없는경우
3. 기술의특성상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 ④ 공공연구기관은법제5조제5항단서의규정에의

하여당해연구개발사업에정부와공동으로투자한자에대하여는2년의범위내에서우선권을부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또는협약에서이와다르게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 법 제16조 제7항의규정에의하여국·공립학교의전담조직에귀속된연구개발성과의활용에관하여제1항의내지제4항의규정외에필요한사항은그전담조직의정관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19조(출연금등의지급)

- ① 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출자금또는출연금을받은자(거래소를제외한다)는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받은출자금또는출연금은기술이전또는사업화촉진을위한사업에수반되는비용에만이를사용하여야한다.

제20조(기금의지원관계중앙행정기관및이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할수있는기금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01. 7. 16>

1. 중업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및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한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화촉진기본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정보화촉진기금
4.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및해당기금이관리주체와협의하여정하는기금

제21조(국유재산의대부등)

- ① 기술이전및사업화에참여하는기관이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유재산을대부또는양여받거나이를사용·수익하고자하는때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당해재산의관리청에이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재산의관리청이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에는바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신청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규정에의한국유재산의대부·양여, 사

용·수익의조건은계약에의한다.

제22조(기술이전정보의등록등)

①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관으로서기술을이전하고자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아닌기관·단체로서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지원하여개발한기술을보유또는관리하는기관·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
- ② 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거래소에정보를등록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 기재한등록신청서를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1. 등록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영업소및대표자의성명)
2. 당해기술의보유자또는권리자의성명및주소
3. 기술의명칭과내용(기술의이용분야를포함한다)
4. 이용조건

③관계중앙행정기관및은기술이전및기술이전정보등록실적이우수한기관에대하여는심의회의심의거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23조(전문인력의양성)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술이전전문인력의양성을한학과또는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포함한다)을개설·운영하는학교에대하여그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24조(사업예산절감장려) 제23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장려금지급대상자의선정기준및지급기준등은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거쳐심의회에서정한다.

부칙<제6489호, 2000-06-23>

- ①(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②(기술이전정보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보유하고있는기술비용에대한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은이영시행후월 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



이 현 수 변리사
특허법인 엘엔케이

변리 실무 3년의 단상

45번 도로를 꼭 매우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자동차들 속에 섞여 서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과 솜털 같이 가벼운 구름을 보았다. 그제서야 “아, 내가 휴가를 떠났구나!” 하고 실감했다. 거의 수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분하게 떠나는 휴가다. 여름 휴가라고는 하지만 가평에 도착해서 민박집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고 나니 선선한게 벌써 가을 분위기다. 그러고 보니 입추가 지난 주 언젠가였지 않은가?

특허청에서 7년간의 심사관 생활을 마감하고 변리 실무를 시작한 지도 만 3년이 지났다. 뒤돌아보나 뒤통수 치락치락하다 이제 겨우 일어서서 걸음마를 내지르는 단계에 온 것 같다. 심사관 생활이 법규정의 판단과 집행을 통해 올바른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변리사로서의 생활은 개발성과 물권리화하고 침해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비록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퇴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변리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 짧은 생각이지만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스스로는 동기 부여와 함께 다른 분들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변리 실무...
법률과 기술이 만나는
영역에서 일하는 업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보람이
아닌가 한다.

첫째로 생각되는 것이 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난다는 것이다. 이공계 출신들이 대개 그렇듯이 나도 변리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웃룩에 명함을

1600명 넘게 입력하도록 나는 내가 우려했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분들은 대개 내게는 선배 엔지니어들이었고 또한 인생의 선배이기도 했다. 기대로 인해 흥분한 채 기발한 착상을 털어놓는 그 분들을 대하면, 나도 같이 신명이나고 친근감이 든다.

둘째로 기업의 생존 경쟁의 한 가운데 있다는 현장감이다. 스테레오 사운드에 익숙해 있다가 DVD의

5.1 채널 음질을 접하면 그 현장감에 새로운 감동을 느낀다. 변리사는 개발 기술을 권리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기업의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게 되고, 브랜드 결정이나 마케팅 포인트 결정을 위해 마케팅에도 참여하며, 분쟁이 생길 경우 경쟁사의 침해 배제를 위해 영업 단계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나는 심지어 어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누구보다도 내가 그 회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같은 현장감은 업무에만 만족할 줄 뿐 아니라 책임감도 갖게 해준다. 대개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이런 느낌을 매우 좋아한다.

셋째로 특허 청구 범위 작성하는 작업 자체의 매력이다. 열심히 설명을 해도 특허 청구 범위의 의미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는 클라이언트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즐거움은 상당히 자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structured) 청구항의 설계를 강조하는 편이다. 누구도 선행 기술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항 안에 진보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잘 구조화된 특허 청구 범위는 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 준다.

클라이언트와 상담하면서 발명의 양상을 테이블화하고 이들을 체계화하고 구조화시키면서 나는 마치 정교한 기계를 제작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나 자신이 전문가라는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다.

비록 발명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최적의 청구항을 설계하기 위해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세 배 배려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발명자는 발명 기술의 전문가이지만 나는 권리의 전문가라는 자존심이다.

넷째로 특허 분쟁 사건에서 느끼는 보람이다. 만

약 특허 제도가 없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힘들게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이를 모방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 투자만으로 위험도 없이 손쉽게 이익을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분쟁 사건에서 후발 업체들은 흔히 특허 받은 회사가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개 자신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독점적인 이익은 원래 특허권에 예정된 것이다. 한편, 미미한 기술적 기여에 대해 부당하게 특허권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에도 그 미미하다는 기술이 상업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한편, 공지되었거나 이로부터 용이 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부여되고 분쟁이 발발하여 피해를 보고, 게다가 분쟁이 장기화되어 크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경우도 종종 있다.

소송 당사자 간에 성실한 대응을 유도하고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주장과 입증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명백히 불성실한 주장에 대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도변리사로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진행을 예측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해 최선의 방책을 자문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한다.

정리하고 보니 참 괜찮은 직업을 선택했다. 생각이 든다. 비록 생각했던 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는 노력만큼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늘 미안하지만, 법률과 기술이 만나는 영역에서 일하는 업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보람들이 아닌가 한다.

발특 2003/9

21세기는 과연 어떤 시대이며, 어떤 생산양식이 등장할 것인가?

식스 시그마 도입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식정보화 사회의 생산시스템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지향한 포디즘(Fordism)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유연한 생산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Fordism은 미리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생산시스템이었고, 따라서 생산시스템이나 생산라인은 처음에 설정된 대로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 주 형 소장/교수
서울정수기독교대학
발명연구소

꿈도 꿀 수 없다.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21세기는 지금까지 대학이 배출해온 ‘특정 분야의 기술인’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미지의 졸업생을 21세기 산업 사회의 단순 기술인 또는 전문가 수준으로 위상 격하시킬 위험성을 예고하는 세기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소비자의 의사

대학에서의 발명 창업론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대학에서의 교육은 졸업생들이 장차 취업하여 고용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단순 지식과 전공 교육을 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 정해진 일에 충실하고 상급자에 복종하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주어진 일을 책임지고 잘 해 내라는 직업 윤리에 바탕한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충직한 모습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이 종전과 같은 모습 양성 기관으로 일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한 발명의 내용을 전공 지식을 통하여 가공 처리하고 이를 지식 재산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은 기업 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그 자체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느 정도 등한시 되어 왔던 창의적 발명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과 부수적 효과를 몇 가지 언급한다면,

첫째, 창의적 발명 자체가 기존의 자리를 놓고 남과 경합해야 하는 취업과 달리 국가 또는 기업에

발명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1세기는 기업가적 자질을 갖춘 창의적 기술자 또는 창의적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Post Fordism의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을 결정짓는 정반대의 시스템이다.

생산 과정을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것은 생산의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정해진 방식에만 충실한다면 여러 갈래의 서브 시스템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우왕좌왕해야 한다.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야겠다는 발상은

반영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 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 창의성 등이 요청된다.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정해진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소극적 결정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Zero-base에서 해석하고, 그 달성 방법을 모색해 내는 이른바 기업가적 자질을 갖춘 창의적 기술자 또는 창의적 전문인을 21세기는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국가 산업 발전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신기술 개발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 세계적인 발명품이 현실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재산권의 중요성을
대학에서 부각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육 목표를 창조적 전문인 양성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크게 달라져야만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인을 배출할 수 있고, 그 때야만 대학이 독자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출해야 할 일자리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고 도의 기능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과 같은 모습 살이 취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환경과 직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접 대학생 자신이 창안

대해 내가 가진 지식 재산을 함께 나누거나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으로 바뀌므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화되어 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고유의 독자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창의적 발명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본인이 창출한 아이디어로부터 자기의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통해 가공 처리되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직업관과 인생관을 가

진 학생은 모든 학습활동에서보다능동적이고 적극적인학습태도와의욕을가지므로써 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창의적발명을 통하여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과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받은 졸업생은 기회가 되면 본인이 창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하므로 주어 진 역할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넷째, 창의적발명교육은 종전의 피고용자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하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한층 더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발명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교육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사회적 구조상 학벌과 지연이 시대를 평정한다지만 발명으로 성공하는 것은 학벌이나 뻥이 필요 없는 독창적인 창의성에 의하여 본인 스스로를 개척하고 성공하는 것이 발명 창업이다.

이제 대학은 종전의 피고용자 양성 기관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특정 목적을 겨냥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업가적 자세와 정신을 복돋워 주고, 그러한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 지향적 전문인 양성 기관으로 변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대학 내에 발명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으로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한 각 대학의 학과 내 전공 동아리 성향의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 대학 내에 발명에 대한 모험심과 도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대학의 교육 내용 또한 발명 정신을 고취시키고 임태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창조적 페러다임

발명 아이디어로 성공하려면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즉 페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관념의 변화는 같은 발명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고정관념이란 자연히 마음이 그리로(생각) 가서 항상 의식에 고착되어 있는 관념을 말한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문제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두뇌가 어떤 정보를 인식할 때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기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1개의 정보로 처리하지 않고 5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저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지적 용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고정관념이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것이다. 한 문화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믿음 체계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대한 동조 요구, 배척받지 않으려는 욕구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이 자꾸 반복될 때 우리의 머리는 점점 무디어지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인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주입식 교육의 고정관념이다. 우리의 교육 방식은 오로지 주입식, 암기식 교육 방법이다. 창의적인 발상을 창조하여 진보적인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실습에서는 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암기식 교육에서 발상된 첫 번째 문제점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도 이론에서는

단 1회에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실습에서는 수십 차례 재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오늘날 암기식 교육에서 나온 문제점이다.

이제 대학에서 공유화된 창의성 교육이 문과/이과 구별 없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결점

첫째, 우선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혁신적인 하나의 도전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카소는 '모든 창조행위는 일종의 파괴행위'라고 말하였다. 어떤 현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이 이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수 인원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탈 고정관념 훈련을 통해서 남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셋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스탠포드 대학의 애덤슨 박사와 테일러 박사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과거 경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상상의 날개를 풀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실천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사의 필 나이트 사장은 60년대 당시 신발 산업이 침체에 빠져서 가격을

인하하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을 때 정반대로 고가 전략을 구사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업체로 일어섰다. 그는 80년대에는 나이키사가 고급 신발을 만드는 업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포츠 정신을 만드는 업체로 대중들에게 인식 시킴으로써 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지적처럼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날마다 닥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발명 아이디어에 접근하여,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및 국가의 경영도 그에 맞게 꿈 페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이다.

발명과 창조성

주자는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퇴보하며, 진보하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이 퇴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보 즉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욕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고 일련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 결과로서 발명품으로 완성되는데, 이와 같은 다른 생각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흔히 창조성이라 하며, 창조성이 창의적 문제 해결의 결과로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질 때 발명으로 나타난다.

창조성이란 無에서 有를 이루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기존하는 요소 즉, 자신의 지식이나 축적된 경

힘을 바탕으로 각 요소를 새롭고 유용한 결합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드시누가 봐도 새로운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던 새롭고 유용한 것이면 곧 창조적인 것이 된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개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과학기술 정보 탐색 능력, 합리적 사고를 길러주는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 및 산업 재산권 교육, 즉 발명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발명 교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물을 관찰, 탐구하는 능력, 사고력, 창의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증진에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 적응 능력이 향상되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된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 하면서 모든 나라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선진 산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름길은 발명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 교육을 통한 발명 인재의 육성은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산업 재산권 확보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유치원 시절까지는 학부모 혹은 교육 담당자들도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에 열심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창의성 개발 교육보다는 수학 문제한 문제 더 풀기와 영어 단어 한 단어 더 외우는 것에 매달려 어린 학생들의 창의력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다행한 것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 특허청 주관의

발명 교실이 설치되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창의성 개발과는 동떨어진 주입식, 암기식의 입시 교육이 학생들에게 강요되며, 창의성 무시하는 이러한 교육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로 인식되어 교육 현장에서 냉대받고 소외되어진다.

이러한 창의성을 무시하는 획일화된 교육 상황에 잘 적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 교육 현장 역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시절 겨우 시작하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재학 중 접어들었던 창의성을 다시는 되살아나오지 못하도록 매장하는 기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이 없다는 부분 중 큰 부분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의 발명 능력을 신장시키는 발명 관련 교육 과정의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발명에 있어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은 뿌리가 깊은 나무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뿌리가 기초의 튼튼함을 상징하듯이 기초 과학의 바탕 없이 발명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 공학, 기계 공학, 전산학 등에는 열성을 보이면 서 물리나 화학 같은 기초 과학은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익을 얻어 내려는 성급한 마음과, 지나친 욕심이 불러낸 결과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끈질기게 노력하라.

발명에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베어드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셀렌이라는 원소를 알게 된 후, 텔레비전에 판매하려 황금 같은 청년기를 다 쏟아부은 다음에야 세계 최초의 텔레비전을 만들었다.

전기 재료의 절연 파괴 과보호 구 등 각종 절연 기구를 개발하여 독자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사장도 있다. 그는 변변하게 교육조차 받지 못했지만, 한 가지 목표에 일생을 걸었다.

그 덕분에 그는 모든 절연체를 손 안에 쥌 수 있었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집념을 갖고 노력한 대가가 그를 기업의 사장으로 올려 놓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 것이다.

일본의 한 비누 제조 회사도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비누 원료를 지나치게 가열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원료가 끓어 넘쳐 못 쓰게 된 것이다.

“이 조그만 기업에서, 그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 쫓겨나겠지?”

회사안은 발각 뒤 집혔고, 공원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소동을 가라 앉히고, 곧바로 쓸모 없게 된 비누 거품을 이용할 아이디어를 짜냈다.

사장은 ‘물에 뜨는 비누’라는 새로운 상품을 선보였고, 매출은 오히려 전보다 늘었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1,800번의 실패를 했고,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마흔 살 때 실패를 했으며,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낙제했던 일도 있다.

시스템 개발과 디자인을 생각하라.

교문을 나와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공통된 숙제가 있다.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할까?’ 남보다 튀어 보겠다는 욕망은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고, 경쟁률은 한없이 높다.

발명의 묘미는 바로 이런 개척 정신에 숨어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발명 정신은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이때 발명의 한 분야를 응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며, 경영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도 생각해 볼 직하다.

예를 들면 한복 개량화 사업에 뛰어든 한 여류 사업가나, 미용인의 경우가 있다. 전통 한복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한 여인이 한복도 바뀐 현대 생활에 맞게 개량되어야 하고, 더불어 한복의 공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강사진을 양성하고, 봉제 교육 과정의 설정, 봉제 기술 기관의 조직화, 체계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것은 한복의 제작 기술 교육이지 극히 개인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결론

21세기 국가 산업 발전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신기술 개발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 세계적인 발명품이 현실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재산권의 중요성을 대학에서 부각시켜야 한다.

산업재산권보다 큰 창업자산은 없다.

산업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부르고 있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적 창작물 사람이 그 기술내용을 국가 및 사회에 공개 및 제공하는 댓가

로 국가는 이들 창작자에게 그 창작내용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데, 이렇게 부여된 권리가 곧 산업재산권이다.

다만 상표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과는 달리 창작에 의해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사용상태를 권리로 인정하고 독점 사용하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과 도용 등을 배제하여 줌으로써 상표 사용자가 상표를 매개로 구축하는 시장적 지위, 즉 신용을 보호해 주어 업무상의 신용이 유지 및 증진되고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특2003/9

분 · 쟁 · 엮 · 보 · 기

RIM, 특허소송서 패소

“블랙베리(BlackBerry)라는 스마트폰 전자수첩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RIM이 NTP와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C넷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동부 지역 법원은 RIM과 NTP간 특허소송에서 ‘RIM이 NTP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RIM에 53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사간 특허공방은 지난 2001년 NTP가 “자사의 라디오 주파수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RIM이 단말기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PDA와 비슷한 RIM의 블랙베리 단말기는 전자메일, 기업 데이터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기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NTP의 짐 월라스

변호인은 “만약 RIM이 항소심에서 이기지 못하면 향후 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RIM과 계속 특허로에 관해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RIM이 항소하기 전 30일의 검토기간이 있으며 RIM의 항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 PatYellow.com

IBM, SCO 유닉스 공세에 ‘맞고소’

IBM이 SCO 그룹의 유닉스 저작권 공세에 맞대응하고 나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IBM은 SCO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IBM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IBM의 이번 제소는 SCO의 법적 공세에 맞불 작전으로 나온 것. SCO는 지난 3

월 IBM이 자사 AIX 유닉스 코드를 리눅스에 무단 사용했다며 30억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IBM은 이날 유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45쪽 분량의 소장장을 통해 SCO가 유닉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인상을 심어주는 캠페인을 했다고 주

장했다

IBM은 또 “SCO가 리눅스 유포근거인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정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CO 측은 “유닉스 라이선스 지불요구가 GNU GPL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 PatYellow.com

상표 Q&A 특허권의 범위

Q

[질문]

특허출원을 할 때 발명내용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작성해야 타인이 유사한 특허출원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타인의 웬만한 아이디어는 모두 제 특허에 의해 제약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

[답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 폭 넓게 기재되어 있으면 출원인은 그 만큼 넓은 범위의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폭 넓게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넓은 만큼, 그 출원의 출원일이 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 질 우려가 큼니다. 특허권은 출원된 발명이 그 발명의 출원일이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닐 것인 신규성과 적어도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만한 것이 아닐 것(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을 심사하여 이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주어지는 특허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기재하면 위와 같은 공지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커져서 심사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면 자칫 특허권의 범위가 모호해져서 그 권리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위 기재 불비에 의하여 특허심사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조하여서 귀하의 발명의 권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신중하게 기재하시겠습니까? 바람직 하리라고 사료되며, 권리 범위의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발명의 내용이 지금까지 선행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출원된 특허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 다소 넓게 작성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있어서, '독립항(independent claim)'에 비교적 넓게 권리 범위를 잡고 '종속항(dependent claim)'에서 예상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범위를 잡는 것입니다

상담: 변리사 김진원
제공: 진성특허법률사무소 ☎: 585-2814



의자 달린 여행 가방

태호는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슈퍼에 들러 잔심부름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다.

“태호야, 이 라면 좀 배달하고 오겠니?”

“알았어요, 엄마!”

태호 어머니가 운영하는 슈퍼는 원래 태호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것으로 아버지께서 건강이 나빠져 시골로 요양간 후로 어머니 혼자서 슈퍼 일을 도맡아 하셨다.

슈퍼 일은 잔일이 많아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태호는 학교 공부를 마친 후에 항상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었다. 그 때문에 태호는 방과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마음껏 뛰어놀 시간이 없었다.

“태호야, 노을자.”

평소에 품성이 착하고, 늘 명랑하여 태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 놀고 싶어했지만, 그때마다 친구들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다음에 놀자.”

그러나 태호의 얼굴에서 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고, 오히려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소년이다.

태호의 가슴 속에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아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것이다. 가난해도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서다. 그래서 태호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별을 이길만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처럼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태호는 요즘 신이났다. 방학을하면 시골에게 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설레는 가슴을 안고, 태호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겨울방학을 기다렸다.

“야! 드디어 방학이다. 내일부터는 스케이트나 실컷 타야지!”

친구들도 좋아라 하며 나름대로의 방학 설계에 신바람이 났지만, 태호의 마음은 벌써부터 아버지가 계시는 마산에 가 있었다.

드디어 태호가 어머니와 함께 마산에 가는 날이 되었다.

“태호야, 어서 가자. 시간 늦을라.”

“네, 엄마! 가방 이리 주세요.”

태호는 어머니를 따라 고속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정류장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척 북적였다.

“아이고 다리야, 엄마! 다리 아파.”

태호는 오랜만에 어머니께응석을 부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앉을만한 곳을 찾다가 말씀하셨다.

“태호야, 그런데 빈 의자가 하나도 없구나. 나도 다리가 아프데...”

그와 동시에 태호는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지, 엄마는 다리가 정말 아프실 거야. 하



루 종일 서 있기만 하셨으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태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쉬게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앉을만한 곳은 없었다.

그렇게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고속버스를 타고나서야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지만, 태호는 내내 그 생각을 지우질 못했다.

“오, 우리 태호, 아버지가 못 본 사이에 더 썩썩해졌구나. 많이 컸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건강해져 있었다.

“태호아빠. 당신 얼굴도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음, 이제 다음 달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쉬었다갈게. 여보,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고생만 시키고.....”

태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번갈아 보며 슬그머니 미소를 흘렸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퇴원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태호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들판을 지나 어느 저수지 근처를 지날 때, 태호는낚싯대를 드리우고 한가롭게 앉아있는 아저씨들의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그래, 바로 저거야. 보조 의자!’

태호의 눈과 머리가 동시에빛나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온 태호는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의 한쪽을 보조의자 크기만 하게 오려내 젖힐 수 있게 하고, 그 밑에 받침대를 달았다.

“야, 완성이다!”

“태호야, 뭐가 완성이니?”

어머니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보여 드리자 어머니는 발그레 웃으셨다.

“우리 태호 덕에, 아버지 퇴원하실 때는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네!”

“헤헤헤!”

태호는 머리를 굽적이면서도 기분이 한결 좋았다.



미래의 청소차

대중이는 오늘도 집 부근이나,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휴지들을 보았다.

‘어휴, 더러워! 길가에 휴지가 너무 많아! 도대체 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대중이는 성격이깔끔하고, 공중도덕에 대한 질서의식이 뚜렷하여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다.

휴지나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종이나 다 쓴 노트는 재활용상자에, 그리고 캔, 음료수 병도 꼭구분해서 버린다. 다집은 검은종이에 싸서 버리고, 남이 버린 휴지까지도 자기가 모아서 버리는 착한 어린이다.

그런데 사실 대중이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중이도 휴지를 아무데나 던지고, 단물 빠진 껌을 벽에 붙이거나 손가락 끝으로 획 던져버리기도 했다. 빈깡통은 공처럼 발로 차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모르게 막대를 아무데나 슬쩍 버리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날, 외국여행을 다녀오신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휴, 내 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래, 호텔 바닥에 침을 뱉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 나라 사람이라나... 원 참.”

아버지의 말씀에이어, 어머니의 이야기도같은 내용이었다.

“가면을 쓰고 다닐 수도 없고, 한국사람이라는 말을 하자니 부끄럽고...”

내용인즉 이랬다.

대중이의 부모님은 휴가를 얻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정말 모처럼의 외국 나들이라 두 분은 한껏 꿈에 부풀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설레임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졌다고 한다. 비행기 안에는 외국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나 타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자마자 일부 아저씨들이 발 구린내 나는 양말을 벗고, 맨발을 앞사람 의자에 척 걸치지를 않나, 큰소리로 떠들지를 않나,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이마를 찌푸리게 하더니,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여호텔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깨끗한 호텔 바닥에 침을 함부로 뱉더라.

그 뿐이 아니라 줄을 설 때는 새치기를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고,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외국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망신까지 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중이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스스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한동안 장난삼아 저질렀던 자신의 행동도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대중이는 정말 철저히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 어린이가 된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인가를 보여 줘야지!’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대중이는 ‘어떻게 하면 도로변에 함부로 널린 과자 봉지며휴지들을 깨끗이청소할수있을까?’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틈만 나면 머리를 가웃거리며 그 방법을 찾아 내려 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중이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공사차량이 길게 물을 뿌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 청소를 하려면 먼저 물을 뿌리고, 다음엔 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대중이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설계도에 옮겼다.

그러니까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등에 휴지 혹은 오물이 많이 널려있을 경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치우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사실 청소부 아저씨들이 달려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중이가 고안해낸 미래의 청소차를 보면, 자동차의 맨 위 부분에 헤드라이트를 달아 도로를 비추게 하고, 밑에는 커다란 비를 달아서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게 하고, 왼쪽 옆에는 휴지 집게를 달고, 운전석 뒤에는 물탱크를 통해 뒤로 물을 뿌리는 장치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조종은 운전석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탱크 모양의 이 청소차만 있다면, 청소부 아저씨의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도로를 청소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이며,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이야!’

대중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설계도를 그리느라 흐트러진 자신의 책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五)

발특2003/9

때로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보자

감수오해정, 글양연중, 만화김민재



발명가의 본 자세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파괴는 건설이다’라는 말이 있다. 창조에는 건설과 파괴가 공존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파괴를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창조는 그만큼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튼튼한 보호막이었던 알껍질을 깨트려야 하고, 새 건물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 건물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창조에 전념하려면 항상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새로운 법칙으로 질서를 세우려는 혁명가처럼.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법칙이나, 규칙 따위에서 해방되는 것도 필요하다. 창조는 법칙의 파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백여 년 전, 영국의 한 탄광에서 사용하던 호롱등불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예이다.

노상탄광을 제외한 대부분의 탄광은 지하로 수십 미터씩 파내려 가기 때문에 갱내가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둡다.

지금은 전기를 충전하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갱내에서 사용할 조명기구가 커다란 문제였다.

갱내에는 폭발성이 강한 가스로 가득 차 있어, 당시 유일한 조명 수단인 호롱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만약 철망으로 둘러싼 호롱불을 갱내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떨까?’

영국왕립학회 회장이었던 데비는 램프의 불꽃이 철망 밖으로는 새어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과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구멍이 숭숭 뚫린 철망으로 기체와 불꽃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철망의 사이사이로 가스가 새어 들어가면 커다란 폭발 사고가 날 걸.’

하지만 데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 시도해 보는 거야!’

결과는 두고 봐야지. 완전한 법칙은 없는 법이니까.’ 결과는 놀랍게도 새로운 안전등의 탄생을 가져왔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과였다.

만일 데비가 상식과 법칙에 얽매어 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꽤거였다.

인류는 바로 이런 혁명가들에 의하여 발전해 왔다. 인간은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새처럼



날 수 없으며,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없다는 법칙을 깨뜨린 이들도 바로 이 혁명가들이었다.

법칙은 창조라는 거대한 망치로 깨어지지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건설을 위한 파괴라면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창조를 기약하자.

어릿광대에게도 배워라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 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뭉쳐서 때로는 집단적 사고방식에 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횡당 보도가 아닌 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도 여러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지산도 모르게 슬그머니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집단사

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더욱 관심을 쏟는 증거다.

이런 환경에서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없다.

집단적 사고는 독창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과 같다. 언제, 어떤 상황에 빠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순응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세 유럽에서, 왕후가 아침하는 간신배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썼던 방법으로 ‘어릿광대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대중을 웃기는 어릿광대처럼,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을 펼치므로 상황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어릿광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정과 가치를 여지없이 뭉개버린다. 규칙 또한 그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 없다. 꽃밭에서 춤을 추거나,



책상을 지붕 삼아 살림을 차려도 그에게는 할말이 없는 것이다.

창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릿광대의 이런 무질서한 가치관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상의 틀을 깨뜨리며, 평범함에 도전하는 행위야말로 발명 창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어릿광대의 엉터리 같은 우스개 소리는 집단사고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며, 때로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남이 보여주는 것을 생각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가치란 없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화하며, 어제는불가능했던 일이라도 오늘은 가능할 수 있다.

어릿광대의 우스운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세의 사람들은, 어릿광대가하늘을 나는 시늉을 하며 흔드는 몸짓에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영원히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광대의 생각은 마침내 실현되었다.

세상은 어릿광대와 같은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사고의 소유자를 필요로 한다.

스스로가 어릿광대의 역할을 담당하여, 한없이 자고있는 창조력을 자극하자.

한국발명진흥회 총무부장
왕연중 記

발특2003/9

우표 - 발명가 및 발명품

문品展 品 北品展 - 丑古

저자 Dr Farag Moussa(국제발명가협회연맹 회장)

마리퀴리: 스킬로도브스카(Marie Curie-Sklodowska)는 1903년 물리학상그리고1911년 화학상을수상하여노벨상을 2회 수상했다. 이것아그녀가프랑스는물론이고그녀의모국인 폴란드와기타 여러 국가의 우표에 자주 등장하는이유일까? 아니면여자라는독특한특성 때문에남성 우위의발명가 세계에서뛰어난여성이라는점이반영된것일까?

사실우표는여성발명가들에게는관대하잖나. 나는우표에 등장하는여성발명가들을찾아보았다

나는 세계 모든 국가의우표카타로그를속독하였으나단지 두개 국가의우표에서여성발명가들을찾았으며예상했던선진국들이아니고시에라리온과필리핀이었다

1995 시에라리온은아홉명의노벨상수상자들을기념하여 한 벌의우표를발행했으며이들중세 명의발명가들의프랑스 여성 미국그리고이탈리아여성이다

- 아이린줄리오퀴리(Irene Joliot-Curie) (화학) : 인공방사능
- 로잘린알로(Rosalyn Yalow) (화학) : 방사능면역학
- 리타레비 몬타시니(Rita Levi-Montalcini) (의학) : 신경세포 성장인자

필리핀의경우 1993년 발명가협회 15주년을기념하여두 장의우표를발행했다. 아우표들은두명의발명가를묘사했으나 이들의이름을언급하지않았다. 공교롭게또나는개인적으로 이들중 한 명을 알고 있었으며여성이었다막달레나빌라루즈(Magdalen Villaruz)는여성들과자동적으로연관되지않을수도 있는 도구 즉 동력 경운기를발명하였다. 1976년특허가주어진터틀 파워 킬러(Turtle Power Tiller)는특별히아시아농지대 특히논에알맞게설계되었다



「阪神優勝」상표, 구단에 양도하기로 합의

18년만의 야구리그 제패가 확실한 한신타이거스가 우승의 문턱에서 구단이 사용을 검토하고 있던 「阪神優勝」의 문자가 이미 상표등록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구단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02년 5월에 한신구단이 동일한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유사하다」고 하여 각하됐다.

지바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남자에 의해 「阪神優勝」의 상표등록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구단이 T셔츠 등의 상품에 「阪神優勝」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阪神優勝」의 문자를 넣는 경우는 이 등록자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사건의 내용인 즉, 「阪神優勝」의 상표등록을 2001. 3. 15에 의복, 구두, 완구, 운동용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했고, 2002. 2. 14에 상표등록이 되었다. 2002. 5. 14에 타월, 손수건, 베개 등을 추가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수리된 상표는 상하 2개의 선 깃발의 중앙에 「阪神優勝」의 4문자를 배합한 것으로, 색의 지정은 없다.

구단은 阪神은 일반명사이지만, 「阪神優勝」의 경우는 명확히 구단을 가리키고 있고 로고는 구단 깃발과 너무 닮아 있다고 해서, 최근 특허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방침이었다.

한편, 특허청이 등록무효로 하지 않는 경우 「阪神 타이거즈優勝」「阪神V」 등 다른 로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구단은 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전권 위임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교섭하고, 로열티의 지불 등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 상대측도 「지금의 시점에서 구단측이 상품화해도 재판으로 할 것은 없다. 논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양자의 사이에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지금은 양자가 동 상표를 구단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개략적인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계속 교섭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구단측 관계자는 「우승에 방해되지 않도록 8월 말으로부터 9월, 가능하면 우승전에는 정식 합의에 이르고 싶다」고 하며, 실제 우승 관련 상품은 「阪神優勝」이라고 하는 4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디자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산케이신문, 데일리스포츠, 야후뉴스 인터넷판,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

미국항소법원, 도용된 도메인네임 소유자에게 등록업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인정

「Sex.com」도메인네임의 전소유자가 이 도메인네임을 사취한 용의자와 이것을 동 용의자에게 이전한 등록업자 Network Solutions를 제소하였던 재판에서, 미 항소법원은 전소유자에게 Network Solutions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향후 많은 재판의 행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도용된 「Sex.com」이라고 하는 도메인네임의 소유권이 1994년에 동 도메인을 최초로 등록한 Gary Kremen에 있다고 보아 적절한 허가 없이 동 도메인을 타인에게 이전한 Network Solutions는 배상책임이 지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Qualcomm, 휴대전화 기술 둘러싸고 TI 제소

Qualcomm은 휴대전화 기술 분야에서 경합하는 Texas Instruments(TI)를 델라웨어주 뉴캐슬 법원에 제소한 것을 밝혔다. 2000년 12월에 양 회사간에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TI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약은 양 회사 보유의 각종 휴대전화 특허에 대해 서로의 제품 이용을 인정한 것으로 그 대상에는 TI의 휴대전화용 프로세서와 Qualcomm의 CDMA 기술이 포함

되어 있었다. Qualcomm의 법무 담당에 의하면 TI는 5월, 계약 조건에 비추어 공개해서는 안 될 내용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며, 손해배상과 TI와 계약파기의 허가를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TI 홍보 담당은 제소되어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코멘트는 피하고 있다.

Qualcomm은 작년 12월에도 Maxim Integrated Products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Maxim이 동사 보유 2건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 Maxim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Qualcomm의 법무 담당은 “동사는 수백사에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 공여

이번 판결은 도메인네임을 통상의 유형 자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관련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동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도메인네임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Network Solutions는 도메인네임에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소유권 보호를 인정하는데 반대자세를 관철해왔다.

Kremen은 1995년에 Sex.com의 도메인네임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Stephen Cohen이라고 하는 남자가 동 도메인네임의 소유권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적은 Kremen의 회사를 발송인으로 하는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이었다. Cohen은 파산 전문 변호사로 신분을 속인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바로 직후였다. 그 문서에는 Kremen이 소유하는 Online Classifieds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Cohen이 동 도메인네임을 계승해 Network Solutions와 필요한 수속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Kremen의 변호사에 의하면 Network Solutions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동 도메인네임의 소유권을 Cohen에 이전해 Cohen은 동 사이트를 이용해 그 후 몇 년간 적어도 4000만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결국 Kremen은 Network Solutions와 Cohen 양자를 제소했지만, 하급심 판소든 도메인네임은 법률적으로 자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Network Solutions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Kremen은 Cohen에 6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거두었지만, Cohen은 재산을 해외에 이전해 국외로 도피를 꾀했다. Kremen은 재개한 Sex.com 사이트 상에서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Cohen에 대한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체포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출처 CNET Networks

하고 있지만,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 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ZDNet

Budweiser 상표침해사건 – 동경高裁判결

사건표시

平成 15. 7. 30 동경고등법원 平成 14년(ネ) 제5791호
1심 : 동경지방법원 平成 12년(ワ)제7930호
항소인(원고) Anheuser Busch 社(미국)
피항소인(피고)Budejovicky Budvar Narodni Podnic사(체코) 아이콘사(일본)

사실개요

미국과 일본에서 Budweiser라는 상표권을 가진 미국회사가 같은 이름의 맥주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체코의 제조업자와 일본의 수입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수입, 판매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일본에서는 독일어와 체코어로 쓰여진 2가지 표장의 Budvar사 맥주 2종류가 있다.

1심은 독일어표장¹⁾만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수입업자에게 수입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했고, Budvar사에 대해서는 독일어표장 맥주 수입,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 동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일부 인용판결).

참고로 체코어표장의 일부에 Budweiser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원판결을 유지하고 확장된 청구(표장7·8부분) 어느 것도 이 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

1. 피항소인표장 1 내지 3 에관하여

항소인은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이 항소인 각 등록상표와 유사함과 동시에 항소인 명칭 「BUDWEISER」 및 「BUD」와 유사한지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은 그 구성을 볼 때 각각이 항소인 각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명확하게 구별된 것이다. 관념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항소인 명칭 「BUDWEISER」의 상품 표시로서의 저명성 및 항소인 또는 그 관련회사의 영업 표시로서의 저명성을 고려하면 항소인 등록상표1로부터는 「버드와이저라고 하는명칭의 미국제 맥주」라고 한 관념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 및 항소인 등록상표2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과 항소인 각 등록상표와는 관념에 있어서 혼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에 있어서 자타상품식별기능을 갖는 요부가 「BUD」 또는 「바도」 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항소인 명칭의 저명성을

고려해도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이 항소인 각 등록상표 및 항소인 명칭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할수 없고, 이와 같은취지의 원판결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항소인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항소인 표장1 내지 3은 항소인 각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동 표장을 붙였던 맥주와 항소인의 맥주와의 사이에 오인 혼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항소인들에 의한 이런 표장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항소인표장 4 에관하여

피항소인 표장4가 항소인 각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원판결이 인정한대로이고, 또 항소인 등록상표1로부터는 전시와 같이「버드와이저라고 한 명칭의 미국제 맥주」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피항소인 표장4 및 항소인 등록상표2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항소인 표장4와 항소인 각 등록상표와는 관념에 있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피항소인 표장4는 항소인 각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는다.(중략)
따라서 피항소인 표장4는 항소인 각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항소인 명칭 모두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동 표장을 붙였던 맥주와 항소인의 맥주와의 사이에 오인 혼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피항소인들에 의한 항소인 표장4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항소인표장 7 에관하여

피항소인 표장7은 「BUDWEISER BUD

VAR.N.C.」라는 대문자 블록체의 영문자로 1행으로 횡서된 구성이지만, 「N.C.」는 어떠한 약어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항소인 표장4와 마찬가지로 전반의 「BUDWEISER BUDVAR」의 부분이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갖는 주요 부분이라고 인정되고, 이 부분은 일체의 단어로서 인식된 것이어서 이를 「BUDWEISER」와 「BUDVAR」2개 부분으로 분리해서 호칭, 관념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피항소인 표장7의 「BUDWEISER BUDVAR」의 부분과 항소인 등록상표1을 대비하면 전자가 15개 영문자(전부 대문자)로 되어있고, 후자는 9개 영문자(1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 양자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르다. 또 해당 부분에서는「부드와이저 부도바」또는「바도와이저 바도바」의 호칭이 생기고, 항소인 등록상표1로부터는 「바도와이저」의 호칭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음구성 및 구성음수를 달리하여 양자는 유사하지 않다. 관념에 있어서 항소인 등록상표1로부터는앞서 본바와같이「버드와이저라고 하는 명칭의 미국제 맥주」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피항소인 표장7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피항소인 표장7은 항소인 등록상표1과 유사하지 않으며, 동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피항소인 표장7의 사용 상태를 보면 피항소인 표장사용상태목록3(1)과 같이, 맥주병에 붙인 라벨의 하부에 작은 활자로 횡서 1행으로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피항소인 표

1) Budejovicky의 독일어표기는 Budweiser로 쓰인다.

장 4에 관한 원판결의 인정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26조 1항 1호에 규정된「자기의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항소인 등록상표 1의 상표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항소인 등록상표 7의 사용에 대해서는 항소인 등록상표 1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피항소인 표장 7은 동일한 이유에 의해 항소인 명칭 「Budweiser」와도 유사하지 않다. 또 상기 인정의 피항소인 표장 7의 사용 상태에서 보아, 일반적인 거래자·수요자는 피항소인 표장 7을 붙였던 맥주와 항소인의 맥주를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항소인들에 의한 피항소인 표장 7의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항소인 표장에 관하여

피항소인 표장 8은 「BUDEJOVICKY BUDVAR」의 대문자 블록체의 영문자를 원형의 주위를 따라 1회전하도록 배치한 구성이고,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인식되는 것이어서, 이를 「BUDEJOVICKY」와 「BUDVAR」 2개 부분으로 분리해서 호칭, 관념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피항소인 표장 8과 항소인 등록상표 2 「BUD」를 대비하면, 양자가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다. 또 피항소인 표장 8로부터는 로마자의 표음 「부데조비키 부도바르」, 영어의 표음 「바데조비키 바도바」 또는 체코어의 표음 「부제요비키 부도바」의 호칭이 생기고, 항소인 등록상표 2로부터는 「바도」 또는 「밧도」의 호칭이 생기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하지 않다. 관념에 있어서 쌍방 모

두 특정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항소인 표장 8은 항소인 등록상표 2와 유사하지 않고, 또 상기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항소인 등록상표 1과 유사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항소인 등록상표 2 내지 항소인 명칭 「BUD」의 주지 저명성을 감안하면, 항소인 표장 8의 주요부분은 2 곳의 「BUD」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항소인 표장 8은 그 배치 및 구성에서 보아 위에서와 같이 일련 일체의 것으로 파악되고, 「BUD」의 명칭이 일정한 주지성을 얻고 있다고 해도 아직 저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원판결의 인정과 같기 때문에, 피항소인 표장 8의 주요부분이 「BUD」의 부분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항소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항소인 표장 8은 항소인 각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피항소인 표장 8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항소인 명칭과도 유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자·수요자는 피항소인 표장 8을 붙인 맥주와 항소인의 맥주를 오인 혼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피항소인들에 의한 피항소인 표장 8의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일본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이베이, 특허 침해로 2,950만 달러 손해배상

인터넷 경매 최대기업 eBay에 전자상거래 특

허를 침해하였다고 해서, 버지니아주 거주의 발명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주의 연방 지방 법원은 8월 6일 2,9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eBay에 명했다.

이 소송은 머크 익스체인지의 창업자 토마스·울스톤이 제기한 것으로 연방 재판소의 배심은 5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려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eBay에 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연방 지방 법원의 Freedman 판사는 손해배상을 감액한 배경에 대해서 울스톤씨가 리턴바이·닷·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있어, 피해액의 회수가 이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리턴바이는 eBay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44페이지로 된 Freedman 판사의 판결문은 머크 익스체인지의 특허에 관련되는 기술의 사용을 그만두는 것을 eBay에 의무로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것을 원고측 변호사가 제시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Freedman 판사는 특허는 무효라는 이베이의 주장은 물리쳤다. 이 특허는 이베이 사이트 「buy it now」 옵션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유저가 통상의 구입가격 제시 프로세스를 우회해, 고정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Bay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배심이 판단했기 때문에, 배심이 권고한 3배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선택이 판사에게는 있었다. 이와 관련, Freedman 판사는 특허 침해가 향후에도 계속될 경우 「평결 후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출처 Yahoo Japan News

도요타·吉利자동차의 지식재산권 소송 개시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이 북경시 제2중급 인민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싸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의吉利자동차그룹을 제소한 사건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원고 도요타는 법정에 30건 이상의 증거를 제출, 吉利汽車公司가 「美日」 시리즈에 사용하고 있는 엠블럼은 도요타의 등록상표와 지나치게 닮아 있어, 소비자에게 오해를 생기게 해 동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吉利가 광고에 채용한 「도요타의 엔진, 놀라운 가격」이나 「도요타 8A 엔진 탑재」 등의 선전 카피도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도요타는吉利에 대해 1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吉利자동차측의王中변호사는 중국에서의 도요타 상표 등록은 1990년에,吉利의 등록은 1996. 5. 7 이었던 것을 설명한 데다가, “국가 상표국이 등록을 인가했던 것은 美日 시리즈의 상표가 도요타에 대한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30건 이상의 증거를 제출했다.

출처 인민망

지재권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지재권연구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타인에 대한 배포, 전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특 2003/9



잇몸병 예방, 왜 중요한가

권 호 근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잇몸병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고름이 나오고 더 진행이 되면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인 잇몸뼈를 녹아 내려서 치아를 흔들리게 하고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게 하는 심각한 구강 질환이다

잇몸병 초기 증상은 칫솔질 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 잇몸 염증 증세로 나타난다

초기 잇몸병은 칫솔질을 잘하고 치석제거를 하면 정상 상태로 회복

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칫솔질 할 때 피가 나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하지 않으므로 병을 악화시킨다

특히 담배를 피는 사람의 경우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잇몸에 염증이 있어도 출혈이 되지 않아 잇몸병이 진행되어도 환자 스스로 발병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증

상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자체가 잇몸병을 더 잘 발생시키지만 더욱 안 좋은 것은 잇몸병이 진행되어도 앞서 언급한 대로 담배가 잇몸병 증상을 가리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잇몸병은 상당히 상태가 악화되어도 통증이 없이 진행 되기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은 치료시기를 놓치고 잇몸뼈가 많이 흡

수되어서 이가 흔들리게 될 때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잇몸뼈가 녹아 내려서 치아가 흔들릴 경우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잇몸병은 충치와 마찬가지로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고 발병이 되었다고 해도 조기에 치

매일 식사 후,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과 금연을 한다면 노인이 되어서도 이십 개의 치아를 가질 수 있다.

잇몸병 예방, 왜 중요한가



잇몸병 예방, 왜 중요한

료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일반적으로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식사 시에 가 시큰거리거나 칫솔질 할 때 피가 많이 나거나 부분 틀니를 끼고 있는 사람의 경우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므로 가능한 빨리 치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흡연은 잇몸병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즉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잇몸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고 백혈구의 세균 탐식 작용을 악화시키고 전체적인 면역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잇몸병의 발생 원인이기도 하지만 발생되었을 경우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잇몸병이 있는 경우는 먼저 담배를 끊어야 한다.

특히 잇몸병 치료를 받는 경우도 담배를 피우면 치료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 전에 금연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은 구강 조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한 잇몸병이 있는 임신부인 경우는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같이 잇몸병은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전신 질환 발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병 시에는 조

기 치료를 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이도 흔들리고 따라서 치아를 빼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들어도 구강관리를 잘하면 80세에도 치아를 빼지 않고 건강한 구강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20개의 치아만을 가지고 있어도 음식을 씹어 먹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노후까지 20개의 치아를 보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치아를 빼는 주된 원인의 90 퍼센트가 충치와 잇몸병이기 때문에 이대 구강 질환인 충치와 잇몸병의 발생을 예방하면 된다.

이들 질환의 주된 예방 방법은 규칙적인 칫솔질, 잇몸병의 경우 잇솔질과 함께 금연을 하면 90 퍼센트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매일 식사 후 규칙적인 올바른 칫솔질과 금연을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적어도 이십 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년 이후에 잘 발생하는 잇몸병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금연은 잇몸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발특2003/9



영 한 지식재산권 용어

A

appropriate(considerable) period

상당한 기간

APPSYS

EPO 항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시스템

arbitrary mark

임의선택표장

이미 존재하는 용어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루어진 표장

arbitration

중재

당사자간의 분쟁을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argument

항변

어떤자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행위

armorial bearings

참고 → Emblem

article

(의장) 물품

의장법상의 물품이라고 함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article to which the design is applied

의장출원지정물품

출원시 지정하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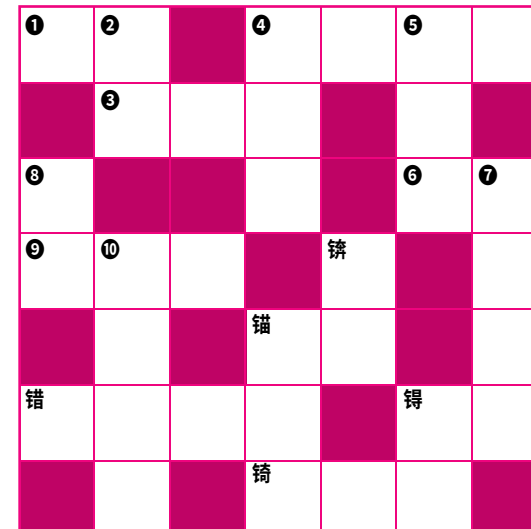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한 개념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컴퓨터 공학 의 한 분야로서 50년대 중반에 연구시작. 인간에 의해 이루어 지는 지능을 요구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과학을 말 하기도 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공지능프로그램이 만들 어낸 제품에 대하여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이가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문제에 대해 서 컴퓨터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제작자, 이들의 공동귀속, 누 구에게도 귀속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PUZZLE

함께 풀어봅시다



8월호 즐거운퍼즐 정답

하	기	휴	가		가	르	마
이			십	자	가		고
킹					호		자
		교	통	신	호		
주	전	자		빙		수	발
마		상	대	성		난	
간	밤		장		각	사	탕
산			부	뚜	막		



즐거운퍼즐정답은 다음호에 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
매월 20일까지보내주시요.

가로 열쇠

1. 우리나라명절의하나(음력8월 보름) 중추절, 한가위
3. 객차 · 화차를타고다니는철도차량의원동력이되는차량
4. 지나간허물을고치고착하게됨
6. 물체의색의 본질 또, 물체에빛깔을나타내게하는염료 등의성분
9. 고대 중국의청동 화폐의 하나, 기원전4~3세기경연나라 에서 유통하던 작은칼처럼생긴 화폐로'明'과 비슷한무늬가있음
11. 영업허가를받은일정한길을배차 시간표에따라 운행하 는 버스
12. 영화 · 텔레비전에사표제 · 배역 · 설 명등을 글자로 나타 낸 것
14. 육상비정규병의하나 (전쟁에임해 국민을소집하여조직한단체로 전쟁 임무를 수행함)
15. 몸이튼튼하지못함

세로 열쇠

2. 돌로만든여러가지 기구
4. 동의뜻으로, 행세를더럽게하는사람을욕하는말
5. 만물이자연히갖춘빛깔
7. 작은것을탐하여큰 것을잃음
8. 전에없던것을새로 생각해내거나만들어냄
10. 도덕의 이론만 캐고 실사회의일에 어두운 사람을조롱하 는 말
12. 옛날부터향수의원료로사용되어져왔으며 꽃말은 ' 관능 적', ' 당신은나의 것 ' 등이다. 향기좋은 꽃의 대명사인 이것은?
13. 한데에서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들어가있도록돌러치 는 막
15. 종이, 피륙등으로만든 큰 자루. 포대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향상코스

■교육일정 : 2003년 10월 6일(월) ~ 10월 8일(수)
<3일, 총 24시간>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멀티미디어교육장

■교육목적

- 각 기술분야별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습득 및 실무 능력 강화
- 특허청구범위 작성 및 해석능력 배양

■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관리 담당자, 특허명세서 작성 담당자, 기타 관련부서 실무자, 특허법률사무소원, 연구개발요원, 기타 관계자

■수강료 : 우리회 회원사 : 1인당 290,000원
비회원사 : 1인당 340,000원

■교육형태 : 비합숙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1일	1. 과정안내 및 O/T (일정소개)	1	2일	-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및 관련 법규정	
	2. 특허명세서 작성 연구	4		- 국내 특허청구범위 해석론	
	- 특허명세서 작성관련 법규정			- 특허침해판단과 연계한 청구범위해석	
	- 특허명세서 작성요령			- 다양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요령	
	- 다양한 기술분야별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등			5.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실습	4
2일	3. 특허명세서 작성사례 집중탐구 (case study)	3	3일	6. 미국특허클레임 작성요령	4
	4. 특허청구범위 해석 연구	4		7. 특허이의신청실무 / 보정 및 요지변경	3
				8. 강평 및 질의응답	1



특허소송실무

특허향상코스

■교육일정 : 2003년 10월 20일(월) ~ 10월 22일(수)
<3일, 총 24시간>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멀티미디어교육장

■교육목적

- 기업내 특허소송 업무시 필요한 필수지식과 Skill의 함양을 통한 실무능력을 갖춘 특허소송전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외국과의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할 소송수행 능력 제고

■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소송 담당자 및 관련 실무자, R&D Part 실무자, 특허법률사무소원, 연구개발요원, 기타 관계자

■수강료 : 우리회 회원사 : 1인당 290,000원
비회원사 : 1인당 3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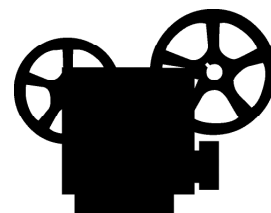
■교육형태 : 비합숙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사업장대상 교육훈련비 환급금액

- 훈련비지원금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97,442원
 - 대규모기업 : 1인당 87,448원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는 노동부에서 정한 단가입니다. (노동부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규정 참조)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금액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각 사업체마다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1일	1. 과정안내 및 O/T (일정소개)	1	2일	4. 특허침해판단과 사례 연구	4
	2. 특허심판 실무	5		5. 특허침해소송 실무	4
	- 특허심판의 의미, 종류, 유형, 절차 등			- 심결취소소송, - 침해구제	
	- 심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거절결정 불복심판/취소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상표등록 취소심판 등)			- 손해배상	
	3.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3	3일	- 소장작성	
				- 답변서작성	
				6. 특허소송 판례 집중 연구	3
				7. 특허침해소송 모의 시뮬레이션 학습	4
				8. 강평 및 질의응답	1



특허기술 평가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 발명의평가기관(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공인 전문평가기관등)에 의한 발명의기술성및 사업성평가체계구축.
- 평가에소요되는평가수수료의일부를국고에서 보조하여우수특허기술의조기사업화촉진.

2. 관련법률근거

가. 발명진흥법제21조 발명의평가기관지정등
산업재산권으로등록된발명의조속한사업화를 위하여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또는 기술성·사업성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하고, 발명을사업화하고자하는자는지정된발명의평가기관에 발명의기술성과사업성에관한평가를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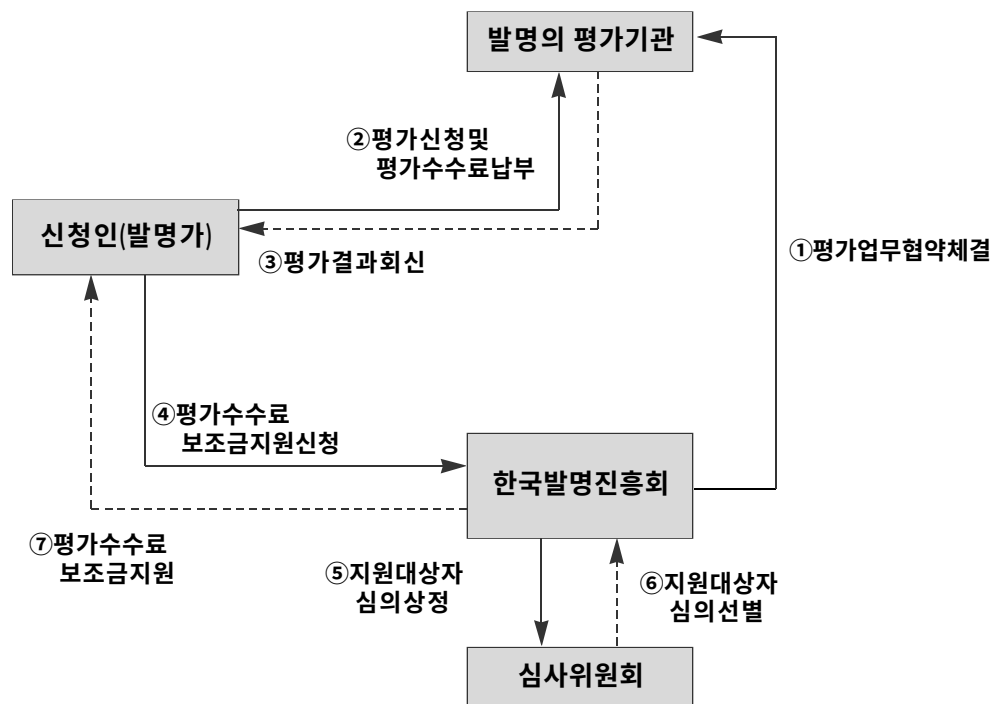
나. 발명진흥법제23조 (금융기관등의우선자금 지원)

평가결과가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하여는금융기관에서사업화자금 우선지원요청규정

다. 발명진흥법제25조(시작품제작지원)

평가에의해 기술성과사업성이우수하다고인정된 발명의시작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자금지원등의 방안강구

3. 평가처리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절차



4. 평가신청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수혜자격

발명의평가신청자는내국인으로신청일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 심사청구에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 권리자, 그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개인 및 중소기업자와기술이전 촉진법제2조제5호에서정한 공공연구기관으로한다.(단, 1997. 7. 1 이후실용신안으로출원된기술은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 기술에한함)

5.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조건 및 한도

- (1) 특허청은평가수행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을 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 운영함.
- (2) 평가신청인은발명의 평가기관에직접 평가를 의뢰하고평가수수료를납부함(평가금액 및 기간은평가기관의규정에따름)
- (3) 발명의평가기관에의해 평가가완료되면발명의 평가기관은신청인(발명가)에게평가결과를회보함.
- (4) 평가완료후평가신청인은구비서류를갖추어 한국발명진흥회에평가수수료보조금지원신청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당해연도에 평가완료된발명에 한해(단, 진흥회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한 경우 전년도에평가완료된 발명에 대해서도평가수수료를보조할 수 있음.) 예산의범위내에서분기별로평가수수료보조금을지원함.
- (5) 보조금신청인1인에대한평가수수료지원은 연간 4건까지로하며, 총 평가수수료의80% 범위내에서지원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인에 대한 연간 지원총액은3천만원을 넘지 못함.
- (6) 동일권리로서기술성평가와사업성평가를함께 받은 경우는2건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권리로서기술성평가나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기관 또는 같은 기관에서중복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권리자의신청에따

라 1개기관의평가수수료만지원함.

- (7) 한국발명진흥회는분기별로평가수수료지원 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구성, 개최하고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적정 지원대상자를선정함.
(가) 평가과제의적정성, 구체성, 및실용성
(나) 평가결과활용계획의명확성
(다) 국가산업발전약기여도
- (8) 심의결과동일점수또는 동일순위로경합이 될 경우에는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발명·고안순으로평가수수료보조금 지원대상자를선정함.

6. 평가결과의 활용

- (1) 발명의사업화전단계로서본인이발명한발명품이과연 기술성과사업성이우수한지확인해볼 수 있음.
- (2)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실시알선시(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등) 객관적자료로 활용할수있음.
- (3) 중소기업자로서평가결과우수한발명(고안)에 대해서는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우대보증지원을받을 수 있음.
- (4) 평가결과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해서는발명진흥법제25조(시작품제작지원)에 의해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을위한 선정심의를사가점부여를받을 수 있음.
- (5) 평가결과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해서는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사점부여받을 수 있음.

※ 상기항목중(2)번의 경우는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비치된실시알선신청서를작성 제출하면 되고 (3)번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기술성과사업성평가를 모두 받아야함. (4)~(5)번의 경우는단위사업수행시 신청자에한하여 가점부여를받을 수 있음.



가입을 축하합니다

본회 가입 업체



■회 원 명 : 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 표 자 : 김 성 규
■가입년월일 : 2003년 3월 27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7-3호 장안빌딩 4층
■전 화 번 호 : 02-597-7500



■회 원 명 : 한일시멘트(주) 중앙연구소
■대 표 자 : 정 환 진
■가입년월일 : 2003년 5월 23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우덕빌딩
■전 화 번 호 : 02-531-7000



■회 원 명 : 지엘팜텍 주식회사
■대 표 자 : 최 유 진
■가입년월일 : 2003년 6월 4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동 358-11 DCC BOINET 내 1층 113호
■전 화 번 호 : 031-730-7250



■회 원 명 : 주식회사 돌핀
■대 표 자 : 김 종 흠
■가입년월일 : 2003년 6월 30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5
■전 화 번 호 : 032-612-3456

가입을 축하합니다



본회 가입 업체



■회 원 명 : 장한특허법률사무소
■대 표 자 : 장원식 · 한창욱
■가입년월일 : 2003년 7월 21일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5-2 우석빌딩 301호
■전 화 번 호 : 031-482-8844

■회 원 명 :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주)
■대 표 자 : 윤 광 호
■가입년월일 : 2002년 3월 24일
■주 소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전 화 번 호 : 054-460-3434

■회 원 명 : 우주영재과학
■대 표 자 : 안 외 선
■가입년월일 : 2003년 5월 7일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관악현대A A상가 3층
■전 화 번 호 : 016-277-3087

■회 원 명 : (주)베스트월드산업
■대 표 자 : 이 신 안
■가입년월일 : 2003년 5월 19일
■주 소 : 인천 부평구 창천동 407-4 베스트월드 B/D
■전 화 번 호 : 032-508-4668

■회 원 명 : 대성실리콘
■대 표 자 : 김 병 기
■가입년월일 : 2003년 7월 21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14
■전 화 번 호 : 032-663-7921

월간「발명특허」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 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가게재월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등
- 원고제목: 관련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 - mail : eldaah7@hanmail.net

광고 및 원고모집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홍보실 TEL (02)3459-2740

우리회지 회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이상천	김주병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문현회관 1층	051-645-9683
광주지회	박흥석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3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205호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지원센터 7 층 703호	042-864-4307
강원지회	최의열	최동호 (직원)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49번지 하이테크벤처타운 생물동	033-258-6580

편집부: 김민국(Tel. 02-3459-2740, Fax. 02-3459-2999)